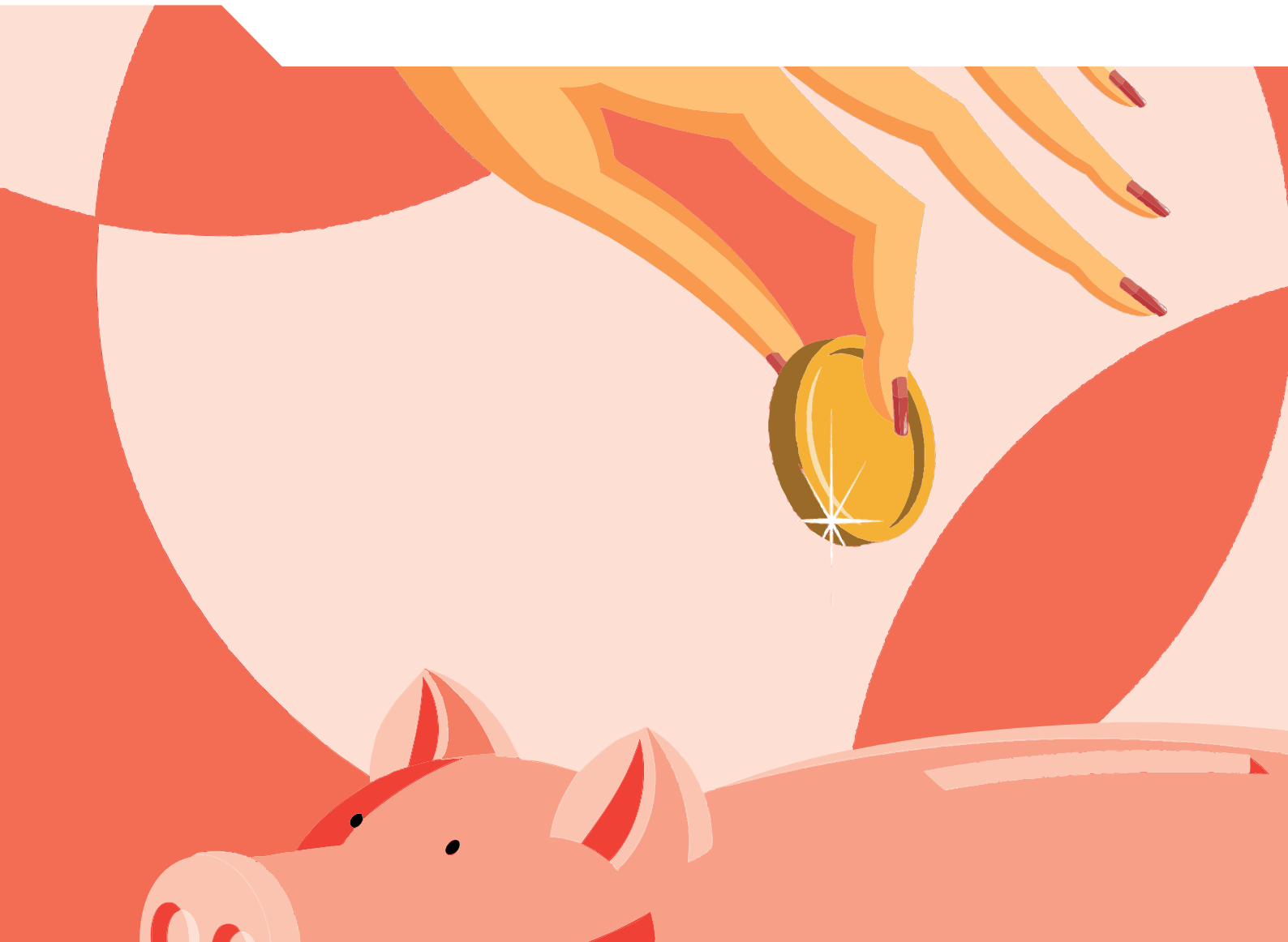




# 한 눈에 보는 연금

## 아시아/태평양 2013

Pensions at a Glance Asia/Pacific 2013





# 한 눈에 보는 연금 아시아/태평양 2013

Pensions at a Glance Asia/Pacific 2013

번역의 질과 원본과의 일치 여부는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의 책임사항이며,  
원본과 한국어판 사이에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원본이 우선합니다.

본 보고서는 OECD 사무총장의 책임 하에 출판되었습니다. 본 보고서에 언급된 논의들이 OECD, OECD 회원국 정부 또는 유럽연합의 공식적인 견해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본 문서와 여기에 포함된 지도는 영토, 도시 또는 지역의 이름, 국경 및 경계, 영토의 주권이나 그 지위에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통계자료는 해당 이스라엘 당국이 제공했습니다. OECD가 이스라엘 당국이 제공한 자료를 이용하는 것은 국제법에 따른 골란고원, 동예루살렘, 웨스트뱅크 이스라엘 정착촌의 지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본 출판물의 원본은 아래와 같은 제목으로 영문으로 발간되었습니다.

*Pensions at a Glance Asia/Pacific 2013 © OECD 2013*

본 영문원본의 저작권은 2013년 영문 원본을 출판한 OECD에 있습니다. 이 보고서의 한국어판은 OECD와 공식적인 합의 과정을 거쳐 발간한 것으로 그 저작권은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에 있습니다.

---

OECD 출판물에 대한 수정사항은 [www.oecd.org/publishing/corrigenda](http://www.oecd.org/publishing/corrigenda) 참조

## 한국어판 서문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www.oecdkorea.org](http://www.oecdkorea.org))는 OECD와 대한민국 정부 간에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설립된 국제협력기구로서 OECD의 정책경험과 주요 관심사를 아시아·태평양 지역 비 회원국과 공유하고 이를 전파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에서 보건, 사회복지, 연금 등 사회정책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사회정책본부는 OECD에서 발간하는 주요 자료들을 선별하여 한국어판으로 번역하여 보급하고 있습니다.

본 “Pensions at a Glance Asia/Pacific 2013(한 눈에 보는 연금 아시아/태평양 2013)”은 OECD가 아·태지역의 연금제도를 비교하고 분석하기 위하여 세 번째로 발간한 보고서이며, 우리센터는 이 보고서의 발간을 위해 아·태 지역 연금분야 전문가 국제회의를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국어판 발간을 위하여 사회정책본부 최종희 부본부장과 이인노 연구원이 수고해 주었고, 국민연금 연구원의 이용하 박사와 유호선 박사가 감수를 해주셨습니다.

본 보고서가 제공하는 다양한 분석과 지표가 한국의 연금제도관련 정책과 연구를 위하여 많이 활용되기를 기원합니다.

2014년 6월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사회정책본부장 주정미

## 서문

각국의 연금제도를 정확하게 제시하고 여러 국가의 제도를 비교하는 것은 정책 분석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시와 비교는 쉬운 일은 아니다. 이를 위해서는 잘 고안된 방법론, 상세한 국가제도 정보에 대한 접근성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연구에 대한 품질과 적용 가능성을 개선하기 위해 피드백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전문가들의 정보와 결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의 연금제도를 비교할 수 있도록 광범위한 지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OECD 회원국인 주요 국가의 자료도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는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와 함께 세계은행과 OECD가 공동 연구한 「제 1차 한눈에 보는 연금: 아시아/태평양」과 2011년도 판을 바탕으로 하여 업데이트한 것이다.

본 보고서의 초안은 OECD 사무국 사회정책과의 Andrew Reilly가 작성했다.

세번째 보고서인 금번 보고서 역시 사용된 모형을 업데이트하기 위해 각국의 전문가들이 수고해주었고 이들 중 상당수는 지난 두 번의 보고서에도 도움을 준 이들이다. 지면관계상 모두 언급할 수는 없지만 서울에서 있었던 연례 연금분야 국제전문가회의 참석자에 대한 세부정보는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웹사이트 [www.oecdkorea.org/social/board/list\\_eng.asp?BoardCd=5011](http://www.oecdkorea.org/social/board/list_eng.asp?BoardCd=5011)에서 찾아볼 수 있다. 또한 연차 총회를 개최하고 각국 전문가들과의 연락을 조율하는데 큰 도움을 준 한국 센터에 감사를 전한다.

연금 수급액 지표를 통해 사용된 OECD 연금 모형은 액시아 경제연구소(Axia Economics)에서 OECD와 세계은행의 자금지원으로 개발한 국가간 연금 수급액 비용분석 기법(Analysis of Pension Entitlements across Countries: APEX) 모델을 차용하고 있다.

# 목차

한국어판 서문 .....	3
서문 .....	4
요약 .....	7
도입 .....	9
방법론, 보고서의 구조 및 연금제도의 특징 .....	17
현재의 기준과 규정에 따른 미래의 수급액 .....	17
연금제도 설계의 주요 특징 .....	19
제1장 노후소득 지표 .....	23
총 대체율 .....	24
순 대체율 .....	26
30세에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경우의 총 대체율 .....	28
총 연금자산 .....	30
순 연금자산 .....	32
연금과 소득의 상관관계 .....	34
가입률 .....	36
기대수명 .....	38
노인부양가능지수 .....	40
제2장 한 눈에 보는 연금 아시아/태평양 국가별 현황 .....	43
중국 .....	46
홍콩 .....	51
인도 .....	56
인도네시아 .....	64
말레이시아 .....	70
파키스탄 .....	75
필리핀 .....	81
싱가포르 .....	86
스리랑카 .....	92
태국 .....	97
베트남 .....	102

OECD 출판물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twitter.com/OECD\\_Pubs](http://twitter.com/OECD_Pubs)



<http://www.facebook.com/OECDPublications>



<http://www.linkedin.com/groups/OECD-Publications-4645871>



<http://www.youtube.com/oeclidlibrary>



<http://www.oecd.org/oeccdirect/>



## 요약

선진국, 개발도상국을 막론하고 연금은 주요 정책 현안이다. 그러나 연금 개혁은 수많은 단기적 압력을 받으면서 정부의 장기적인 계획을 요구하기 때문에 어렵고도 논란이 많은 작업이다. 연금개혁으로 인해 열띤 이념적 토론과 때로는 시위까지 촉발되는 경우도 흔하다.

각국은 다른 국가의 연금제도 및 퇴직연금개혁을 통해 귀중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국가별 연금 제도는 매우 복잡하며 제도적, 기술적, 법적 측면에서 세부사항에 차이가 있다. 따라서 국가간 비교가 매우 어렵고 다른 나라의 정책 경험을 교훈으로 삼기도 쉽지 않다.

본 보고서에서는 철저한 분석과 실증적 결과를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결합하여 제시하고 있으며 특정 유형의 연금제도나 개혁을 옹호하지 않는다. 본 보고서의 목적은 연금의 미래에 대해 저마다 다른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 모두 기준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제도에 관한 논의에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있었던 퇴직연금제도의 국가간 비교는 주로 재정적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맞춰왔다. 즉, 현재의 근로자에게 제시했던 연금 예상급부가 미래에 실행가능한지 여부에 중점을 두었으며 미래의 연금 급여액의 적정성, 연금 개혁이 노인의 소득 분포에 미치는 영향, 노인 빈곤 완화의 방법 등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사회적 지속가능성으로 통칭할 수 있는 이러한 사안들이 바로 본 연구의 주요 관심사이다.

세번째 판인 한 눈에 보는 연금: 아시아/태평양 2013에서는 아태지역 국가의 연금 비교를 위한 기준을 제시한다. 보고서의 형식은 34개 OECD 회원국을 다루고 있는 OECD의 한 눈에 보는 연금에 기반한 이전 보고서의 형식을 따랐다.

보고서에 포함된 값들은 2012년 연금 파라미터를 반영하고 있다. 최초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본 보고서에서는 가족 단위보다는 단일 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먼저, 각국의 퇴직연금제도를 구성하는 여러 제도와 적용되는 기준을 요약하여 설명한다. 그리고 연금 제도 분석의 기준이 되는 몇가지 지표, 즉, 대체율과 연금자산 등을 간단히 요약 제시한다. 이 두 지표 모두 총 기준과 순 기준으로 표현했다. 그리고 적용범위, 기대수명, 일반 인구학적 자료를 통해 인구 전체뿐 아니라 아시아 연금 제도의 특징을 좀더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제 2장에서는 모든 OECD 비 회원국의 상세한 배경 정보와 국가별 표 및 도표를 제시한다. OECD 국가에 관한 정보는 한 눈에 보는 연금 시리즈에서 다루고 있다.

OECD 비 회원국과 특정 OECD 회원국간의 비교를 위해 결과를 지역 및 OECD 가입여부 별로 분류했다. 가장 큰 집단은 중국, 홍콩,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이 속해 있는 동아태지역 그룹이다.

남아시아 그룹에는 인도, 파키스탄, 스리랑카 등 나머지 비 회원국이 속해 있다. 그 외에 OECD 회원국들도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누었다. 우선, 좀더 지역적인 비교를 위해 호주, 캐나다, 일본, 한국, 뉴질랜드, 미국을 아시아-태평양 그룹으로 묶었다. 그리고,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 등 네 개 OECD 회원국을 한 집단으로 묶었는데 이 4개국은 연금제도가 이미 자리잡고 있는 주요 경제국들이다. 마지막 그룹을 포함시킨 것은 이들과 아시아의 OECD 비 회원국들간의 차이를 명확히 보여주기 위해서이다.

본 보고서의 결과는 세 개의 소득 수준별로 분석하여 개별 연금제도를 좀더 종합적으로 개관할 수 있도록 했다. 첫째, 평균소득 근로자 수준으로 분석했으며 근로자들이 경력단절 기간 없이 경력기간 전체에 걸쳐 해당 수준의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가정했다. 나머지 두 개 소득수준은 평균소득의 50%와 200% 수준으로, 전자는 저소득자로, 후자는 고소득자로 분류했으며 해당 소득 수준이 개인의 근로 기간 전체에 걸쳐 적용되는 것으로 가정했다. 연금제도 가입은 20세에 하는 것으로 가정했으며 모형은 해당 국가의 표준 연금수급 연령까지 완전경력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서 예컨대 중국 남성의 경우 연금수급 자격을 획득하려면 60세까지 40년간 근로해야 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 도입

아시아의 퇴직연금 제도 중 상당수는 향후 20년간 발생할 급격한 인구 고령화에 제대로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 인구학적 변화 – 출산율 감소와 기대수명 증가 – 가 유럽과 북미지역에서는 한세기에 걸쳐 일어났지만 아시아에서는 동일한 변화가 단 한 세대만에 일어나는 경우도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아시아의 연금제도를 시급히 현대화해야 재정적으로 지속가능하고 적절한 노후 소득을 제공하도록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일부 국가 – 중국과 베트남 – 에서는 완전경력 근로자들에게 약속된 미래 예상급부가 소득에 비해 높은 편이다. 조기수급 연령, 특히 여성의 조기수급 연령은 연금 제도에 재정적 압박을 가하고 있으며 인구의 고령화가 진행되고 퇴직연금제도가 성숙해가면서 연금제도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많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가 노후 소득의 적정성 문제도 함께 안고 있다. 현 연금 제도가 노후에 안정된 소득을 제공하기 어려운 이유는 크게 네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 공적 연금제도의 가입율이 비교적 낮다.
- 은퇴 전 저축액 인출이 흔히 발생하고 있다.
- 연금 저축을 일시불로 수령하는 경우가 많아 수명이 다하기 전 저축액이 고갈될 위험이 있다.
- 연금 지급액이 생활비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자동적으로 조정되지 않는다.

아시아는 고령화되고 있어 현재의 근로자들에게 안정적이고 지속적이며 적절한 노후 소득을 제공하기 어려운 연금제도상의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아시아의 고령화는 2010년에서 2030년 사이에 가장 급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금정책 계획이 크게 뒤쳐져 있는 점을 감안하면 많은 아시아 국가가 미래의 연금 문제를 예방하고 유럽과 북미지역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준비할 시간이 그리 많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주저하다가는 시기를 놓치게 될 것이다.

###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연금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공적 연금제도는 국가별로 매우 다양하다. 아홉 개 국가는 소득비례연금을 지급하는 공적 제도를 갖고 있다. 이들은 “확정급여형”(DB) 제도로 불리는데 연금액의 가치가 개인 소득에 비례하여 정의되기 때문이다(표 1).

그 다음으로 일반적인 유형의 제도는, 역시 공적으로 관리되긴 하지만 급여는 기여금액과 투자수익률에 따라 달라지는 “확정기여형”(DC) 제도이다. 2개국이 확정기여형 연금제도를 갖고 있지만 관리는 민간 부문에서 맡고 있다. 마지막으로 뉴질랜드는 강제적 연금 기여금은 없지만 모든 은퇴자에게 정액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별 다양성 때문에 각국의 연금 제도와 그 성과를 비교 및 평가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여러 국가의 연금 제도 구조와 퇴직연금 제도 개혁을 통해 얻은 경험으로부터 귀중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연금제도의 주요 지표는 “대체율”이다. 이 지표는 특정 개인들의 연금액을 근로시 소득의 비율로 나타낸 것이다. 산정은 현재 노동시장에 진입해 모든 법제화된 변화를 포함하는 일련의 연금 파라미터와 규정에 따라 완전경력을 달성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그림 1은 평균 소득자의 산정된 대체율을 보여준다. OECD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은 일반적으로 40% 전후의 비슷한 대체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2012년 54%였던 34개 OECD 회원국 평균에 한참 못 미치는 비율이다. 남자의 경우 대부분의 다른 아태지역 국가의 대체율은 OECD 수준을 크게 상회하며 중국과 파키스탄은 60%를 넘는다.

하지만 낮은 대체율을 보이는 아태지역 국가도 있다. 예를 들어 싱가포르의 경우, 적립기금(provident fund)에 대한 기여금의 일부만 퇴직연금 제공에 사용된다. 현실적으로는 사람들이 주택이나 의료 등 다른 항목에 허용된 최대값을 지출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는 실질적인 노후소득(retirement income)은 나타난 것보다 높을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인도네시아의 낮은 대체율은 강제적 기여의 규모가 작기 때문이다. 동 아태지역의 평균 대체율은 44%이고 남아시아는 56%, 아태지역 OECD 회원국은 42%이다. 아태지역 여성들의 대체율은 남성들보다 낮은 경향이 있는데 일차적으로는 여성의 연금수급연령이 남성보다 낮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이다. 반면 OECD 국가에서는 남녀의 연금수급이 이미 동일하거나 앞으로 동일해진다.

표 1.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연금

연금 제도의 유형			연금 제도의 유형		
공적		사적	공적		사적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확정기여형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확정기여형
<b>동아시아/태평양</b>			<b>남아시아</b>		
	●		●	●	
중국					
홍콩		●	●		
인도네시아	●			●	
말레이시아		●			
필리핀	●				
싱가포르		●			
태국	●				
베트남	●				
			<b>OECD 아시아/태평양</b>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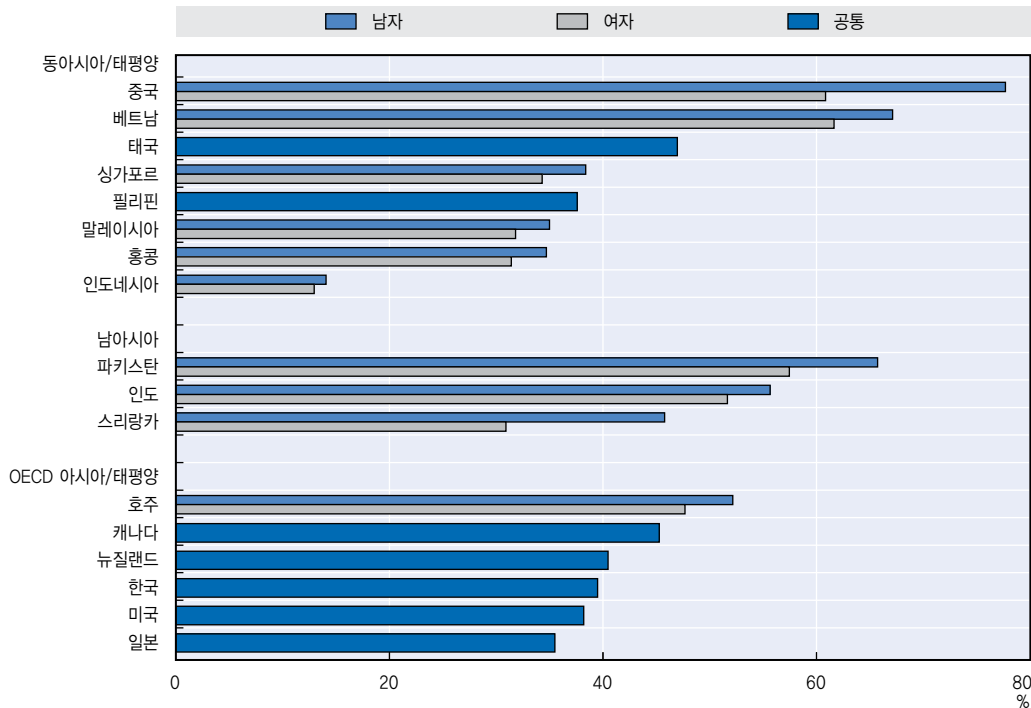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04583>

그림 1. 대체율



출처: OECD pension model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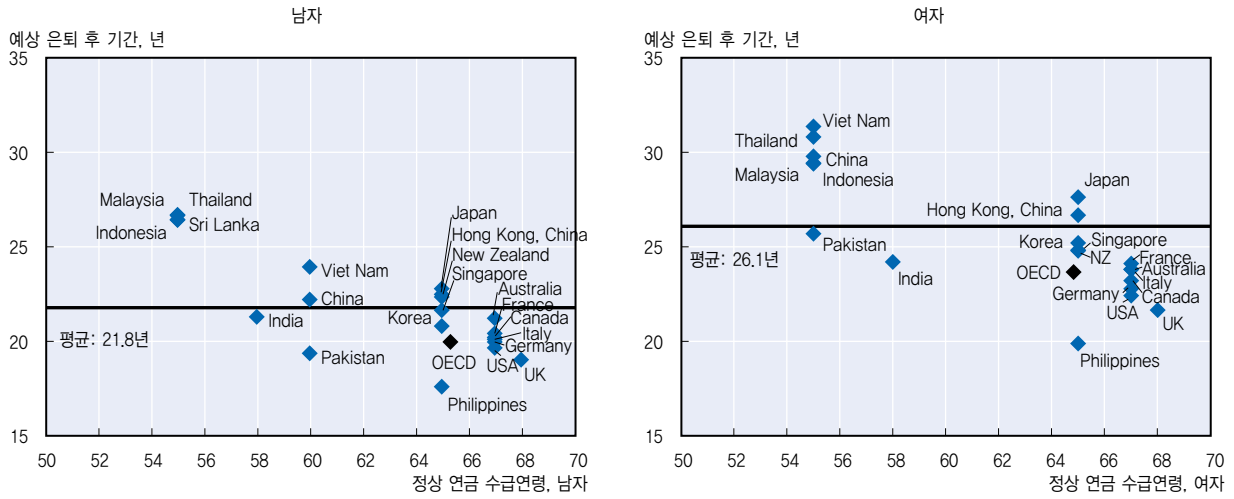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04602>

## 연금수급 연령과 퇴직

OECD 국가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연금수급연령은 여전히 65세이나 캐나다와 이탈리아에서 최근 발표된 연장안에 따르면 67세로 상향 조정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많은 국가에서 미래 연금수급 연령과 기대수명의 연장을 직접 연계하고 있으므로 연금수급 연령의 상향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대로 OECD의 아태지역 국가의 경우 남자의 평균 연금수급 연령은 약 59세, 여자는 57세에 불과하다. 그러나 OECD 외 국가들은 기대수명이 약간 짧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연금수급연령이 이른 것이 합리적일 수도 있다. 국가별 연금수급연령과 기대수명 정보를 종합하면 은퇴 후 기간을 예상할 수 있다. 그림 2는 조사대상 국가 남성의 평균 은퇴 후 기간을 21.8년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OECD 국가의 경우 평균은 19.9년에 불과하고 OECD 외의 아태지역 국가평균은 23년이다. OECD 비 회원국 남성의 평균 연금수급연령은 OECD 국가보다 6년이 이른다. 기대수명이 짧기 때문에 이 두 그룹간의 은퇴 후 기간 차이가 줄어들기는 하지만 없어지지는 않는다. 여성의 경우 차이가 더 크다. OECD 비 회원국의 연금수급 연령은 OECD 국가보다 7년 이른다. 예상되는 은퇴 후 기간은 OECD 국가의 여성은 23.7년, 남성은 19.9년이다.

이것은 주로 기대수명의 남녀간 차이를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기타 아태지역 국가의 경우 여성의 예상 은퇴 후 기간은 28년으로 OECD 국가보다 4년이 더 길다. 이는 많은 국가에서 여성의 기대수명이 더 길고 연금수급연령은 더 낮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그림 2는 연금수급 가능연령이 말레이시아와 스리랑카의 경우 남녀 모두 예외적으로 낮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2. 예상 은퇴 후 기간



출처: OECD pension models.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04621>

실제로 스리랑카 여성들은 50세에 연금수급이 가능하며 은퇴 후 기간을 35년 이상 예상할 수 있는데 이는 기여금을 납부한 근로기간보다 훨씬 더 길 확률이 높다. 또한 중국과 태국에서는 여성의 연금 수급연령이 두드러지게 낮다.

그림 2의 결과는 인구 사망률 자료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는 가입률이 거의 보편적인 OECD 국가를 분석할 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OECD 비 회원국의 경우 연금제도의 적용을 받는 집단은 소수이며 특권층이라고 볼 수 있다. 이들은 기여금을 납부할 여유가 있는 집단이며 기대수명도 일반적으로 인구 전체에 비해 길다. 그러므로 그림 2는 OECD 국가와 OECD 비 회원국 간의 예상 은퇴 후 기간 차이를 과소평가하고 있다. 실질적으로는 그 격차가 남자의 경우 2년, 여자의 경우 3년이상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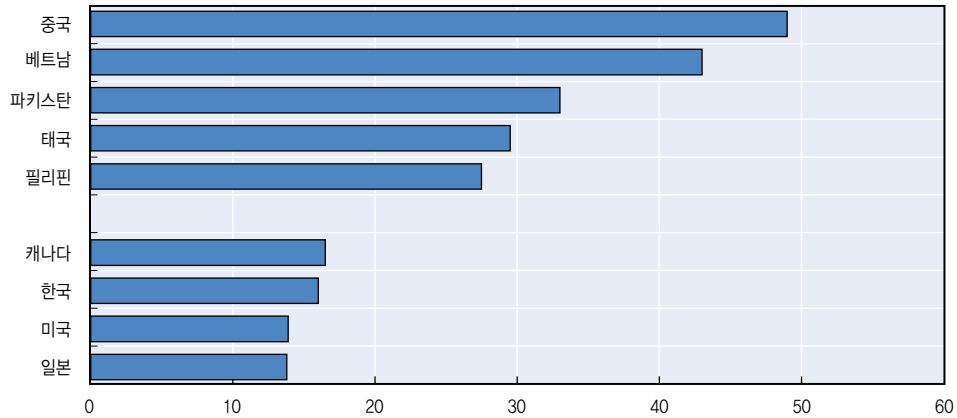
### 재정적 지속가능성

퇴직연금을 제공하는 장기적 비용을 나타내는 간단한 지표는 연금 지급에 필요한 기여금의 정상상태 기여율 (steady-state rate of contributions)이다. 그림 3은 많은 아태 지역 연금제도가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중국은 현재 남자는 60세부터 대체율 78%, 여자는 55세부터 61%를 목표로 하고 있다. 연금 지급액의 물가/소득 혼합 연계 비용을 감안하면 이러한 급여액을 제공하는 비용은 소득의 50%에 육박하게 된다(20세부터 정상 연금수급연령인 55세 또는 60세까지 기여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가정). 이러한 정상상태 기여율 지표는 기타 아태지역 국가에서도 높게 나타난다. 이 지표가 높게 나타나는 이유 경우 - 중국, 베트남, 파키스탄 - 는 목표 대체율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른 연금수급연령 - 특히 여성의 경우 - 역시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중국과 필리핀처럼 연금 지급액을 물가만이 아니라 임금과 물가를 혼합하여 연계하게 되면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한다.

뿐만 아니라, 이 간단한 재정적 지속가능성 지표는 퇴직연금(retirement income) 비용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첫째, 연금 수급액은 독신자를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부부 및 유족 급여 지급 비용은 고려되지 않는다.

둘째, 분석에서는 생산연령 인구의 규모 변화에 있어서 국가간 차이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

그림 3. 필요 기여율



출처: OECD pension models.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04640>

## 연금 현대화

아태지역 연금 제도의 특징 중에는 국제적 기준과 선진사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세 가지 문제가 두드러진다. 첫째, 거의 모든 확정급여형 제도가 최종 임금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둘째, 급여의 조기수급이 가능하고 실제로 조기에 수급하는 경우가 많아 은퇴 후를 위한 자금은 거의 남지 않게 된다. 이렇게 되면 이것이 진정한 연금 제도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 생기게 된다. 마찬가지로 많은 제도에서 정기적인 연금의 형태보다는 일시불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어 연금수급자가 아직 생존해 있는 상태에서 퇴직 저축이 고갈될 위험이 있다. 셋째, 생활비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연금 지급액 조정은 자의적이거나 즉흥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시간이 흐르면서 인플레이가 퇴직연금을 잠식할 가능성이 있어 초 고령층이 빈곤에 빠질 위험이 있다.

## 소득 지표

소득비례 연금제도에서 “최종”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 급여를 산정하는 것은 이해할만한 일이며 전세계적으로 흔히 사용되는 관행이다. 생애 임금 기록을 보관하여 필요한 연금 산정을 하는 것보다는 최종 임금을 기준으로 급여액을 산정하는 것이 훨씬 쉽다. 뿐만 아니라 최종 임금을 기준으로 연금을 산정하면 경력 초반에 취득한 연금 수급액에 인플레이가 미치는 영향도 쉽게 해결할 수 있다. 아태지역 국가 중에서는 베트남만이 평균 생애 임금을 기준으로 연금을 산정하고 있으며 인도와 파키스탄, 필리핀, 태국은 최종 임금을 사용한다.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는 현재 생애 평균 소득을 사용하여 연금 수급액을 산정하는 것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이들 중 약 21 개국은 전체 생애(full lifetime) 평균을, 2개국 - 캐나다와 미국 - 은 34-35년간의 소득평균을 사용한다. 이렇게 변경하게 된 것은 최종 임금이 연금제도에 미치는 바람직하지 못한 영향때문이었다. 고소득자의 경우 소득이 연령에 따라 좀더 급격히 상승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저소득 생산직 근로자들의 연령 - 소득 관계는 일정한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최종 임금을 기준으로 하면 저소득자에서 고소득자로 재분배가 일어나게 된다. 생애 소득을 기여 기준으로 삼고 최종 소득을 급여 기준으로 하는 경우 경력 초반부의 소득을 줄여 신고하는 것이 유리해진다. 이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연금 수급액을 늘리기 위해 최종 임금을 인위적으로 부풀리는 등 전략적 조작을 부추긴다. 이렇게 되면 기여금 수입은 줄고 지출은 늘게 된다.

또한, 정보기술의 발달로 기록보관이 쉬워져 최종 임금에 의존하는 대신 오랜 기간에 대한 파일 관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둘째, 전산화를 통해 초반 연도 소득의 재평가나 연계를 쉽게 수행함으로써 연금 수급권을 획득하는 기간부터 급여를 수급하는 기간까지 인플레로부터 연금을 쉽게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더 이상 인플레로부터 연금을 보호하기 위한 방편으로 최종 임금에 기반하여 연금을 산정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의미이다.

## 연금 인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연금”이라는 단어는 정기적인 지급을 의미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많은 아시아 국가에서는 연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말레이시아와 스리랑카의 경우 급여는 은퇴 시점에 일시불로 지급된다. 인도네시아 근로자들은 한번에 일시불로 수령하거나 5년동안 매년 지급받는 형태를 혼합하여 수급한다. 홍콩 근로자들 역시 일시불 수급 옵션이 있다. 그러나 전세계 대부분의 연금 제도에서는 “연금”의 형태, 즉 당사자나 유족의 사망시까지 정기적으로 수급하는 형태로 지급한다. 개인의 기대수명은 불확실하기 때문에 연금은 노후에 좀더 안정된 보호막을 제공한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오래 살게 되면 적정한 소득을 보장할 수 있도록 축적해 놓았던 부를 은퇴 후에 천천히 소비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유형의 자가보험(self-insurance)은 비효율적인데 그 이유는 본인의 사망시점을 아는 경우에 비해 소비를 자제하거나 과소비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정기적인 연금으로 지급할 경우 개인들의 리스크를 한데 모음으로써 이러한 비용이 줄어들 수 있다.

연금은 노후에 저축이 고갈될 위험에 대비한 일종의 보험이다. 이러한 “장수 보험(longevity insurance)”의 장점은 사람들이 위험 회피를 원하는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신중한 성향의 사람들이라면 연금이 없을 경우 말년에 저축이 바닥날 위험을 피하기 위해 은퇴 직후부터 소비를 가능한 자제할 것이다. 연금의 혜택은 또한 금리와 기대수명, 사람들이 장기적인 계획을 얼마나 세워놓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사람들이 퇴직저축을 연금으로 전환하려하지 않는다면 거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인데, 첫째는 상속이다. 연금이라는 것은 그 정의상 수급자 본인이 사망하면 끝난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산의 일부를 가족에게 남기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다. 유산 상속을 대가로 노후에 친지들에게 보살핌을 부탁할 수도 있다. “전략적” 이유이건 “이타적” 이유이건 상속을 원하는 경우 연금의 가치는 감소된다. 두번째 동기는 예방적 저축이다. 응급 의료상황이 갑작스럽게 벌어지면 유동성과 유연성이 필요한데 자산이 완전히 연금화되어 있다면 활용이 불가능해진다. 그러나 퇴직저축을 어느 정도 연금화하는 것은 개인의 입장에서나 정책 입안자들의 입장에서나 바람직한 일이다.

단기적 저축은 복지 제도에서 보장하지 않는 위험에 대비하고 중요한 니즈를 충족하므로 개인에게 당연히 가치있는 일이다. 과거에는 그 중요성이 특히 컸는데, 예를 들어 인도의 경우 개인고객의 저축과 실질 금리를 보장해줄 수 있는 안전한 금융기관이 부족했다. 인도 국민들이 본인의 계좌에서 조기 인출을 하지 않았다면 완전경력 근로자의 대체율은 100%에 달했을 것이다. 일부 아태지역 국가의 조기인출 규정은 낮은 노후소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노후에 대비한 저축 보호 강화나 “용도 지정”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조기인출 규정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 - 아마도 싱가포르처럼 계좌를 따로 지정하는 방식을 통해 - 이 필요하다.



## 인플레이션과 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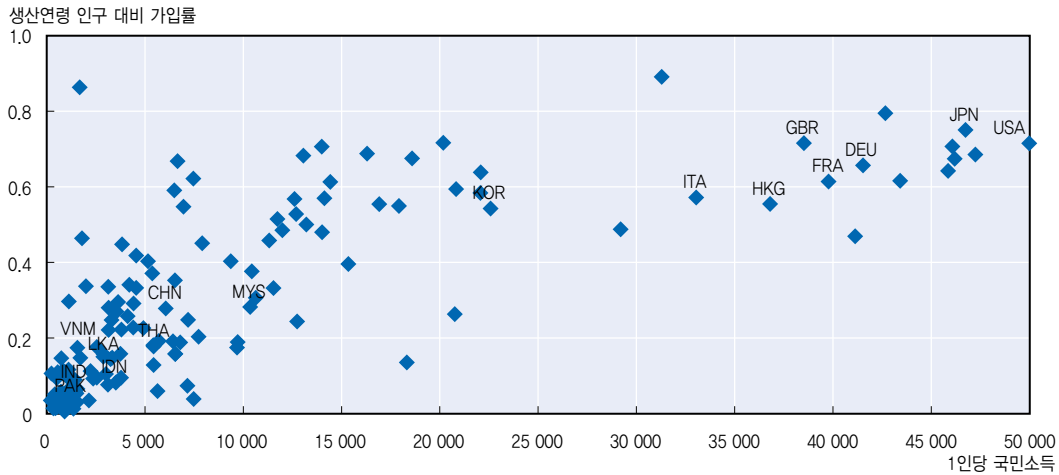
연계는 생활비나 생활수준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연금 지급액을 자동 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조정이 없으면 연금의 구매력은 급격히 하락할 수 있고 20년 이상의 은퇴 기간동안 상당히 감액될 수 있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자동 조정제도를 갖고 있는 국가가 전세계에 몇 안되었지만 오일 쇼크 이후 높은 인플레이션에 의해 거의 모든 산업국가들이 자동 연계제도를 채택하게 되었다. 이 정책의 목적은 연금 가치를 보호하고 퇴직 연금의 확실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중국과 필리핀만 연금 자동 연계제도를 갖고 있으며 두 국가 모두 물가상승과 임금 상승을 혼합하여 연계하고 있다. 베트남에서는 연금이 최저임금에 맞춰 상승한다. 반면 인도, 파키스탄, 태국의 연금 조정은 전적으로 임의적으로 이루어진다.

## 아시아의 낮은 연금 가입률

아태지역의 공식 연금제도 가입률은 OECD 국가보다 훨씬 낮다. 경제 구조가 다른 점을 감안하면 놀라운 일은 아니다. 소규모 농업에 종사하는 시골지역 인구가 많고 절대적 빈곤의 정도가 심하기 때문에 공식 사회보장제도의 적용이 어렵다. 뿐만 아니라 아직도 가족의 지원이 공식 연금제도의 역할을 부분적으로나마 대신하고 있다.

그림 4는 공식 연금제도의 가입률 - 근로가능 인구 대비 가입자의 비율로 정의 - 을 1인당 국민소득 수준과 비교하고 있다. 도표는 100여개의 국가 자료를 보여주고 있으며 아태지역 국가는 따로 표시했다. 공식연금제도 가입률과 국민소득 간에는 분명히 강력한 상관관계가 나타난다.

그림 4. 연금 가입률



출처: World Bank Pension Database.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04659>

그러나 도표에서 보면, 일부 국가 - 스리랑카, 필리핀, 베트남 - 는 1인당 국민소득이 비슷한 대부분의 다른 국가들보다 높은 가입률을 보이고 있다. 그 외 일부 국가 - 중국, 인도, 파키스탄, 태국 - 는 경제 발전의 정도를 감안하면 낮은 가입률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아태지역 국가들 중 공식 연금제도 가입자가 아닌 이들에게 안전망 노후소득을 제공하는 사회연금을 갖추고 있는 국가가 별로 없다. 가족 지원망이 약화되고 공식 연금제도 가입률은 낮은 상태로 머물러 있는 만큼 좀더 강력한 사회연금제도를 갖춘다면 노후빈곤 증가를 피할 수 있는 중요한 방안이 될 것이다.

## 고령화되고 있는 아시아

OECD 아태지역과 그외 주요 선진국에서는 전체 인구의 약 16%가 현재 65세 이상이다. 구체적으로는 호주, 뉴질랜드, 미국의 13%부터 독일의 21%, 일본의 23%까지 나타나고 있다. OECD 국가를 제외하면 아태지역 국가들은 훨씬 젊어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평균 7%이다. 필리핀은 4% 미만이고 중국은 8%, 싱가포르 9%, 홍콩은 13% 수준이다. 지금부터 금세기 중반까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조사 대상인 열 개 OECD 국가에서 16%에서 28%로 증가할 전망이다. 그러나 다른 아태지역은 평균 7%에서 21%로 증가 속도가 두 배로 예상된다.

## 도전에 맞선 변화 필요

고령화되고 있는 아시아는 곧 연금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른 퇴직 연령과 비교적 높은 연금수준은 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낮은 가입률, 조기인출과 연금 일시불 지급은 적정성 문제도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를 보여준다.

## 방법론, 보고서의 구조 및 연금제도의 특징

**본** 보고서는 이전의 한 눈에 보는 연금 아시아/태평양 판에서 채택했던 접근방식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모두 21개 국가의 연금제도 상의 개인별 미래연금수급액을 “미시경제적” 시각으로 살펴보고 있다.

본 보고서는 크게 두 개의 장으로 나뉜다. 제 1장에서는 연금 정책을 비교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명확한 “한 눈에 보는” 형식으로 제공하고 있다. 우선 각 국의 퇴직연금제도를 구성하는 여러 제도를 살펴본 후 연금 제도의 파라미터와 규정을 요약하여 제시한다.

그리고 OECD 연금 모형을 이용해 산정한 네가지 주요 지표를 제시한다.

- 첫 두 지표는 연금 분석전문가들에게 가장 친숙한 지표들이다. 둘 다 대체율, 즉 개인 소득 대비 연금 수급액이다. 소득과 퇴직연금에 대해 납부한 세금과 기여금을 감안한 총 대체율과 순대체율을 제시한다.
- 다음 두 개 지표는 연금 자산인데 역시 총 기준과 순 기준으로 제시된다. 연금자산은 연금수급연령, 임금이나 물가, 기대수명의 변화에 대한 연금 연계를 감안하고 있으므로 대체율보다 좀더 포괄적으로 연금 수급액을 측정하는 지표이다.

제 1장의 나머지 부분은 연금 - 소득 연계, 적용범위, 기대수명, 노인부양가능지수(old age support ratio)의 간략한 분석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들 각각이 연금 모형화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제 2장은 11개 OECD 비 회원국의 퇴직연금 제도에 대해 상세한 배경 정보를 제시한다. 여기에는 연금수급 연령과 기타 수급조건, 수급액 산정 기준, 조기수급과 수급연기 처리 등이 포함된다. 국가별 연구는 OECD 국가에 사용된 경제적 가정과 국가별 가정에 따른 국가별 결과를 표준 도표와 표로 요약하고 있다. 이 섹션에서는 또한 국가별 연금수급연령이 아니라 설정된 고용 기간에 따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OECD 국가의 국가별 연구는 한 눈에 보는 연금 시리즈에 나와 있다.

제 2장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연금 수급액 산정에 사용된 방법론을 설명한다. 미래 연금수급액 계산의 근거가 되는 구조 및 가입률, 기본 경제 및 재무적 가정의 세부사항을 비교하여 보여주고 있다.

### 현재의 파라미터와 규정에 근거한 미래 연금 수급액

비교 대상이 되는 연금 수급액은 현재 OECD 국가에서 법제화 된 것들과 비 회원국에서 가능한 것들이다. 이미 법제화되어 있으나 단계별로 시행되고 있는 규정 변경사항의 경우 처음부터 완전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가정했다.

모든 연금제도 파라미터의 값은 OECD 국가와 OECD 비 회원국 모두 2012년 상황을 반영한다. 산정은 현재 제도에 가입해 있고 완전경력에 마친 후 은퇴하는 근로자의 연금 지급액을 대상으로 했다. 결과값은 근로자 한 명의 급여액이다.

## 경력기간

표준 OECD 정의를 OECD 국가와 OECD 비 회원국 모두에게 사용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완전경력이란 20세에 노동시장에 진입하여 표준 연금수급연령까지 근로한 경우로 정의되는데, 물론 표준 연금수급연령은 국가마다 다르다. 즉, 경력의 기간은 법정 연금수급연령에 따라 달라지며 55세인 경우 35년, 60세인 경우 40년 등이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제 2장에서는 30년과 40년으로 설정된 경력기간에 따른 결과값을 제시한다.

## 가입률

여기 제시된 연금 모형은 공적 연금(즉, 국민계정 제도에서 정의한대로 정부나 사회보장제도에서 연금을 지급)이건 사적연금이면 관계없이 민간 부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강제 연금제도를 포함하며 각국의 민간 부문 근로자에 대한 주요 공적 제도를 모형화했다.

연금 지급액은 평균의 0.5배에서 두 배까지의 소득을 올리는 근로자들에 대해 비교하고 있다. 범위를 이렇게 설정한 것은 최빈곤층과 부유한 근로자 모두에 대한 미래 퇴직 급여액을 분석하기 위해서이다.

## 경제적 변수

비교는 모든 대상 국가에 대한 단일한 경제적 가정을 기반으로 이루어졌다. 경제 성장, 임금 상승, 인플레이션 수준이 국가마다 다르지만 동일한 가정을 사용하면 경제적 영향 없이 비교가 가능해진다. 그러므로 연금 수준의 차이는 실제 연금제도와 정부 정책의 차이만을 반영하게 된다. 본 보고서의 주요 섹션의 결과에는 이러한 가정이 적용되지만 국가별 가정에 따른 추가적 결과를 제시하는 것이 적절한 경우에는 제 2장에 포함시켰다.

지표의 기본 가정은 다음과 같다.

- 실질 소득상승률: 연 2%(가격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이는 명목 임금 상승률 4.55%를 의미)
- 개인 소득: 국가 차원의 평균에 맞춰 상승하는 것으로 가정. 즉, 개인은 근로하는 동안 매년 평균 소득과 동일한 비율을 유지하여 소득분포의 동일 지점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가정했음을 의미)
- 물가상승률: 연 2.5%
- 적립식 확정기여형 연금의 경우 관리비용을 제외한 실질수익률: 연 3.5%
- 할인율(계리적 산정을 위한): 연 2%

산정은 연금 급여 지급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가정하고 있다. 은퇴 후 확정기여형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퇴직시 계리적 공정가격으로 물가 연동 연금을 평생 받는다고 가정했으며 사망률 자료를 이용해 산정했다. 마찬가지로 명목계정제도의 명목 연금율은(대부분의 경우) 개별 국가가 채택한 연금 규정과 할인 가정을 이용한 사망률 자료를 근거로 산정했다.

## 세금과 사회보장 기여금

모형에서는 세금제도와 사회보장기여금이 미래에도 변함없을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이는 세금혜택이나 기여금 한도와 같은 “가치” 파라미터가 평균 소득에 맞춰 매년 조정되는 반면, 개인소득세율과 사회보장기여율 등 “비율” 파라미터는 변화가 없음을 의미한다.

## 평균 소득

OECD 국가의 평균 소득은 곧 발간될 한 눈에 보는 연금 2013에서 사용된 “평균 근로자”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중국과 인도, 인도네시아에 대한 추정치 역시 한 눈에 보는 연금에 포함되어 있으나 그 외의 OECD 비회원국에 대한 추정치는 서신을 통해 확보했거나 국가별 조사를 바탕으로 한 평균 소득을 사용하고 있다(표 2).

## 연금제도 설계의 주요 특징

본 보고서에서 다루고 있는 국가별 연금제도의 특징은 표 3에서 요약하고 있으며 앞 장의 분류체계에 따라 두 개 층(tier)으로 구분하고 있다. 요약이므로 제도의 세부사항 중 상당부분은 불가피하게 생략했다. 좀더 완전한 설명은 국가별 연구(제 2장)에 나와 있다.

### 첫번째 층, 재분배 제도

첫번째 층인 재분배 제도의 급여 수준은 각국의 평균 소득 대비 비율로 표현되어 있다(평균 소득은 위의 방법론 섹션에서 상세히 다루고 있다).

최저연금과 기초연금의 경우, 수급액은 20세에 노동시장에 진입해 정상 연금수급연령까지 공백없이 근로한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했다.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는 정상 수급연령이 최소 65세이지만 OECD 비회원국에서는 일반적으로 55세 또는 60세이며 표의 마지막 줄에 나와 있다. 마지막 줄은 완전경력 근로자의 첫번째 층(tier) 총 급여액을 보여준다. 근로자들이 여러 유형의 첫번째 층의 급여를 수급하는 경우도 있지만 단 하나의 프로그램만 수급가능한 경우도 있다.

### 두번째 층(tier), 보험 제도


두번째 층인 보험원리에 기초하는 제도(insurance based schemes)에 관한 정보는 소득비례와 확정기여형 제도에 대해 따로따로 나와 있다.

표 2. 평균 연 소득

	평균 소득			미 달러 대비 환율	
	국가별 통화	미 달러, 시가	미 달러, 구매력평가지수	시가	구매력 평가지수
<b>동아시아/태평양</b>					
중국	46 800	7 500	11 000	6.23	4.24
홍콩	157 800	20 400	28 500	7.75	5.54
인도네시아	16 119 000	1 600	2 200	9 799.95	7 173.22
말레이시아	30 900	10 100	15 900	3.06	1.94
필리핀	127 500	3 100	5 000	41.04	25.49
싱가포르	53 200	43 500	50 900	1.22	1.05
태국	136 000	4 400	7 600	30.59	17.80
베트남	46 080 000	2 200	5 100	20 833.33	9 098.21
<b>남아시아</b>					
인도	240 400	4 400	12 000	54.85	20.08
파키스탄	116 600	1 200	2 900	97.27	40.88
스리랑카	262 400	2 100	4 400	127.70	59.33
<b>OECD 아시아-태평양</b>					
호주	73 500	76 400	48 100	0.96	1.53
캐나다	46 900	47 000	38 300	1.00	1.22
일본	4 788 300	55 300	45 300	86.58	106
한국	38 500 000	36 100	47 800	1 065.31	805
뉴질랜드	51 300	42 400	31 600	1.21	1.62
미국	47 600	47 600	47 600	1.00	1.00
<b>기타 OECD</b>					
프랑스	36 700	48 400	40 500	0.76	0.906
독일	44 800	59 100	53 200	0.76	0.842
이탈리아	28 900	38 100	32 800	0.76	0.882
영국	35 900	58 400	53 700	0.62	0.669

PPP=Purchasing power parity(구매력 평가지수).

출처: OECD pension models.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04678>

소득비례제도에 관한 정보는 확정급여형, 포인트 형 또는 명목계정(NDC) 등 제도의 유형으로 구분된다. 이 유형 내의 큰 차이는 기여기간 1년 당 지급률, 즉 근로자가 가입기간 1년 당 취득하는 소득대체율에서 나타난다. 지급률은 연금제도에 적용되는 소득 중 비율로 표현된다.

포인트 제도의 경우 제시된 유효 지급률은 연금 포인트 가치 대비 연금 포인트 비용의 비율로서 개인 소득 대비 비율로 표현된다. 명목 계정 제도의 경우 유효 지급률은 해당 연도의 소득 비율로 연간 연금 지급액을 확보하기 위해 비슷한 방식으로 산정된다.

OECD 비 회원국의 경우 확정 급여형 제도를 가진 5개국 중 4개국이 연금 지급액 산정에 생애 소득이 아니라 최종 연도 소득을 사용하고 있다. 반면 확정급여형 제도를 가진 OECD 국가들은 생애 평균소득이나 최고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으며 최종 연도를 사용하는 곳은 없다. 아시아의 많은 국가에서 지급률은 기여 기간에 따라 달라지거나 성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베트남에서는 최초 15년은 지급률이 3%이지만 그 이후에는 남자는 2%, 여자는 3%이다.

표 3. 연금 제도 파라미터와 규정 요약

	중국	홍콩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인도	파키스탄	스리랑카
<b>첫번째 층(평균 소득의 %)</b>											
자산조사적	-	8,3	-	-	-	-	-	-	-	-	-
기초	40	-	-	-	3,1	-	-	-	-	-	-
최저	-	-	-	-	24,5	-	-	-	-	37,1	-
전반적 수급액(완전경력 근로자)	40	8,3	-	-	24,5	-	-	-	-	37,1	-
<b>두번째 층</b>											
<b>소득비례</b>											
유형	None	None	None	None	DB	None	DB	DB	DB	DB	None
지급률(개인 소득의 %)	-	-	-	-	-	-	1,33/1,5	3	-	2	-
소득 지표	-	-	-	-	max. (f5,L)	-	f5	L	f1	f1	-
재평가	-	-	-	-	p	-	p	w	d	p	-
연계	-	-	-	-	p	-	p	w	d	p	-
<b>확정기여형</b>											
기여율(개인 소득의 %)	8	5-10	5,7	23-24	-	36	-	-	15,67	-	20
<b>한도(평균 소득의 %)</b>											
공적연금	-	117,9	-	-	-	112,8	-	546,9	32,4	82,3	-
사적/퇴직연금	-	-	-	-	-	-	-	-	-	-	-
<b>연금수급연령</b>											
정상(여자)	60 (55)	65	55	55	65	65	55	60 (55)	55	60 (55)	55 (50)
조기수급(여자)	55 (50)	60	-	50	60	-	-	55 (50)	50	55 (50)	-

	호주	캐나다	일본	한국	뉴질랜드	미국	프랑스	독일 <sup>1</sup>	이탈리아	영국 <sup>2</sup>
<b>첫번째 층(평균 소득의 %)</b>										
자산조사적	27,3	18,8	20,2	2,9	-	19,3	24,3	18,9	27,7	19,9
기초	-	13,9	16,4	6,9	40,5	-	-	-	-	15,6
최저	-	-	-	-	-	-	22,2	-	61,6	10,2
전반적 수급액 (완전경력 근로자)	27,3	32,7	20,2	6,9	40,5	19,3	24,3	18,9	27,7	25,8
<b>두번째 층</b>										
<b>소득비례</b>										
유형	None	DB	DB	DB	None	DB	DB/Points	Points	NDC	DB
지급률(개인 소득의 %)	-	0,63	0,55	0,89	-	0,91 [w] <sup>3</sup>	1,75 [w] <sup>4,5</sup>	1,00	1,51	0,89 [w]
소득 지표	-	b34	L	L	-	b35	b25/L	L	L	L
재평가	-	w	w	w	-	w <sup>6</sup>	p/p	w [c]	GDP	w
연계	-	p [c]	p	p	-	p	p/p	w [c]	p <sup>7</sup>	p
<b>확정기여형</b>										
기여율(개인 소득의 %)	12	-	-	-	-	-	-	-	-	-
<b>소득상한(평균 소득의 %)</b>										
공적연금	-	107	155	121	-	231	99	150	332	112
사적/퇴직연금	249	-	-	-	-	-	297	-	-	-
<b>연금수급연령</b>										
정상(여자)	67	67	65	65	65	67	67	67	67	68
조기수급(여자)	60	60	60	60	-	62	-	63	60	-

주: 파라미터는 2012년 기준이지만 미래에 발생하는 모든 법제화된 변경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일부 국가에서는 연금수급연령을 상향조정하고 있으며 급여액 산정을 위한 소득 지표를 연장하고 있다. 여성의 연금수급연령은 남성과 다를 경우에만 표시했다. 조기 수급 연령은 해당되는 경우에만 표시했다.

- = 해당없음, [a] = 연령에 따라 변동, b = 최고년수, d = 재정적 연계, DB = 확정기여형, DC=확정기여형, f=최종년수, L = 생애 평균, NDC=명목계정, p=물가 연동/재평가, w=평균소득 연계/재평가, [w]=소득에 따라 변동, [y]=근무년수에 따라 변동.

1. 독일: 재평가는 기여율 상승분과 사적연금에 대한 잠재적 기여율에 의해 감액될 수 있음.
2. 영국: 최저 급여는 최저 크레딧으로부터 산정.
3. 미국: 소득이 낮을수록 지급률이 높고 소득이 높을수록 지급률이 낮아짐.
4. 프랑스: 두 개의 프로그램을 결합한 자료임.
5. 프랑스: 소득이 높을수록 지급률이 높아짐.
6. 미국: 60세까지 소득 재평가. 60세에서 62세까지는 조정없음. 62세부터 67세까지는 가격 재평가.
7. 이탈리아: 저소득에 대해서는 백퍼센트 가격에 연계. 연금액이 높아지면 90% 또는 75% 물가 연동.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04697>

## 확정기여형 제도

확정기여형 제도의 주요 파라미터는 근로자, 사용자 또는 정부가 개인 계정에 납부해야 하는 소득 비율이다. 아시아의 기여율은 홍콩과 중국의 5%부터 싱가포르의 36%까지 분포하며 나머지 국가들은 5%에서 24% 사이이다. OECD 국가들 중에서는 호주만 확정기여형 제도를 갖고 있으며 기여율은 12%이다.

## 재평가

이것은 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시점과 수급하는 시점 사이에 발생한 생활수준의 변화를 고려하기 위해 과거 소득을 조정하는 과정이다. 인도와 파키스탄의 확정 기여형 제도의 경우 급여액이 최종 연도 임금에 기반하고 있으므로 재평가가 필요없다. OECD 비 회원국 대부분은 공식적인 재평가 제도를 갖추고 있지 않은데 이유는 연금을 일시불로 지급해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본 보고서에서는 전체 연금기간에 걸쳐 지급이 이루어진다는 가정과 함께 가격 재평가를 사용하였다.

## 연금대상 소득 상한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는 연금 제도에 더 이상의 기여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는 소득 한도를 두고 있지만 OECD 비 회원국은 절반만이 한도를 두고 있다.

## 연금 수급 연령

OECD 국가의 대다수는 연금수급연령이 남자 65세이며 일부 국가에서는 이를 67세, 심지어는 영국처럼 68세로 연장하기 시작했다. 여자의 경우 최근의 추세는 성별에 관계없이 수급연령을 일원화하는 것이지만 일반적으로 상당히 오랜 시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OECD 비 회원국의 경우, 연금수급 연령은 5개국에서는 55세, 3개국에서는 60세이다. 홍콩, 필리핀, 싱가포르만이 현재 남성의 수급연령이 65세로 설정되어 있다. OECD 비 회원국 중 4개국은 여자의 연금수급연령이 남자보다 5년 낮아서, 스리랑카의 경우 표준 연금수급연령이 50세이다.

## 연금 급여의 연계

연금급여를 소득이 아니라 물가에 연계하면 현재 가격을 기준으로 평균 소득 대비 연금의 실질 가치가 꾸준히 하락하고 연계 규정이 바뀌지 않는 한 이러한 하락 추세는 계속될 것이다. 하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소득대비 점진적 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정치적 측면에서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여기에서는 이러한 정책이 지속될 수 없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본 보고서에서는, 수급액과 파라미터가 물가가 아니라 평균 소득에 연계된 것으로 가정했으며 현 법제상 물가에 연계된 경우에도 평균 소득 연계로 가정했다. 분명히 이러한 가정은 연금 예상 급부 산정 시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



# 제1장

## 노후소득 지표

이 장의 첫 두 지표는 대체율, 즉 개인소득 대비 연금 수급액 비율이다. 이는 소득과 퇴직연금에 대해 납부한 세금과 기여금을 감안했는지 여부에 따라 총 대체율과 순 대체율로 제시된다.

다음 두 개 지표는 연금자산으로, 역시 총 기준과 순 기준으로 제시된다. 연금자산은 대체율과 달리 연금수급연령의 차이, 연금 지급액 연계, 국가별 기대수명을 반영한다.

제 1장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적용범위, 기대수명, 인구통계학적 자료 및 연금지출 등 연금 모형화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요소들을 간략하게 분석하고 있다.

개인의 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급액 비율로 표현되는 총대체율은 아시아 내에서도 국가마다 차이가 크며 인도네시아의 14.1%부터 중국의 77.9%까지 나타난다. 이 수치는 평균 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며 평균 소득의 50%와 200%를 기준으로 한 추정치도 제시된다. 대체율은 일반적으로 소득이 증가하면 감소하며 여자보다는 남자에게 높게 나타난다.

대체율은 은퇴 전 최종 소득에 대한 연금의 비율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여기에서 사용된 지표는 개인의 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 급여액이 차지하는 비중(국가별 소득 증가율에 맞춰 재평가)으로 제시되고 있다. 기준 가정에서는 근로자들이 경력 전체에 걸쳐 국가별 평균 소득 대비 동일한 비율의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생애 평균 재평가 소득과 개인의 최종 소득은 동일하다.

평균 소득 근로자들의 경우, OECD 국가 강제적 연금의 총 대체율 평균은 남자 54.4%, 여자 53.7%이다. 아태 지역에 위치한 OECD 국가간에는 큰 차이가 없어 대체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52.3%인 호주였고 가장 낮은 국가는 35.6%인 일본이었다. OECD 비 회원국의 경우 중국의 78%부터 인도네시아의 14%까지 차이가 컸다. 다만, 두번째로 낮은 국가는 35%를 기록한 홍콩과 말레이시아로, 이는 인도네시아가 상당히 예외적인 경우임을 보여준다. 지역내 국가간 차이 역시 존재하는데 파키스탄의 대체율이 스리랑카의 1.5배 넘었고 그 외 나머지 아태지역 국가는 대체율이 35%에서 55% 사이였다. 비 아시아 OECD 국가들은 대체로 낮은 대체율을 보였으며 예외는 71%인 이탈리아, 정도는 약하지만 59%의 프랑스로 나타났다.

저소득자 - 평균의 절반에 해당하는 소득을 올리는 근로자 - 의 경우 평균 소득자보다 대체율이 높았으며 OECD 평균은 71%였다. 이는 대부분의 국가가 저소득 근로자들을 노후 빈곤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현실을 반영한다. 저소득자의 국가간 대체율 차이는 평균의 두 배에 해당하는 소득을 올리는 근로자에 대한 연금보다 훨씬 크다. 저소득자의 총 대체율이 가장 큰 곳은 중국으로 98%였는데, 이는 계속 저소득 상태인 완전경력 근로자의 경우 은퇴 후에도 근로 당시와 거의 동일한 소득을 올림을 의미한다. 총 대체율이 가장 낮은 곳은 이번에도 인도네시아였으며 저소득자의 대체율이 14%였다. 호주는


아시아 OECD 국가 중 91%로 가장 높았으며 독일의 두 배 이상이었다.

고소득자 - 평균의 두 배 소득자 - 의 경우 중국의 대체율이 이번에도 가장 높아서 68%였으며 67%인 베트남이 근소한 차이로 그 뒤를 따랐다. 베트남은 모든 소득 수준에서 동일한 대체율을 보였다. 고소득자에 대한 대체율의 국가간 차이는 저소득자나 평균소득자보다 훨씬 작았다. 이번에도 인도네시아가 최하위였으며 그 다음이 영국, 뉴질랜드, 싱가포르, 한국으로 모두 대체율 22% 미만이었다. 역시 OECD 비 회원국 대다수가 OECD 국가보다 대체율이 높았으며 이탈리아만 예외였다. 11개 OECD 비 회원국 중 5개국이 OECD 평균인 43.6%보다 높은 대체율을 보였으며 10개 OECD 국가 중에서는 1개국만 평균 이상이었다. 호주와 한국의 대체율은 호주 저소득자의 경우 대략 절반, 한국은 절반에 한참 못 미쳤다. 캐나다와 영국의 경우 저소득자의 대체율은 OECD 평균의 3분의 1수준인 반면 뉴질랜드는 4분의 1에 불과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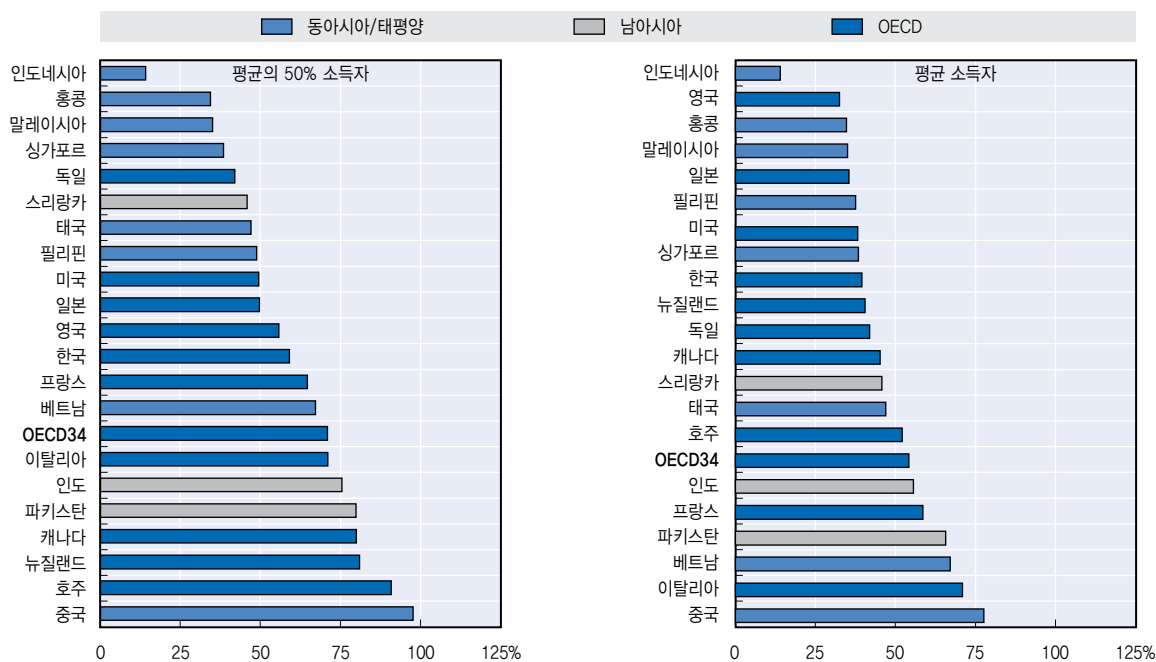
여자의 경우 대체율은 남자에 못미치거나 기껏해야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예외는 없었다. 대부분의 OECD 국가의 경우 남녀의 대체율이 동일했지만 OECD 비 회원국의 경우 태국과 필리핀을 제외하고는 여자의 대체율이 남자보다 낮게 나타났다. OECD 비 회원국의 대다수는 현재 모든 소득 수준에서 OECD 평균을 밑돌고 있으며 이는 남자의 경우와는 정반대이다. 이런 현상은 저소득자의 경우 특히 두드러졌는데 11개 OECD 비 회원국 중 9개국이 OECD 평균을 밑돌았고 중국과 인도만이 예외였다.

## 1.1. 소득 수준별 총 대체율, 남자와 여자


개인 소득(평균의 %)	남자			여자		
	50	100	200	50	100	200
<b>동아시아/태평양</b>						
중국	97.9	77.9	67.9	78.5	61.0	52.2
홍콩	34.4	34.8	29.5	32.2	31.5	29.5
인도네시아	14.1	14.1	14.1	13.0	13.0	13.0
말레이시아	35.1	35.1	35.1	31.9	31.9	31.9
필리핀	48.9	37.7	28.2	48.9	37.7	28.2
싱가포르	38.5	38.5	21.7	34.4	34.4	19.4
태국	47.1	47.1	31.1	47.1	47.1	31.1
베트남	67.3	67.3	67.3	61.8	61.8	61.8
<b>남아시아</b>						
인도	75.6	55.8	45.9	71.2	51.8	42.1
파키스탄	80.0	65.9	32.9	74.1	57.6	28.8
스리랑카	45.9	45.9	45.9	31.0	31.0	31.0
<b>OECD 아시아-태평양</b>						
호주	91.1	52.3	38.7	86.6	47.8	34.3
캐나다	80.1	45.4	22.7	80.1	45.4	22.7
일본	49.8	35.6	28.0	49.8	35.6	28.0
한국	59.2	39.6	21.9	59.2	39.6	21.9
뉴질랜드	81.1	40.6	20.3	81.1	40.6	20.3
미국	49.5	38.3	28.2	49.5	38.3	28.2
<b>기타 G7</b>						
프랑스	64.8	58.8	41.8	64.8	58.8	41.8
독일	42.0	42.0	31.5	42.0	42.0	31.5
이탈리아	71.2	71.2	71.2	71.2	71.2	71.2
영국	55.8	32.6	16.9	55.8	32.6	16.9
<b>OECD34</b>						
	71.0	54.4	43.6	70.3	53.7	43.0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04716>

## 1.2. 소득 수준별 총 대체율, 저소득자와 평균 소득자



출처: OECD pension models.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04735>

순 대체율은 총 대체율보다 편차가 훨씬 크며 인도네시아의 14.4%부터 중국의 84.7%까지 나타난다. 이는 평균 소득자에 대한 수치이며 평균의 50%와 200% 소득자에 대한 추정치도 제시된다. 대체율은 일반적으로 소득이 증가하면 감소하지만 말레이시아, 베트남, 이탈리아의 경우는 예외이며, 남자의 대체율이 일반적으로 여자보다 높다. 중국과 파키스탄의 경우 저소득자와 평균 소득자에서 특히 가장 높은 대체율을 보였다. 총 대체율과 마찬가지로 순 대체율도 인도네시아가 최하위로 나타났다.

순대체율은 개인의 순 연금 지급액을 순 퇴직전소득으로 나눈 것으로, 근로자와 연금수급자가 납부한 개인소득세와 사회보장 기여금을 고려한 값이다. 개인 소득세제도는 노인 부양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연금수급자들은 사회 보장 기여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개인 소득세는 누진적인 성격을 띠고 있고 연금 지급액은 대개 은퇴 전 소득보다 낮으므로 연금 소득에 대한 평균 세율은 근로소득세율보다 낮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소득세 제도에서 고령자에게 부가적 수당을 주거나 크레딧을 주는 방식으로 연금소득이나 연금수급자에게 혜택을 주고 있다. 그러므로 순 대체율은 일반적으로 총 대체율보다 높다.

평균 소득자의 경우, OECD 국가의 순 대체율은 남자 65.8%, 여자 65%로 총 대체율보다 11% 높다. OECD 비회원국 중 3개국(호주, 프랑스, 이탈리아)은 남자의 경우 이 평균값보다 높으며 대상 OECD 국가 중에서는 호주와 프랑스, 이탈리아가 평균보다 높았다. 아시아 내의 대체율은 지리적 위치와 상관없이 비슷했으며 OECD 국가와 OECD 비 회원국 간 차이도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호주와 캐나다만이 대부분의 OECD 비 회원국보다 대체율이 높았고 중국, 베트남, 파키스탄은 예외였다.

저소득자 - 평균의 절반 소득자 - 의 경우 평균 소득자보다 대체율이 높았으며 OECD 평균이 81.7%였다. 이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저소득 근로자들을 노후 빈곤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저소득 근로자의 국가간 대체율 차이는 아시아 국가의 경우보다 OECD 내에서 훨씬 작게 나타났다. 저소득자의 순 대체율이 가장 높은 곳은 중국으로 106.4%였으며, 이는 계속해서 저소득을 올린 완전경력 근로자의 경우 은퇴 후 근로시보다 더 많은 소득을 올림을 의미한다. 호주 역시 저소득자의 대체율이 완전 대체율을 약간 웃돌아 100.5%를

기록했다. 대체율이 가장 낮은 곳은 이번에도 인도네시아로 평균의 50% 소득을 올리는 완전경력 근로자의 대체율이 14%에 불과했다. 해당 소득수준 근로자의 경우 홍콩,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의 대체율은 평균 소득 근로자 대비 약간 낮았다.

고소득자의 경우 - 평균소득의 두 배인 근로자 - OECD 평균은 54.6%로 떨어졌으며 이탈리아만 예외였고 평균소득자나 50% 소득자에 비해 대체율이 낮았다. 아시아에서는 말레이시아와 스리랑카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추세가 나타났으며, 말레이시아의 고소득자 대체율은 모든 동 아태지역 국가 가운데 중국과 베트남의 뒤를 이어 세번째로 높았다. 대체율이 가장 낮은 곳은 이번에도 인도네시아였다. 다른 국가들과의 격차는 다른 소득수준보다는 작았으며 홍콩의 경우 인도네시아의 두 배를 약간 넘는 대체율을 보였다. 평균의 50% 소득 수준과 비교했을 때 싱가포르의 대체율은 23.8%로 절반을 약간 넘었고 뉴질랜드는 이전 수준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했으며 캐나다와 영국은 3분의 1을 약간 상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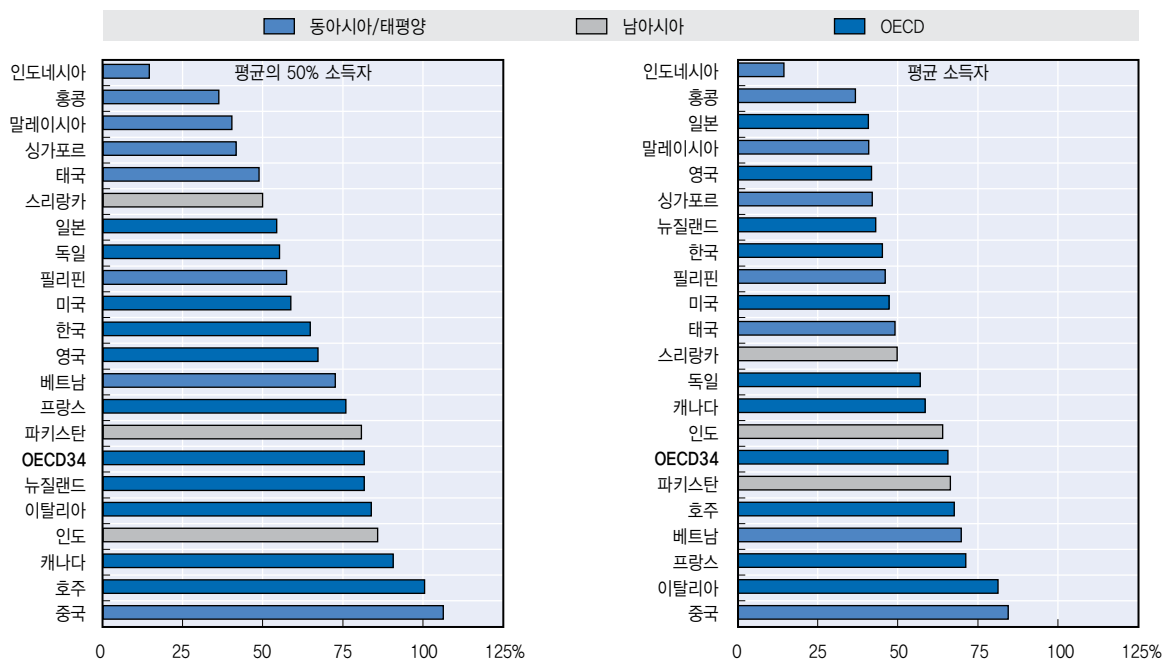
여자의 경우, 순대체율은 남자와 같거나, 일반적으로는 낮았으며 모든 대상 국가에서 마찬가지였다. 필리핀과 태국의 대체율은 남자와 동일한 반면 스리랑카는 여자의 대체율이 모든 소득 수준에서 남자의 3분의 2 미만이었다. 스리랑카의 대체율이 이렇게 낮은 것은 여자의 연금수급연령이 남자보다 낮기 때문이다.

1.3. 소득 수준별 순대체율, 남자와 여자

개인 소득(평균의 %)	남자			여자		
	50	100	200	50	100	200
<b>동아시아/태평양</b>						
중국	106.4	84.7	75.5	85.3	66.3	58.7
홍콩	36.2	36.8	33.0	33.9	33.3	33.0
인도네시아	14.4	14.4	14.6	13.2	13.2	13.5
말레이시아	40.3	41.0	42.8	36.6	37.2	38.8
필리핀	57.4	46.1	36.5	57.4	46.1	36.5
싱가포르	41.6	42.1	23.8	37.2	37.7	21.3
태국	48.8	49.2	32.4	48.8	49.2	32.4
베트남	72.6	69.9	69.7	66.7	64.2	64.0
<b>남아시아</b>						
인도	85.9	64.1	55.2	80.9	59.2	50.5
파키스탄	80.8	66.5	33.3	74.9	58.2	29.1
스리랑카	49.9	49.9	51.0	33.7	33.7	34.4
<b>OECD 아시아-태평양</b>						
호주	100.5	67.7	55.6	95.6	61.9	49.2
캐나다	90.7	58.6	32.0	90.7	58.6	32.0
일본	54.3	40.8	32.8	54.3	40.8	32.8
한국	64.8	45.2	26.3	64.8	45.2	26.3
뉴질랜드	81.7	43.2	23.9	81.7	43.2	23.9
미국	58.7	47.3	37.1	58.7	47.3	37.1
<b>기타 G7</b>						
프랑스	75.9	71.4	55.1	75.9	71.4	55.1
독일	55.2	57.1	42.6	55.2	57.1	42.6
이탈리아	83.9	81.5	82.6	83.9	81.5	82.6
영국	67.2	41.8	23.9	67.2	41.8	23.9
<b>OECD34</b>						
	81.7	65.8	54.6	80.9	65.0	53.8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04754>

1.4. 소득 수준별 순대체율, 저소득자와 평균소득자



출처: OECD pension models.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04773>

아시아에서 30세에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사람들의 총 대체율은 국가마다 차이가 크며 인도네시아의 9.3%부터 베트남의 65%까지 분포한다. 이는 평균 소득자에 대한 수치이며 평균의 50%와 200% 소득자에 대한 값도 제시된다. 대체율은 일반적으로 소득이 증가하면 감소하며 여자보다 남자가 높다.

본 보고서의 기본 가정에서는 근로자가 20세에 노동시장에 진입하여 표준 연금수급연령까지 근로하는 것으로 본다. OECD 국가의 경우, 이는 일반적으로 최소 45년의 경력을 의미한다. OECD 비 회원국의 경우에는 성별과 국가에 따라 30년에서 45년의 경력기간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경력기간이 기준 가정보다 짧다. 어떤 근로자들은 20세 이후에 유급 근로를 시작하며 많은 이들이 다양한 이유로 근로 중단 기간을 갖는다. 뿐만 아니라, 특히 OECD 국가의 경우 연금의 조기수급이 일반적이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좀더 짧은 경력기간의 총 대체율을 민감도 분석으로 제시하였다. 대체 가정은, 근로시장에 30세에 진입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성별과 국가에 따라 20년에서 35년 사이의 경력 기간이 나오게 된다. 단, 경력의 길이는 은퇴 연령이 65세를 초과하는 몇몇 OECD 국가에서는 약간 더 길다.

평균 소득 근로자의 경우, 34개 OECD 국가의 평균 총 대체율은 남자 46.1%, 여자 45.5%이다. 아태지역 OECD 국가의 경우 차이가 별로 없으며 호주가 49%로 가장 높고 일본이 29%로 가장 낮다. 다만, 이 지역의 모든 국가가 OECD 평균을 크게 밑돈다는 것은 주목할만하며, 평균을 웃도는 호주와 평균을 약간 밑도는 캐나다는 예외이다. 남아시아의 경우는 파키스탄의 대체율이 인도와 스리랑카를 크게 웃돌며 파키스탄은 49.4%로 아시아에서 베트남과 중국에 이어 세번째로 높은 대체율을 보인다. 반면 인도네시아의 대체율은 9.3%에 불과하다. 사실 동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의 대체율은 8개국 중 4개국에서 30% 미만이었으며 2개 국가에서는 55%를 웃돌았는데 태국은 33%, 필리핀은 38%로 예외였다.

저소득자의 경우 대체율은 평균 소득자의 대체율과 최소한 동일했다. OECD 평균은 남자 63.2%였지만 대상 OECD 국가 중 호주와 뉴질랜드, 캐나다만 평균을 웃돌았다. 호주는


85.7%로 가장 높았으며 캐나다와 뉴질랜드는 모두 소득이 아니라 거주조사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남아시아에서는 파키스탄이 인도의 대체율을 크게 웃돌았으며 스리랑카의 두 배가 넘었고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일정한 대체율을 보였다. 동아시아/태평양의 경우에는 평균 소득자 대체율과 유사한 경향을 보였으며 중국이 71.2%로 가장 높았고 그 뒤를 65%인 베트남이 따랐으며 인도네시아는 9.3%로 가장 낮았다. 평균 소득자와 마찬가지로 국가간 차이가 있었고 30% 미만인 국가가 4개국, 65% 이상인 국가가 2개국, 태국은 33%, 필리핀은 49%였다.

고소득자들은 OECD 34개국에서 평균 대체율이 36.1%였으며 이탈리아가 대상 국가 중 유일하게 평균을 훨씬 웃도는 55.8%의 대체율을 보였다. 아태지역 OECD 국가의 경우 대체율 차이가 거의 없어 이들 중 3개국의 격차가 3% 미만이었으며 호주가 29.3%, 미국이 28.2%였고 한국이 이보다 낮은 17%였다. 남아시아에서는 파키스탄이 기여금 한도 때문에 인도, 스리랑카보다 낮은 대체율을 보였다. 베트남의 대체율은 이번에도 파키스탄보다 높았고 65%로 고소득 수준에서 가장 높았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동아태지역 국가 중 베트남과 중국은 나머지 6개국보다 대체율이 크게 높았다. 대체율이 가장 낮은 곳은 인도네시아로 9.3%에 불과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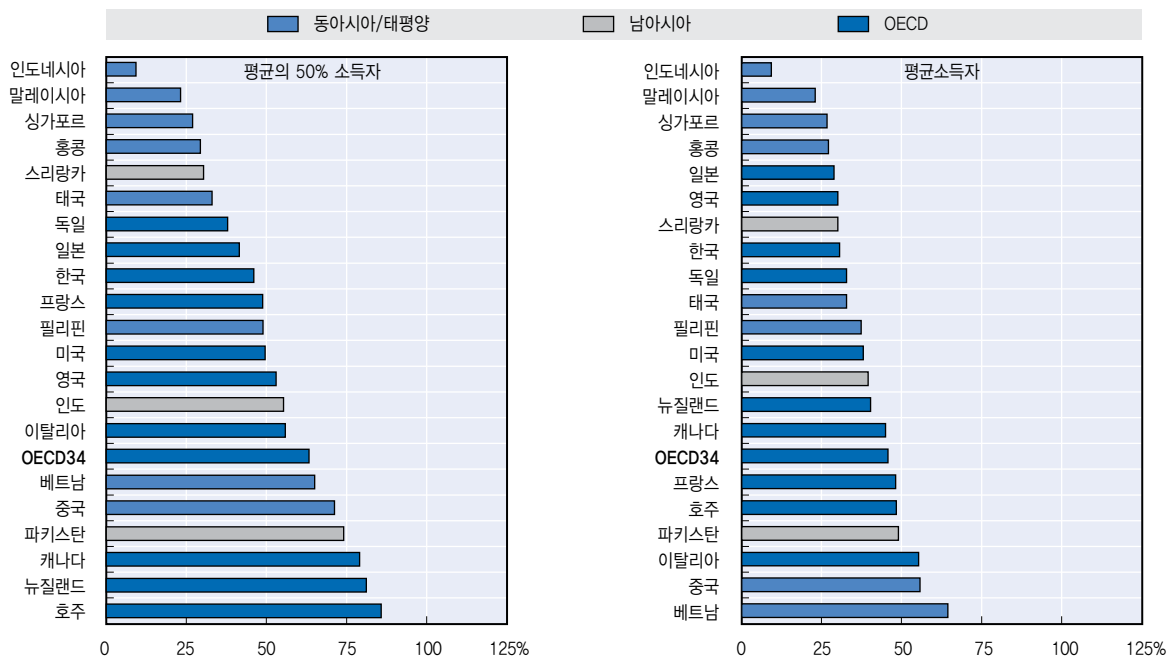
여자의 경우 대체율은 남자보다 낮거나 기껏해야 동일한 수준이었고 예외는 없었다.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는 남녀의 대체율이 동일했지만 OECD 비 회원국에서는 태국과 필리핀을 제외하고는 여자의 대체율이 남자보다 낮았다.

1.5. 소득 수준별 총 대체율: 노동시장 진입연령 30세, 남자와 여자


개인 소득(평균의 %)	남자			여자		
	50	100	200	50	100	200
<b>동아시아/태평양</b>						
중국	71.2	56.2	48.7	54.6	42.1	35.9
홍콩	29.4	27.3	25.0	27.8	24.9	22.4
인도네시아	9.3	9.3	9.3	8.5	8.5	8.5
말레이시아	23.2	23.2	23.1	21.0	21.0	21.0
필리핀	48.9	37.7	28.2	48.9	37.7	28.2
싱가포르	26.9	26.9	15.2	24.1	24.1	13.6
태국	33.0	33.0	21.8	33.0	33.0	21.8
베트남	65.0	65.0	65.0	60.0	60.0	60.0
<b>남아시아</b>						
인도	55.3	39.9	32.2	52.3	37.1	29.6
파키스탄	74.1	49.4	24.7	74.1	41.2	20.6
스리랑카	30.3	30.3	30.3	19.1	19.1	19.1
<b>OECD 아시아-태평양</b>						
호주	85.7	48.7	29.3	82.4	45.5	26.1
캐나다	79.0	45.4	22.7	79.0	45.4	22.7
일본	41.5	29.1	22.5	41.5	29.1	22.5
한국	46.0	30.8	17.0	46.0	30.8	17.0
뉴질랜드	81.1	40.6	20.3	81.1	40.6	20.3
미국	49.5	38.3	28.2	49.5	38.3	28.2
<b>기타 G7</b>						
프랑스	48.8	48.5	36.2	48.8	48.5	36.2
독일	37.9	33.0	24.8	37.9	33.0	24.8
이탈리아	55.8	55.8	55.8	56.0	56.0	56.0
영국	53.0	30.3	15.7	53.0	30.3	15.7
<b>OECD34</b>	<b>63.2</b>	<b>46.1</b>	<b>36.1</b>	<b>62.6</b>	<b>45.5</b>	<b>35.7</b>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04792>

1.6. 소득 수준별 총 대체율: 노동시장 진입연령 30세, 저소득자 및 평균소득자



출처: OECD pension models.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04811>

연금예상급부의 규모를 나타내는 총 연금자산은 가장 높은 수치가 중국 저소득자 남자의 19.1이고 가장 낮은 수치가 인도네시아 고소득자의 2.6이었다. 중국 여자의 연금자산은 실제로 훨씬 높아서 19.7이었으며 이는 평균 생애 소득의 50% 소득자의 경우 은퇴 후 강제적 연금으로부터 지급하는 연금자산의 가치가 소득수준의 19.7배라는 의미이다. 중국은 다른 아시아 국가보다 연금 자산의 수준이 훨씬 높았으며 베트남 남자의 경우도 모든 소득수준에서 15를 넘었다.

연금자산은 각 국가의 강제적 연금제도가 약속한 연금 예상급부에 해당하는 연금 지급액만큼의 필요한 일시금의 규모를 의미한다. 연금 자산은 총 연 개인소득의 배수로 측정하고 표시한다. 여기에서는 평균의 50%, 100%, 200% 소득 근로자의 연금자산을 남녀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좀더 완전한 그림을 보려면 국가간 연금수급연령과 평균수명 차이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서 OECD 국가의 일반적인 연금수급연령은 남자 65세인 반면 OECD 비 회원국의 경우 55세나 60세이다. OECD 비 회원국의 평균수명이 OECD 국가에 비해 짧다는 것이 나중에 나오기는 하지만 연금수급연령에 도달한 이들의 경우에는 OECD 비 회원국의 실제 노후 기간이 더 길다.

OECD의 평균 연금자산은 평균소득자의 경우 9.3, 평균의 50% 소득자는 12.3, 200% 소득자는 7.4이다. 이탈리아를 제외하고 다른 OECD 국가들은 평균소득자와 200% 소득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이 평균 미만이다. 아태지역 OECD 국가들의 경우 모든 소득수준에서 OECD 평균 미만이며 호주와 뉴질랜드의 저소득자만 예외이다. OECD 비 회원국 중에서는 중국과 인도, 베트남이 모든 소득수준에서 평균 이상이었고 스리랑카는 200% 소득 수준에서 연금자산이 평균 이상이었다.

중국은 모든 소득 수준에서 연금자산이 가장 컸으나 200% 수준에서는 베트남이 중국보다 약간 높았다. 연금자산이 가장 작은 곳은 인도네시아로 모든 소득수준에서 2.6을 기록했다. 중국의 연금자산은 평균 50%에 해당하는 생애 소득을 올린 남자의 경우 인도네시아의 7배가 넘는다.

연금자산의 수준은 다른 모든 국가에서는 소득 수준이 올라가면 일정하게 유지되거나 하락한다. 중국의 경우 평균의

200% 소득자의 경우 연금자산의 수준은 50% 소득자의 약 3분의 2이다.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인도, 일본, 한국, 미국도 마찬가지이나 모든 경우에 있어서 평균의 200% 소득자의 실제 일시불 가치는 최소한 두 배이다. 예를 들어 중국의 경우 평균의 50% 소득자의 일시불은 평균소득의  $19.1 * 0.5 = 9.6$ 배이며 평균의 200% 소득자의 경우 평균 소득의  $13.3 * 2.0 = 26.6$  배이다. 뉴질랜드의 경우 평균의 200% 소득자 연금 자산은 평균소득자의 절반이며 평균소득자의 연금자산은 50% 소득자의 절반이다. 뉴질랜드의 강제연금은 소득에 근거한 것이 아니므로 모든 소득수준에 대해 남자는 개인 소득의 8.8배, 여자는 9.9배의 연금 자산이 예상된다. 남녀간 차이는 기대 수명의 차이 때문에 나타난다.

남아시아의 경우 3개국 모두 평균소득 수준에서는 동일한 연금자산을 나타냄으로써 지역적 차이가 별로 없었으며 저소득자의 경우 인도가, 고소득자는 스리랑카가 높았다.


앞서 언급한대로 여자의 연금자산 수준은 남자보다 높은 경우가 많다. 스리랑카만 여자보다 남자가 높으며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는 모든 소득수준에서 연금자산 수준이 동일했다. 여자의 연금자산 차이는 남자보다 커서 50% 소득자의 경우 중국의 20에서 모든 소득자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2.6까지 넓게 분포했다. 소득증가에 따른 연금자산 하락률은 모든 국가에서 남녀간에 동일하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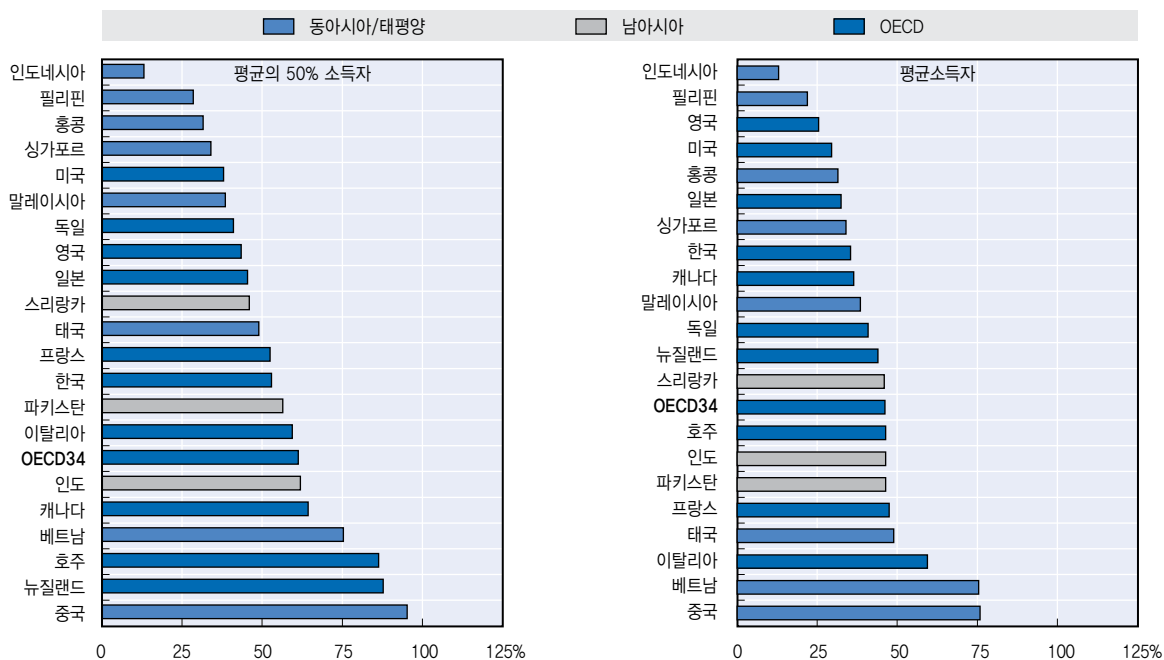
## 1.7. 소득별 총 연금자산, 남자와 여자

개인 연 총 소득의 배수

개인 소득(평균의 %)	남자			여자		
	50	100	200	50	100	200
<b>동아시아/태평양</b>						
중국	19.1	15.2	13.3	19.7	15.3	13.1
홍콩	6.3	6.3	5.4	6.7	6.6	6.1
인도네시아	2.6	2.6	2.6	2.6	2.6	2.6
말레이시아	7.7	7.7	7.7	7.7	7.7	7.7
필리핀	5.7	4.4	3.3	6.8	5.3	3.9
싱가포르	6.8	6.8	3.9	6.8	6.8	3.9
태국	9.8	9.8	6.5	10.7	10.7	7.1
베트남	15.1	15.1	15.1	19.2	19.2	19.2
<b>남아시아</b>						
인도	12.4	9.3	7.7	13.0	9.6	7.9
파키스탄	11.3	9.3	4.6	13.2	10.3	5.1
스리랑카	9.2	9.2	9.2	7.6	7.6	7.6
<b>OECD 아시아-태평양</b>						
호주	17.3	9.3	6.5	19.0	9.7	6.5
캐나다	12.9	7.3	3.7	14.6	8.3	4.1
일본	9.1	6.5	5.1	10.5	7.5	5.9
한국	10.6	7.1	3.9	12.4	8.3	4.6
뉴질랜드	17.6	8.8	4.4	19.8	9.9	4.9
미국	7.6	5.9	4.4	8.5	6.6	4.9
<b>기타 G7</b>						
프랑스	10.5	9.5	6.8	12.5	11.4	8.1
독일	8.2	8.2	6.2	9.6	9.6	7.2
이탈리아	11.9	11.9	11.8	13.7	13.7	13.5
영국	8.7	5.1	2.6	9.5	5.6	2.9
<b>OECD34</b>	<b>12.3</b>	<b>9.3</b>	<b>7.4</b>	<b>14.1</b>	<b>10.6</b>	<b>8.4</b>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04830>

## 1.8. 소득별 총연금자산, 저소득자와 평균소득자



출처: OECD pension models.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04849>

연금지급액의 현재가치인 순연금자산 역시 국가 별로 차이가 있으며 중국 남자의 19.1(여자는 19.7)부터 인도네시아 남녀의 2.6까지 분포한다. 총 연금자산과 마찬가지로 중국이 다른 국가들을 크게 상회하며 모든 소득 수준에서 OECD 평균의 두 배에 달한다. 그러나 베트남은 200% 소득 수준에서 중국보다 높고 그 뒤를 스리랑카가 따르고 있다.

순 연금자산은 각국의 강제적 연금제도에서 약속한 연금지급액에 필요한 일시불에서 개인소득세와 사회보장 기여금을 제외한 금액의 규모를 나타낸다. 순 연금자산은 각국의 연간 개인소득의 배수로 측정되며 표시된다. 총 소득은 근로시 납부한 세금 및 기여금과 은퇴 후 납부한 세금 및 기여금의 효과를 분리하기 위한 비교장치(comparator)로 사용된다. 이는, 연금에 대해 소득세와 기여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다면 총 연금자산과 순 연금자산이 동일하다는 의미이다. 도표에서는 남자와 여자의 총 연금자산과 순 연금자산을 각각 비교하고 있다. 45도선 위에 놓인 국가는 연금 소득에 대한 세금이 없으므로 총 연금자산과 순 연금자산이 동일한 국가이다.

평균소득자의 순 연금자산과 총 연금자산이 동일한 OECD 국가는 2개국으로 호주와 캐나다였으며 모든 소득 수준에서 동일하게 나타났다. OECD 비 회원국의 경우에는 대다수의 국가에서 순 연금자산이 총 연금자산과 동일하게 나타났다. 평균 소득자의 경우 두 연금자산의 값이 다르게 나타난 국가는 없었다. 사실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두 연금자산이 다른 OECD 비 회원국은 한 곳뿐이었는데 고소득자의 중국이다.

OECD 평균은 저소득자 11.4, 평균소득자 8.7, 고소득자 6.6이다. 호주와 이탈리아는 평균소득자의 연금자산이 더 높았으며 200% 소득수준에서 더 높게 나타난 국가는 이탈리아뿐이었고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는 50% 수준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총 연금자산과 마찬가지로 뉴질랜드의 경우 소득이 2배 늘 때마다 순연금자산은 절반으로 떨어지는데, 이는 강제적 연금이 소득이 아니라 거주지에 근거하기 때문이다.

고소득자의 경우 OECD 비 회원국 가운데 중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 스리랑카는 OECD 평균을 웃돌았고 아시아에 위치한 OECD 국가 중 OECD 평균을 웃도는 곳은

한 곳도 없었다. 중국과 베트남은 둘 다 OECD 평균의 두 배에 달했다. 다른 OECD 국가 간의 차이도 뚜렷했는데 이탈리아의 순 연금자산은 고소득자의 경우 영국의 세 배가 넘었다.

저소득자의 경우 중국, 베트남, 인도가 모두 OECD 평균을 웃도는 순 연금자산을 기록했다. 중국은 19.1로 인도네시아의 일곱 배를 넘었다. OECD 국가의 경우 여섯 개 아태지역 회원국 중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 3개국만이 OECD 평균을 넘는 순 연금자산을 기록했다. 나머지 OECD 국가들은 모두 7.4에서 10.9 사이로 비슷했으며 모두 OECD 평균인 11.4를 밑돌았다.

여자의 경우 총연금자산과 비슷한 패턴이 나타났으며 스리랑카만 여자보다 남자의 순 연금자산이 컸고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는 이번에도 남녀가 동일했다. 나머지 국가들은 OECD와 OECD 비 회원국을 막론하고 모두 여자의 순 연금자산이 남자보다 컸다.

### 1.9. 소득 수준별 순연금자산, 남자와 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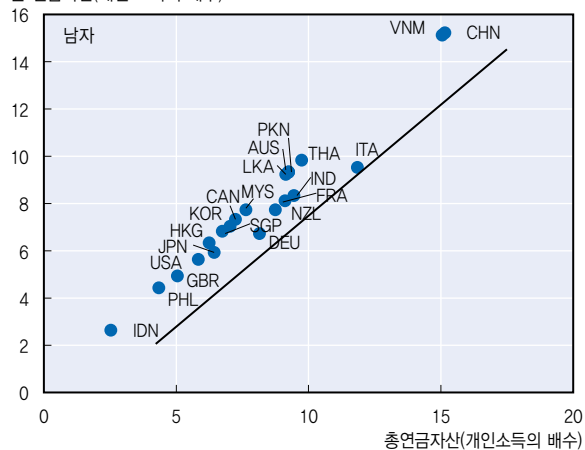
개인 연 총소득의 배수

개인 소득(평균의 %)	남자			여자		
	50	100	200	50	100	200
<b>동아시아/태평양</b>						
중국	19.1	15.2	13.1	19.7	15.3	13.0
홍콩	6.3	6.3	5.4	6.7	6.6	6.1
인도네시아	2.6	2.6	2.6	2.6	2.6	2.6
말레이시아	7.7	7.7	7.7	7.7	7.7	7.7
필리핀	5.7	4.4	3.3	6.8	5.3	3.9
싱가포르	6.8	6.8	3.9	6.8	6.8	3.9
태국	9.8	9.8	6.5	10.7	10.7	7.1
베트남	15.1	15.1	15.0	19.2	19.2	19.2
<b>남아시아</b>						
인도	12.4	9.3	7.7	13.0	9.6	7.9
파키스탄	11.3	9.3	4.6	13.2	10.3	5.1
스리랑카	9.2	9.2	9.2	7.6	7.6	7.6
<b>OECD 아시아-태평양</b>						
호주	17.3	9.3	6.5	19.0	9.7	6.5
캐나다	12.9	7.3	3.7	14.6	8.3	4.1
일본	8.0	5.9	4.4	9.3	6.8	5.1
한국	10.6	7.0	3.9	12.3	8.2	4.5
뉴질랜드	15.4	7.7	3.8	17.3	8.6	4.3
미국	7.5	5.6	4.0	8.4	6.3	4.5
<b>기타 G7</b>						
프랑스	9.7	8.3	5.8	11.6	9.9	6.9
독일	7.4	6.7	4.6	8.6	7.8	5.4
이탈리아	10.9	9.5	8.2	12.5	10.8	9.4
영국	8.6	4.9	2.5	9.4	5.4	2.8
<b>OECD34</b>	<b>11.4</b>	<b>8.6</b>	<b>6.4</b>	<b>12.8</b>	<b>9.7</b>	<b>7.1</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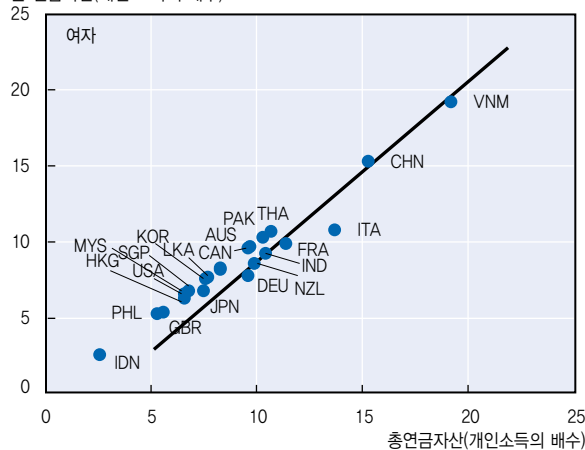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04868>

### 1.10. 평균소득자의 총 연금자산 vs. 순 연금자산, 남자와 여자

순 연금자산(개인 소득의 배수)




순 연금자산(개인 소득의 배수)



주: 두 도표 척도 모두 총 연금자산의 상한선을 개인 소득의 15배로 설정했으며 양쪽 도표 모두 룩셈부르크와 네덜란드는 제외했고 우측의 여성 도표에서는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를 제외했다.

출처: OECD pension models.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04887>

연금수급액과 개인소득 간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연금 - 소득 간 관계는 국가별로 큰 차이가 있다. 인도네시아와 홍콩, 특히 뉴질랜드는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는 반면 베트남과 중국, 파키스탄은 연금 수급액과 개인 소득간에 강력한 상관관계가 있다. 여기에서는 각국의 개인의 은퇴 전 소득과 연금 급여액 간의 상관관계를 보여주기 위해 상대적 연금 수준을 사용한다. 상대적 연금수준은 평균 소득수준의 0.5배에서 2배까지의 개인 소득에 대해 제시된다.

연금 수급액과 개인 소득 간의 상관관계의 정도는 상대적 연금수준, 즉 총 개인연금을 평균 소득으로 나눈 값(대체율에서처럼 개인별 소득으로 나누지 않음)을 이용해 측정한다. 이것은 연금 적정성 지표로 가장 적절한데 각국의 연금 수급자가 평균 소득에 관련하여 수급하게 되는 급여액 수준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개인 대체율은 상당히 높을지라도 해당 국가 차원의 평균 소득 대비 적은 금액만을 수급할 수도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저소득 근로자의 대체율이 100%라면 급여액은 해당 국가의 평균 소득의 50%에 불과할 것이다. 평균 소득자의 경우 대체율과 상대적 연금자산은 같다.

도표의 세로축은 상대적 연금수준, 가로축은 개인의 은퇴 전 소득을 나타낸다. 국가는 지역 및 OECD 가입 여부로 분류했다. 동아태 지역 국가는 8개국이므로 결과를 기준으로 두 개 집단으로 나누었다.

첫번째 집단(패널 A)에서는 대상이 되는 4개국 모두 연금 수급액과 은퇴 전 소득 간에 상관관계가 전혀 없거나 거의 없었다. 도표에 나타난 모든 국가의 편차가 크지 않았으며 필리핀과 싱가포르가 특히 그러했다. 이들 국가의 그래프는 평균값과 평균소득의 약 170% 사이에서 일정한 값에 도달한다. 이는 동일 지역의 나머지 4개국(패널 B)과는 대조되는 결과인데 패널 B의 국가들은 연금 수급액과 은퇴 전 소득간의 상관관계가 훨씬 강하게 나타났다. 예를 들어 베트남의 경우는 범위가 34%에서 135% 사이였으며 7%에서 28%사이인 인도네시아, 18%에서 42% 사이인 싱가포르와 대조가 된다. 베트남의 경우 일시불로 지급되는 연금을 연 수급액으로 환산한 것이므로 연금대상 소득 상한선이 없다. 싱가포르는 다른 제도를 갖고 있으며 최대 기여수준이 평균을 크게 웃돌지 않는 소득에 적용되는데, 이런 이유로 인해

그래프가 평균 소득의 100%를 약간 상회하는 것이다. 태국도 마찬가지로이지만 훨씬 더 높은 소득 수준을 대상으로 한다.

패널 C는 남아시아 국가들로 모든 국가가 연금 수급액과 은퇴 전 소득 간의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으나 그 정도는 서로 다르다. 인도와 스리랑카는 소득과 연금 수급액 간에 명확한 선형 관계가 존재하는데 이는 연금제도의 상한선이 모형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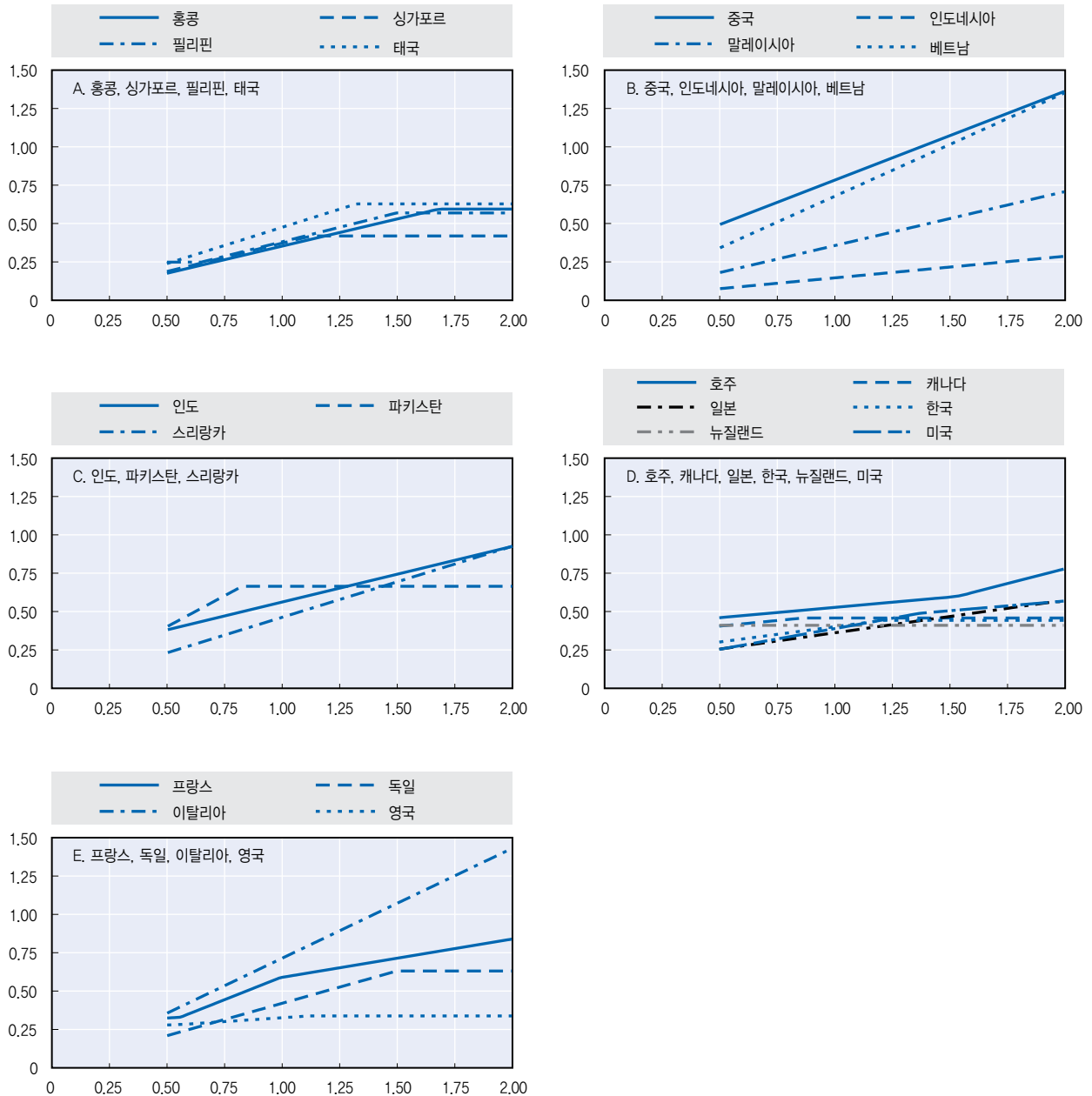
나머지 두 도표인 패널 D와 패널 E는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하며 패널 D는 아태지역 회원국, 패널 E는 그의 회원국들이다. 패널 D에서는 호주와 일본, 뉴질랜드의 연금 수급액과 은퇴 전 소득 간에 아무런 상관관계가 나타나 있지 않다. 사실 뉴질랜드에서는 연금이 거주조사 결과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되고 소득과는 전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 한국의 경우에는 약간의 상관관계가 나타나기는 하지만 평균 소득의 125% 선에서 평평해지는데 이는 연금대상소득 한도가 있으며 평균 소득의 125% 수준에서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이다.

그 외 다른 OECD 회원국의 경우는 독일과, 특히 영국에서는 상관관계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프랑스의 경우 32%에서 84%까지는 상관관계가 강했으나 가장 강한 상관관계를 보인 곳은 이탈리아였다(이탈리아는 앞서 언급한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연금대상소득 한도가 국가 평균 소득의 세 배를 넘는 수준에 설정되어 있다).

연금 소득에 한도를 두는 국가도 있고 기여금 수준에 한도를 두는 국가도 있기 때문에 연금 수급액과 개인 소득간의 상관관계는 특정 소득 수준 전까지는 명확히 존재한다 할지라도 특정 수준에 도달하면 사라질 수도 있다.

### 1.11. 은퇴 전 소득과 연금 수급액 간 상관관계

총 연금 수급액의 국가별 평균소득 중 비율



출처: OECD pension models.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04906>

강제적 연금제도의 적용비율인 가입률 수준은 OECD 비 회원국의 경우 15세-64세 인구 가입률이 홍콩의 55.4%부터 파키스탄의 3.1%까지 나타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OECD 평균은 64.7%이며 일본은 무려 75%에 달한다. 근로인구의 경우 OECD 비 회원국은 78.9%부터 10.3%인 반면 OECD 평균은 85.6%로 올라가며 이번에도 일본이 95.4%로 가장 높다.

가입률은 강제연금제도의 적용을 받는 사람들의 비율로 정의된다. 본 보고서에서 사용한 측정지표는 1) 15세에서 64세 인구, 2) 경제활동인구이다. 가입 비율은 한 연금제도를 은퇴 전 인구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지표이며 미래의 추세를 보여주는 지표로 기능할 수 있다. 가입률은 해당 연도에 강제적 연금제도의 실제 가입자로 분류되는 근로인구 또는 인구의 비율로 표현된다. 이러한 목적의 실제 가입자는 해당 연도에 주요 강제연금제도에 기여금을 납부했거나 연금 수급권을 발생시킨 이들을 포함한다.

OECD 국가의 경우 인구를 기준으로 하건 근로인구를 기준으로 하건 국가간 차이가 별로 없었다. OECD의 평균 가입 비율은 인구 기준을 사용하면 65%, 근로인구 기준을 사용하면 86%였다. 대상 OECD 국가 중 예외는 한국으로, OECD 평균과 비교했을 때 눈에 띄게 낮은 값을 보였으나 홍콩과 싱가포르를 제외하고는 동일 지역 내 다른 국가들보다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다.

나머지 비 OECD 아시아 국가들은 어떤 지표를 사용하건 가입률 수준의 차이가 컸다. 이들 국가 중 남아시아의 스리랑카만이 15세-64세 인구의 강제적 연금제도 가입률이 14%를 넘었으며 이웃국가인 인도와 파키스탄은 7%에도 못미쳤다. 동아시아지역은 사정이 나은 편이어서 홍콩과 싱가포르가 15세-64세 인구 중 하나 이상의 강제적 연금제도 가입자 비율이 각각 55%와 64%였으며 중국과 말레이시아는 30%에 육박했다. 이 지역의 인구 규모를 감안했을 때 낮은 가입률은 지역적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인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근로인구 기준을 사용하면 아시아의 가입률은 증가하지만 OECD 비 회원국 국가의 증가폭은 더 높은 기준선에서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OECD 국가보다 작다.


남아시아에서는 이번에도 스리랑카가 24%로 가장 높은 가입률을 보였고 인도는 10%를 약간 넘었으며 파키스탄은 자료가 없다. 어떤 지표를 사용하건 각국의 상대적 위치는 별로 변화가 없었다. 아시아 국가들과 전반적인 OECD 국가간 차이는 근로인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더 커져서 61.1%였고 인구를 기준으로 했을 경우 46.7%였다.

15세-64세 인구 기준과 근로인구 기준 모두 아시아의 평균값에 인도의 낮은 가입률이 큰 영향을 미쳤다. 인도의 인구가 워낙 많기 때문에 아시아 평균 산정 시 인도를 빼다면 값은 두 기준 모두 거의 6%만큼 증가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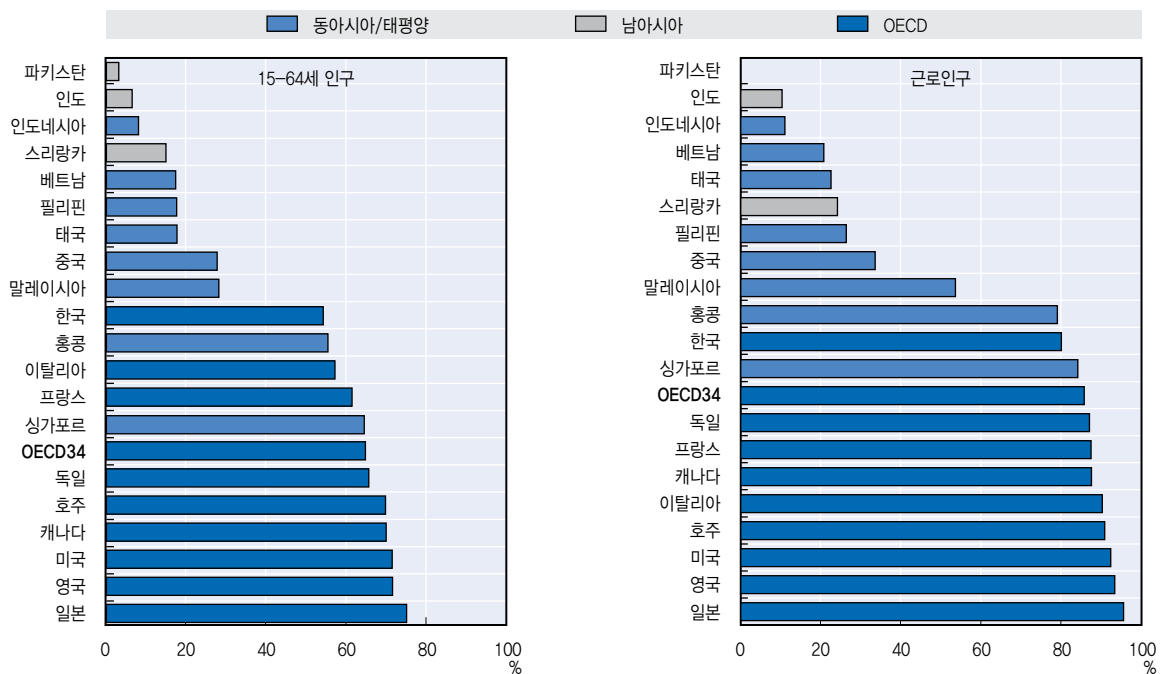
비율이 아니라 실제 가입자의 수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기대수명과 인구 추정치에 연계하여 가입률 통계를 분석하는 것이 좋다. 이러한 특징들을 분석하게 되면 현재 아시아의 여러 나라에 존재하고 있는 낮은 가입률을 개선하기 위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조명할 수 있게 된다.

1.12. 인구 및 근로인구 기준 강제연금제도 가입현황


	연도	가입자	15세-65세 인구 중 비율(%)	근로인구 중 비율 (%)
<b>동아시아/태평양</b>				
중국	2010	268 200 000	27.7	33.5
홍콩	2009	2 921 815	55.4	78.9
인도네시아	2010	12 979 473	8.0	11.0
말레이시아	2010	6 400 000	28.1	53.5
필리핀	2011	10 163 000	17.5	26.3
싱가포르	2012	1 790 000	64.0	84.0
태국	2009	8 537 000	17.7	22.5
베트남	2010	10 585 492	17.3	20.7
<b>남아시아</b>				
인도	2006	44 404 000	6.4	10.3
파키스탄	2009	0	3.1	0.0
스리랑카	2006	2 032 000	14.9	24.1
<b>OECD 아시아-태평양</b>				
호주	2005	9 578 000	69.7	90.7
캐나다	2009	16 417 000	70.0	87.4
일본	2005	63 560 000	75.0	95.4
한국	2011	19 885 900	54.2	79.9
뉴질랜드				
미국	2005	141 129 000	71.4	92.2
<b>기타 G7</b>				
프랑스	2005	24 319 400	61.4	87.3
독일	2005	36 156 000	65.6	86.9
이탈리아	2005	22 146 000	57.1	90.1
영국	2005	28 402 200	71.5	93.2
OECD34			64.7	85.6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04925>

1.13. 인구 및 근로인구 기준 강제연금제도 가입률



출처: World Bank Pension Database.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04944>

거의 모든 비 OECD 아시아 국가의 출생 시 기대수명은 모든 대상 OECD 국가보다 낮다. 단, 싱가포르와 홍콩은 예외로 이 두 곳의 기대수명은 캐나다, 독일, 뉴질랜드, 영국, 미국보다 길며 OECD 평균보다 높다. 사실 홍콩보다 기대수명이 긴 곳은 일본뿐이다. 파키스탄 여성의 기대수명은 일본보다 20년 가까이 짧지만 65세까지 생존할 경우, 격차는 딱 10년으로 줄어들며 이는 미래 연금제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대수명 예측 정보는 연금 수급 기간을 보여주는 지표가 되므로 연금 모형화에 반드시 필요하다. 최근 많은 OECD 국가에서 미래의 연금수급연령을 판단하는데 기대수명 자료가 사용되었으므로 분석 시 이를 고려하는 것은 가치있는 일이다.

자료는 2010-15년 남녀 구분하여 나와 있으며 두 개의 시점, 즉 출생시와 65세 시점에 대해 산정되어 있다. 후자는 당연히 65세까지 생존해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하지만 연금 수급 기간에 대해 더 유용한 지표가 된다. 이 외에도 2060-65년의 기대수명 추정치도 제공되어 있는데 이 역시 65세까지의 생존이 전제가 된다. 이는 본 보고서 전체의 다양한 부분에서 다루어지는 인구 고령화 문제를 감안했을 때 특히 중요성을 가진다.

세 개 지표 모두에 대한 아래 그래프는 비 OECD 아시아 국가의 기대수명이 OECD 국가보다 훨씬 낮음을 보여주고 있다.

출생 시 기대수명을 나타내는 첫번째 그래프를 보면 인도의 평균 기대수명이 남녀 모두 65세 미만으로 나타난다. 인도의 정상 연금수급연령이 확정기여형 요소의 경우 55세인 점을 감안하면 평균 연금수급 기간이 남자는 10년, 여자는 13년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반면 스리랑카의 기대수명은 남자는 약 7년, 여자는 9년 더 길어서 스리랑카의 연금 수급연령이 인도보다 훨씬 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일반적인 추세는, 여기 나타난 OECD 비 회원국 모두 남자의 평균 수명 척도의 아래쪽에 위치하며 73세 미만인 경우가 일반적인 반면 OECD 평균은 77세이고 일본은 80세에 달하지만 이것도 홍콩의 80.3세보다는 약간 낮다. 또 눈에 띄는 것은 기대수명의 남녀간 격차인데 여자의 평균 수명이 항상 더 길다. 그러나 파키스탄의 경우 격차가 1.8년에 불과한 반면

베트남은 9.2년에 달한다. OECD 전반적으로는 차이가 5.7년이며 대부분의 국가가 최소 4년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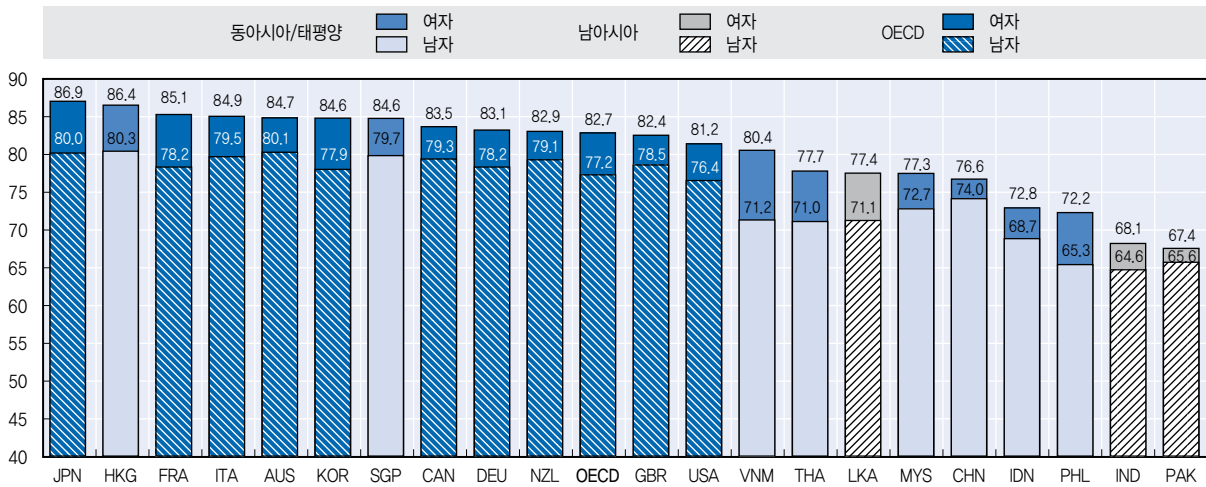
두번째 그래프는 한 걸음 더 나아간 분석결과를 보여 주는데 65세까지 생존하는 것을 가정하고 있으며 65세라는 연령은 현재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최대 정상 연금수급 연령으로 설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 연령의 결과값은 앞선 지표들보다 평균 연금 수급 기간에 대해 좀더 자세한 추정치를 제공한다. 이번에도 기대수명이 가장 긴 일본과 가장 짧은 파키스탄 간의 차이는 좁혀졌으며 현재는 남자 5년, 여자 10년이다. 역시 OECD 비 회원국이 아래쪽에 위치해 있기는 하지만 남자의 결과값은 OECD 평균과의 차이가 모두 4년 이내이다.

이 그래프의 두번째 부분은 유엔 인구 데이터베이스의 2060-65년 추정치를 바탕으로 한 예측 정보이다. 이 자료는 OECD 평균과 모든 OECD 비 회원국의 기대수명 격차가 앞으로 줄어들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OECD 국가의 기대수명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지만 아시아 국가의 증가속도 보다는 훨씬 느린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현재 이들 중 상당수의 국가에서 연금수급연령이 65세에 훨씬 못 미치고 있으므로 연금제도에 대한 압박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기대수명 결과가 연금 분석에 있어서 유용한 도구이긴 하지만 그것만 사용해서는 용도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실제로 연금 수급을 시작한 이들의 평균 수급기간에 대한 추정치는 제공할 수 있지만 실제 수급자 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구 추계자료가 필요하며 이 부분은 다음 섹션에서 다룰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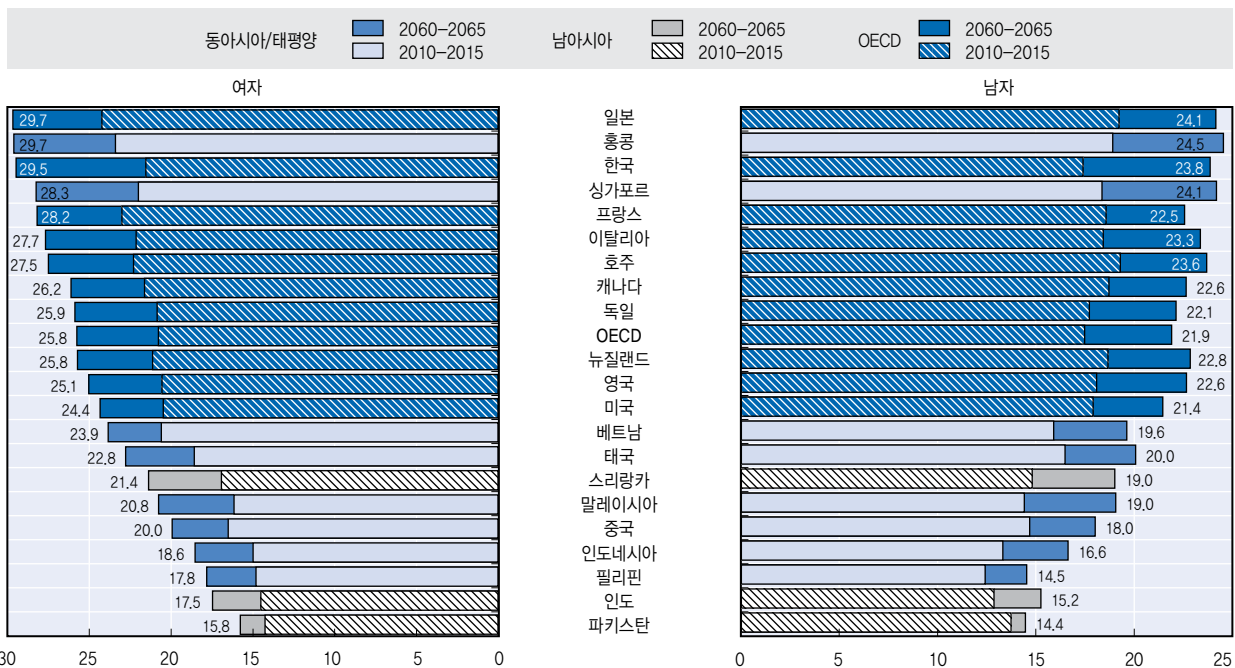


1.14. 출생시 기대수명, 남자와 여자, 2010-15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04963>

1.15. 65세 기대수명, 남자와 여자, 2010-15와 2060-65



출처: United Nations, World Population Prospects – 2011 Revision.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04982>

아시아는 노인인구부양비 증가속도가 한국을 제외한 OECD 전체보다 빠를 것으로 예상된다.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필리핀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100년이 되면 2010년 수준의 약 다섯배로 추정된다. 나머지 OECD 비 회원국들의 경우 같은 기간동안 최소 180%의 증가가 예상되며 OECD 국가의 경우 100% 미만으로 추정된다.

연금 모형화에 있어서 중요한 구성요소는 연령별 인구 규모 추정이다. 이를 통해 연금 비용과 수급자 수를 예측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정부에는 미래 연금 정책을 수립할 기준 가정을 제공해주기 때문이다.

2012년과 2052년의 경우를 비교해보면 노인부양가능지수의 지역적 추세를 명확히 알 수 있다. 요약해보면 이 지수는 향후 40년간 크게 변화할 것이다. 이미 나타났듯이 모든 OECD 국가가 이미 그래프 아래쪽에 위치해 있으며 한국만 예외로 홍콩의 약간 위에 위치해 있다. 그러나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급속하게 고령화되고 있는 국가이며 2012년의 6.2에서 2052년 1.5로 노인부양가능지수 하락하여 일본을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국가가 될 것이다. 이러한 하락이 급속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 지역에는 유사한 패턴을 보이는 다른 국가들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서 베트남의 경우 2012년 10.8에서 2052년 2.5로 하락하게 되며 베트남의 연금수급연령이 여자 60세 미만인 점을 감안하면 노인부양가능지수는 더욱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적으로 2052년 OECD 비 회원국의 부양가능지수는 2012년 값의 약 3분의 1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인구 추계 자료는 65세 미만인 자에 대해 5년을 단위로 2010년부터 2100년까지 나와 있다. 그러므로 정상 연금수급연령이 65세를 초과하는 소수의 국가를 제외하고는 모든 국가의 연금수급가능 인구를 포괄한다. 안타깝게도 이 자료는 연금을 60세부터 수급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연금인구를 과소평가하고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모형화에 있어서 매우 유용한 도구가 된다.

다음의 두 그래프에서는 연령 추정 통계치를 보여주고 있으며 용이한 해석을 위해 OECD와 아시아로 나누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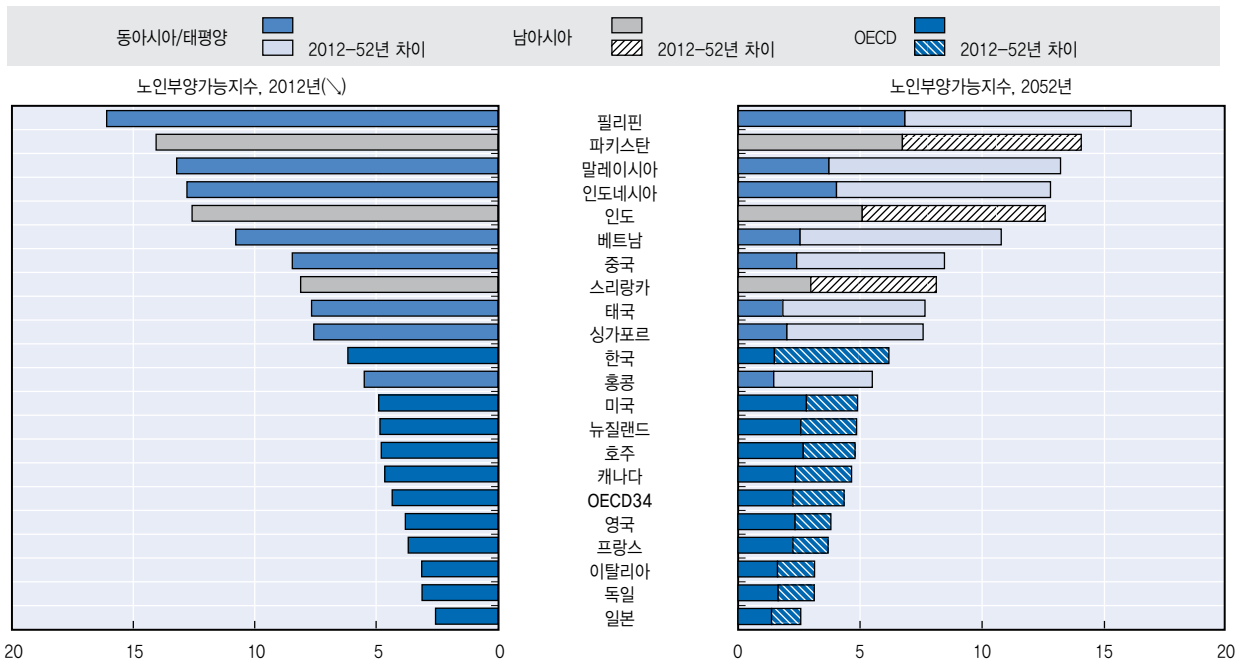
두번째 그래프는 본 보고서에 포함된 OECD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한 그래프이다. 독일, 이탈리아, 일본, 한국은 일반적

으로 추정년도 전체에 걸쳐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2055년 이후에는 이들 국가의 비율은 첫 세 국가의 경우 하락하는데 65세 인구를 기준으로 일본은 약 37%, 독일과 이탈리아는 33%로 추정된다. 한국은 위에서 강조한대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하락은 2065년 이후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2030년경에는 상위 OECD 국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예상되는 이유는 지난 수십년간 이들 국가에서 만연했던 저출산율 때문이다. 모든 국가는 일반적으로 2090년 최소 65세 인구의 약 30%로 수렴하며 미국은 27%에 약간 못미쳐 이보다 약간 낮아지게 된다.

세번째 그래프는 OECD 비 회원국의 상황을 보여준다. 노인인구의 증가는 이 도표에서 가장 강조되는 부분이며 파키스탄의 비율은 90년간 5배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다른 비 OECD 아시아 국가에서도 유사한 패턴이 발생하여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010년에서 2100년 사이 거의 모든 국가에서 최소 세 배가 될 전망이다. 추정 기간 이후에는 모든 아시아 국가에서 인구의 최소 20%가 65세 이상이 될 전망이다. 실제로 2100년 이 되면 싱가포르의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40%를 초과하여 대상 국가 중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할 전망이다. 이는 OECD 비 회원국의 대다수가 OECD 국가 수준이 된다는 의미이다. OECD 비 회원국의 연금수급연령이 현재 OECD 국가보다 낮기 때문에 현 제도가 유지된다고 하면 아시아 지역 연금수급자의 비율은 OECD 보다 훨씬 높아질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가입률 자료와 함께 고려하면, 가입률 문제를 빨리 해결하지 않을 경우 문제의 심각성이 엄청나게 확대될 것임이 확실해 보인다. 연금수급연령 인구의 비율이 계속해서 높아지면 이들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도 커진다. 이 때문에 각국 정부가 강제연금제도 가입률을 시급히 높여야 한다는 압박을 받게 된다. 조만간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문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 통제불가한 상태가 될 수도 있다.

1.16. 노인부양가능지수, 2012년과 205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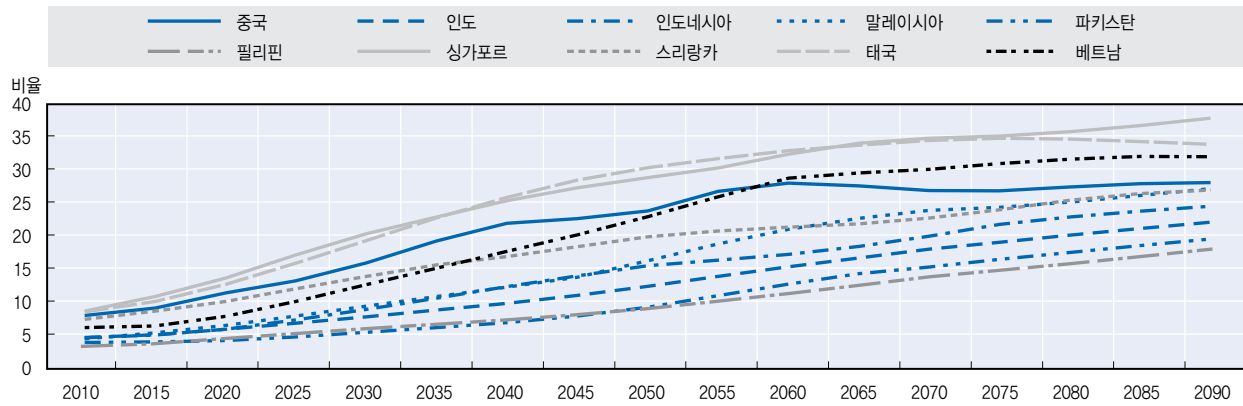


주: 노인부양가능지수(old-age support ratio)는 65세 이상 인구 대비 15-64세 인구 수로 정의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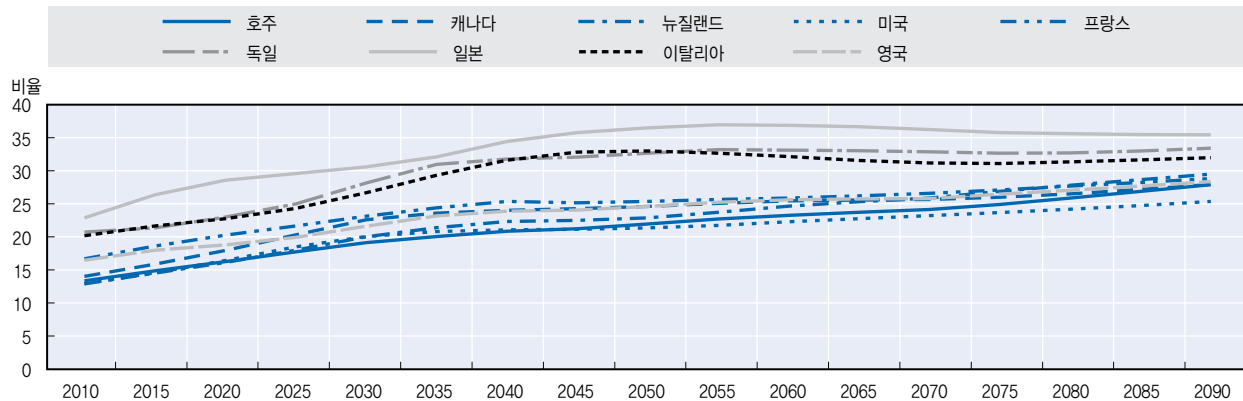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05001>

1.17. 연금수급자 인구 추정

65세 이상 인구 추정 비율(아시아 국가)



65세 이상 인구 추정 비율(OECD 국가)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05002>



## 제2장

# 한 눈에 보는 연금 아시아/태평양 국가별 현황

이 장은 11개 OECD 비 회원국의 퇴직연금제도에 대해 상세한 배경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는 연금 수급 연령과 기타 수급조건, 연금 수급액 산식, 조기수급과 수급연기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국가별 연구에서는 표준 차트와 표로 국가별 정보를 요약해 보여준다. OECD 국가의 국가별 연구는 한 눈에 보는 연금 최신판에서 찾아볼 수 있다.

## 도입

국가별 현황은 표준 양식을 따른다. 첫째, 다음과 같은 연금제도의 규정과 파라미터를 상세히 설명한다.

- 수급조건: 연금수급(또는 “은퇴”)연령 및 연금수급에 필요한 기여년수
- 급여산정: 소득비례제도, 강제 사적연금, 자산조사적 연금 등 연금제도를 구성하는 각 제도의 규정
- 조기수급 및 수급연기: 근로자가 연금을 조기에 수급하거나 표준 수급연령 이후 계속해서 근로하는데 필요한 조건과 규정
- 연금소득에 대한 세금감면을 포함해 개인소득세와 사회보장기여금 상 연금수급자의 처리

최저임금 등 모든 연금 파라미터 값 및 기타 관련수치는 평균소득 대비 비율 혹은 해당국가의 통화로 제시한다.

요약 결과표에서는 강제 연금제도의 상대적 연금가치, 대체율, 연금자산을 개인 소득 수준별로 제시한다(서로 다른 지표의 정의와 측정은 본 보고서 제 1장 참조). 이들 자료는 총 기준과 순 기준으로 제시된다(순 기준은 근로시와 연금 수급 시 납부한 세금과 기여금을 감안한 것).

요약 차트에서는 총 상대적 연금가치를 연금제도의 여러 요소로 구분하여 보여준다(차트의 첫번째 열). 이들 제도를 설명할 때는 가능한 한 동일한 용어를 사용했다. 설명된 특정한 공적 제도는 국가별 현황 본문에 나와 있다. 차트의 공간 제약 때문에 표준 약어를 일부 사용했다.

- SA: 사회부조
- 선별적: 노인을 위한 별도의 자산조사적 제도
- 최저: 소득비례제도 내의 최저연금
- 기초: 가입기간이나 거주지만을 기준으로 하는 연금
- 소득비례: 모든 공적 소득비례 프로그램. 전통적인 확정급여형 제도뿐 아니라 명목 계정 및 포인트 제도 포함
- DC: 확정기여형, 강제적 사적 제도
- 기업연금: 강제적 연금으로 사용자가 제공할 수도 있고 업계차원의 제도이거나 직종별 제도 혹은 공적 제도일 수도 있다.

국가별 차트의 두번째 열은 개인소득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이 상대적 연금가치와 대체율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며 총 기준과 순 기준으로 제시된다. 마지막 열은 참조용으로 연금수급자와 근로자가 납부한 세금과 기여금을 보여준다. 여기에서는 동일 소득의 근로자와 연금수급자에 대한 값을 보여주므로 이들 제도에서 노인들에게 제공하는 감면혜택(concession)의 출처를 알 수 있다. 세금과 기여금이 순 대체율에 미치는 영향은 여기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다. 대체율이 대체로 100% 미만이므로 세금제도의 정상적인 누진성은 감면 혜택과 관계없이 은퇴를 하면 세금을 덜 내게 됨을 의미한다.

마지막 열 역시 순 대체율의 출처를 보여준다. 처음 두 차트에 나타난 연금제도의 구성요소 외에 세금과 기여금의 영향을 포함한다. 이것은 특정 소득 수준에서 납부된 세금액과 해당 소득수준에 대해 산정된 연금 수급액에서 납부해야 하는 세금액에 관한 세금 모형의 결과를 이용해 산정한다.

차트에서는 국가간 비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표준 척도를 사용한다. 대체율 척도는 125%, 상대적 연금 가치에 대한 척도는 평균소득의 2.5배까지이다. 어떤 경우에는 연금 수급액이 이 최대값을 초과하므로 측정값은 이 수준으로 상한선이 설정되었다.

### 아시아 지역에 특화된 추가 정보

한 눈에 보는 시리즈 중 아시아/태평양 판의 경우에는 아시아 국가 내에서 실제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좀더 현실적으로 반영하고자 대안적 경력 시나리오를 추가했다. 가능한 경우 표준 국가별 연금수급 연령 표 외에 OECD 국가 가정을 이용해 경력의 길이를 30년과 40년으로 모형화했다.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 국가별 가정을 이용해 다른 국가와는 다른 경력의 길이를 모형에 반영했고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다른 연금 구조를 반영했다.


## 중국

### 중국: 2012년 연금제도

중국은 기초연금과 두번째 층(second-tier)인 강제 퇴직연금으로 구성된 두 개 층(two-tier) 연금제도를 갖고 있다. 1998년에 도입된 이 제도는 2006년에 대폭 개정되었다. 도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며 파라미터 중 상당수가 각 성(province)별 평균소득(국가 평균소득아님)에 따라 달라진다.

### 주요 지표

		중국	OECD
평균소득	위안화	CNY 46 800	266 100
	미달러	7 500	42 700
공적연금지출	GDP의 %	3.0	7.8
기대수명	출생 시	75.3	79.9
	65세 시점	15.6	19.1
65세 이상 인구	생산연령인구의 %	11.8	23.0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05039>

## 수급조건

정상 수급연령은 남자 60세이며 블루칼라 여성 근로자 50세, 화이트칼라 여성 근로자 55세이다.

## 급여 산정

### 기초

기초연금은 가입기간 중 매년 성(province)별 평균 소득 및 연계된 개인 임금 평균의 1%를 납부하며 기여기간은 최소 15년이다. 연금 지급액은 임금 및 물가를 혼합하여 연계하며 평균 소득 상승분의 40%에서 60% 사이이다. 모형에서는 50% 임금 연계를 가정하고 있다.

### 확정기여형(적립식 또는 명목계정)

두번째 층(second-tier) 제도가 개인 계정을 구성한다. 동북지역에 위치한 성(랴오닝 성, 지린 성, 헤이룽장 성) 외에 8개 성이 적립식 개인 계정 제도를 두고 있다. 그 외의 경우에는 대체로 명목 계정이며 명목상 금리로 적립(credit)된다.

근로자는 개인 계정 제도에 임금의 8%를 납부한다. 적립식 또는 명목 계정의 누적 잔액은 연금수급 시기에 연금 지급액으로 전환되며 개인의 수급연령과 평균 국가 기대수명에 따라 정부가 결정한 연금화 변수로 잔액을 나누어 지급한다. 모든 성에서 남녀 공통의 연금화 변수(월 지급액을 위한)는 다음과 같다.

연령	40	45	50	55	60	65	70
변수	233	216	195	170	139	101	56

연금 지급액은 임금과 물가를 혼합하여 연계한다(위의 기초연금 설명 참조).



## 경력 차이

### 조기수급

육체노동 근로자의 경우 남자는 55세, 여자는 50세에 연금을 수급할 수 있다. 장애정도가 심한 경우 기여기간 15년을 충족하면 남자는 50세, 여자는 45세에 연금을 수급할 수 있다.

### 수급연기

정상 연금수급연령 이후로 연금수급을 연기할 수 있으나 연금 급여액은 재평가되지 않는다.

## 개인소득세와 사회보장기여금

### 근로자 과세

42,000 위안의 표준 소득세 공제가 있다. 근로자들은 사회보장기여금과 주택 기금 기여분을 차감하여 과세소득을 산정할 수 있다.

### 근로자 소득 과세

개인 소득세율(임금 및 급여 소득에 적용)

등급	월 과세소득	세율(%)
1	1,500 위안 미만	3
2	소득 초과분 1,500-4,500 위안	10
3	소득 초과분 4,500-9,000 위안	20
4	소득 초과분 9,000-35,000 위안	25
5	소득 초과분 35,000-55,000 위안	30
6	소득 초과분 55,000-80,000 위안	35
7	소득 초과분 80,000 위안	45

### 근로자가 납부하는 사회보장기여금

개정된 제도에 따라 사용자는 소득의 최대 20%를 기초 연금제도에 납부한다. 이 두번째 층(second-tier) 연금은 근로자 기여분 8%로 재정을 충당한다. 이러한 기여금은 소득 수준의 상한선이 지역 평균 임금의 세 배로 설정되어 있다. 개인 계정에 대한 사회보장 기여금은 소득세가 면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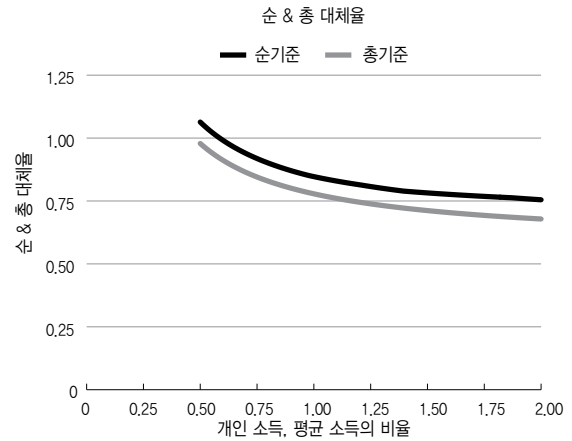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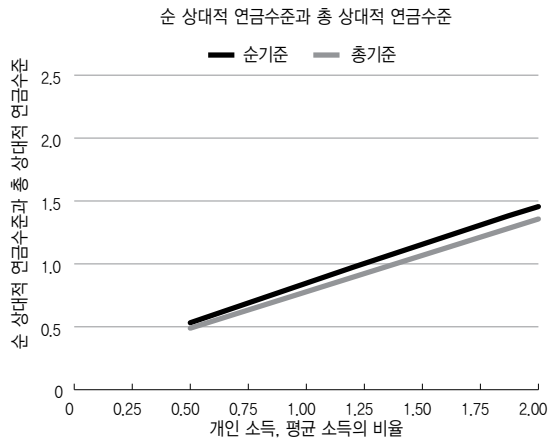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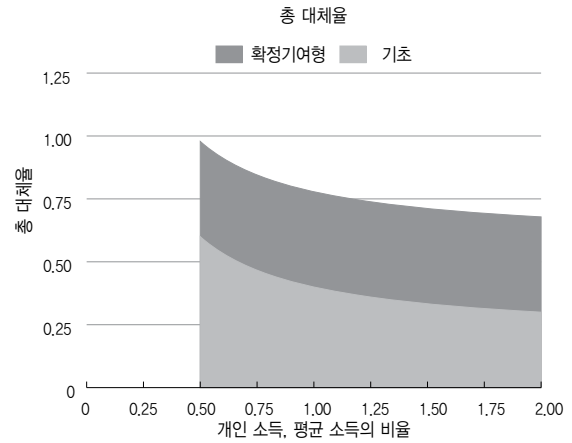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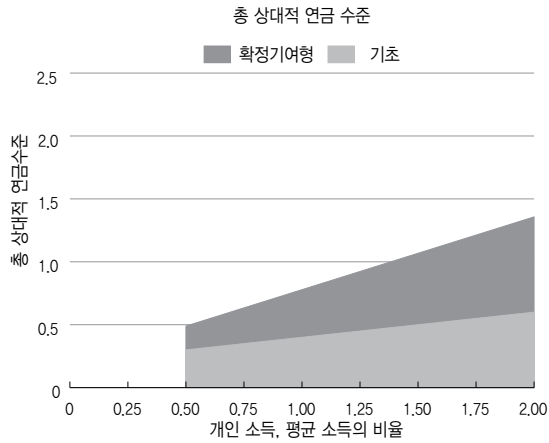
### 연금수급자에 대한 과세

연금수급자에 대해 추가적인 세금감면은 없다.

### 연금수급자가 납부하는 사회보장기여금

연금수급자는 사회보장 기여금을 납부하지 않는다.

연금 모형화 결과: 중국




남자	중위소득자	개인소득, 평균의 배수				
		0.5	0.75	1	1.5	2
여자(남자와 다른 경우)						
총 상대적 연금 수준	66.9	48.9	63.4	77.9	106.8	135.7
(평균 총 소득 %)	52.7	39.2	50.1	61.0	82.7	104.5
순 상대적 연금수준	72.7	53.2	69.0	84.7	115.6	145.5
(순 평균 소득 %)	57.4	42.7	54.5	66.3	90.0	113.2
총 대체율	82.5	97.9	84.5	77.9	71.2	67.9
(개인 총 소득 %)	65.1	78.5	66.8	61.0	55.2	52.2
순 대체율	89.7	106.4	91.9	84.7	78.2	75.5
(개인 순 소득 %)	70.8	85.3	72.6	66.3	60.9	58.7
총 연금자산	16.1	19.1	16.5	15.2	13.9	13.3
(개인 총 소득의 배수)	16.3	19.7	16.8	15.3	13.8	13.1
순 연금자산	16.1	19.1	16.5	15.2	13.9	13.1
(개인 순 소득의 배수)	16.3	19.7	16.8	15.3	13.8	13.0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05058>

## 경제 및 근로기간의 대안가정


남자 여자(남자와 다른 경우)	중위소득자	개인 소득, 평균의 배수				
		0.5	0.75	1	1.5	2
<b>OECD 경제 가정 하 40년의 근로기간</b>						
총 상대적 연금수준	66.9	48.9	63.4	77.9	106.8	135.7
(평균 총 소득 %)	61.3	45.5	58.2	71.0	96.4	121.9
순 상대적 연금수준	72.7	53.2	69.0	84.7	115.6	145.5
(순 평균 소득 %)	66.6	49.5	63.3	77.2	104.7	131.5
총 대체율	82.5	97.9	84.5	77.9	71.2	67.9
(개인 총 소득 %)	75.6	91.0	77.6	71.0	64.3	61.0
순 대체율	89.7	106.4	91.9	84.7	78.2	75.5
(개인 순 소득 %)	82.2	98.9	84.4	77.2	70.8	68.2
총 연금자산	16.1	19.1	16.5	15.2	13.9	13.3
(개인 총 소득의 배수)	19.0	22.8	19.5	17.8	16.1	15.3
순 연금자산	16.1	19.1	16.5	15.2	13.9	13.1
(개인 총 소득의 배수)	19.0	22.8	19.5	17.8	16.1	15.2
<b>OECD 경제 가정 하 30년의 근로기간</b>						
총 상대적 연금수준	48.3	35.6	45.9	56.2	76.8	97.3
(평균 총 소득 %)	44.5	33.2	42.3	51.4	69.6	87.8
순 상대적 연금수준	52.6	38.7	49.9	61.1	83.5	105.6
(순 평균 소득 %)	48.4	36.1	46.0	55.9	75.7	95.5
총 대체율	59.7	71.2	61.2	56.2	51.2	48.7
(개인 총 소득 %)	54.9	66.4	56.4	51.4	46.4	43.9
순 대체율	64.9	77.4	66.5	61.1	56.5	54.8
(개인 순 소득 %)	59.7	72.2	61.3	55.9	51.2	49.5
총 연금자산	11.7	13.9	12.0	11.0	10.0	9.5
(개인 총 소득의 배수)	13.8	16.7	14.1	12.9	11.6	11.0
순 연금자산	11.7	13.9	12.0	11.0	10.0	9.5
(개인 총 소득의 배수)	13.8	16.7	14.1	12.9	11.6	11.0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05077>

국가별 세부적인 경제 가정

남자 여자(남자와 다른 경우)	중위소득자	개인 소득, 평균의 배수				
		0.5	0.75	1	1.5	2
<b>국가별 세부 경제 가정 하 40년 근로</b>						
총 상대적 연금수준	58.6	43.8	55.7	67.6	91.4	115.3
(평균 총 소득 %)	54.5	41.3	51.9	62.6	83.9	105.2
순 상대적 연금수준	63.7	47.7	60.6	73.6	99.4	124.5
(순 평균 소득 %)	59.3	44.9	56.5	68.1	91.2	113.9
총 대체율	72.3	87.6	74.3	67.6	61.0	57.6
(개인 총 소득 %)	67.3	82.6	69.3	62.6	55.9	52.6
순 대체율	78.6	95.2	80.8	73.6	67.3	64.6
(개인 순 소득 %)	73.1	89.8	75.3	68.1	61.7	59.1
총 연금자산	20.2	24.5	20.8	18.9	17.0	16.1
(개인 총 소득의 배수)	26.6	32.7	27.4	24.8	22.1	20.8
순 연금자산	20.2	24.5	20.8	18.9	17.0	16.0
(개인 총 소득의 배수)	26.6	32.7	27.4	24.8	22.1	20.7
<b>국가별 세부 경제 가정 하 30년 근로</b>						
총 상대적 연금수준	43.9	32.9	41.8	50.7	68.6	86.4
(평균 총 소득 %)	40.9	31.0	39.0	46.9	62.9	78.9
순 상대적 연금수준	47.8	35.7	45.5	55.2	74.6	94.0
(순 평균 소득 %)	44.5	33.7	42.4	51.1	68.4	85.8
총 대체율	54.2	65.7	55.7	50.7	45.7	43.2
(개인 총 소득 %)	50.5	61.9	51.9	46.9	41.9	39.4
순 대체율	59.0	71.4	60.6	55.2	50.5	48.8
(개인 순 소득 %)	54.8	67.3	56.5	51.1	46.3	44.5
총 연금자산	15.2	18.4	15.6	14.2	12.8	12.1
(개인 총 소득의 배수)	20.0	24.5	20.6	18.6	16.6	15.6
순 연금자산	15.2	18.4	15.6	14.2	12.8	12.1
(개인 총 소득의 배수)	20.0	24.5	20.6	18.6	16.6	15.6

주: 실질 소득: 연 12%가 2%로 수렴하여 평균 7%.  
 물가상승률: 연 5%가 2.5%로 수렴하여 평균 3.75%.  
 실질수익률: 연 10.5%가 3.5%로 수렴하여 평균 7%.  
 할인율(계리적 산정을 위한): 연 2%.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05096>


## 홍콩

### 홍콩: 2012년 연금 제도

강제적립기금(MPF, Mandatory Provident Fund) 제도는 고용기반의 노후소득보장 제도이다. 면제 대상자를 제외한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근로자와 자영업자는 MPF제도에 가입해야 한다. MPF 제도는 민간에서 관리하며 완전 적립식 확정기여형 제도이다.

### 주요 지표

		홍콩	OECD
평균소득	홍콩달러	157 800	331 000
	미달러	20 400	42 700
공적연금지출	GDP의 %		7.0
	출생 시	83.3	79.9
기대수명	65세 시점	21.2	19.1
	65세 이상 인구	18.2	23.0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05115>

## 수급조건

가입자가 65세에 도달하면 MPF 제도에서 발생한 급여를 수급할 수 있다.

## 급여 산정

### 확정기여형

MPF 제도에 가입한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자의 대상 소득의 5%로 계산된 강제 기여금을 정기적으로 MPF 제도에 납부해야 하며 최저 및 최대 관련 소득 수준의 적용을 받는다. 월급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최저 및 최대 관련 소득 수준은 각각 6,500 홍콩달러와 25,000 홍콩달러이다.

월 관련 소득	강제 기여	
	사용자 분	근로자 분
6,500 홍콩달러 미만	관련 소득 × 5%	기여의무없음
6,500-25,000 홍콩달러	관련 소득 × 5%	관련 소득 × 5%
25,000 홍콩달러 이상	1,250 홍콩달러	1,250 홍콩달러

MPF 제도에 가입해 있는 자영업자는 관련 소득의 5%로 산정된 강제 기여금을 MPF 제도에 정기적으로 납부해야 하며 기여금에는 관련 소득의 최저 수준과 최대 수준이 적용된다.

2012년 6월 1일부터 최대 소득수준은 25,000 홍콩달러가 적용되고 있다. 2012년 6월 1일 이전에는 최대 소득 수준과 납부할 강제 기여금액이 각각 월 20,000 홍콩달러와 1,000 홍콩달러였다.

MPF 제도에서 발생한 급여는 가입자가 은퇴연령인 65세에 도달하면 일시불로 지급된다.

다른 국가들과의 연금 대체율은 남녀 사망률을 기준으로 한 물가 연동 연금으로 표시했다.

## 선별적/기초

노령 수당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정상 노령 수당(NOAA, Normal Old Age Allowance)은 자산조사적 수당으로 65세-69세 노인에게 제공된다. 독신자의 경우 자산 한도는 186,000 홍콩달러이고 월 소득 한도는 6,660 홍콩달러이다(한도를 초과하면 수당지급이 중단된다). 부부에 대한 한도는 좀더 높다(각각 281,000 홍콩달러와 10,520 홍콩달러). 지급 가능한 최대 수당은 월 1,090 홍콩달러로 평균 소득의 약 8.3%이다.

고령노령수당(HOAA, Higher Older Age Allowance)은 7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기초연금이며 월 1,090 홍콩달러의 정액을 지급하고 급여환수(claw-back)는 없다. 이번에도 공식적인 연계 규정은 없으며 모형에서는 물가 연동을 가정했다.

## 경력의 차이

### 조기수급

MPF 제도의 경우 발생한 급여를 가입자가 65세에 도달하기 전에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도 하지만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60세에 조기 수급하는 경우
- 홍콩을 영구 출국하는 경우
- 완전한 장애(total incapacity)가 된 경우
- 잔액이 5,000 홍콩달러 미만으로 소액이며 12개월간 MPF 제도에 기여금을 납부하지 않았고 가입자가 조만간 취업을 하거나 자영업자로 일할 의도가 없는 경우 또는
- 사망한 경우(발생한 급여는 해당 가입자의 유산으로 간주되어 개인적 대리인이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선별/기초연금은 65세가 되어야 수급할 수 있다.

### 수급연기

근로와 연금수급을 병행할 수 있다. MPF 제도의 경우 65세가 된 후에도 계속해서 근로하는 경우 추가적인 강제 기여는 요구되지 않으며 해당 가입자는 강제 기여로부터 발생하는 급여액을 인출할 수 있다.

## 개인소득세와 사회보장기여금

### 근로자 과세

근로자들은 MPF 제도에 납부한 강제 기여금에 대해 세금 공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최대 금액의 적용을 받는다.

- 2012-13 평가년도의 경우 14,500 홍콩달러
- 2013-14 평가년도와 이듬해 평가년도의 경우 15,000 홍콩달러.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납부한 기여금은 세금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 근로자 소득의 과세

다음 두 개 과세규정 중 낮은 것을 적용한다. 첫번째 규정은 다음 과세기준표에서 설명하고 있으며, 과세 소득(공제 및 수당 산정 후)에 적용된다. 2012년 독신자에 대한 기초 수당은 120,000 홍콩달러였다.

연 과세 소득 (홍콩달러)	세율(%)
40 000	2
40 000-80 000	7
80 000-120 000	12
> 120 000	17

두번째 규정은 표준 세율 15%에 공제 후 수당 전 평가대상 소득으로 곱하는 것이다.

### 근로자가 납부하는 사회보장기여금

근로자와 자영업자가 MPF 제도에 납부한 강제 기여 정보는 위의 “확정기여형” 부분에 나와 있다.

### 연금수급자 과세

연금수급자에 대해 추가적인 세금 감면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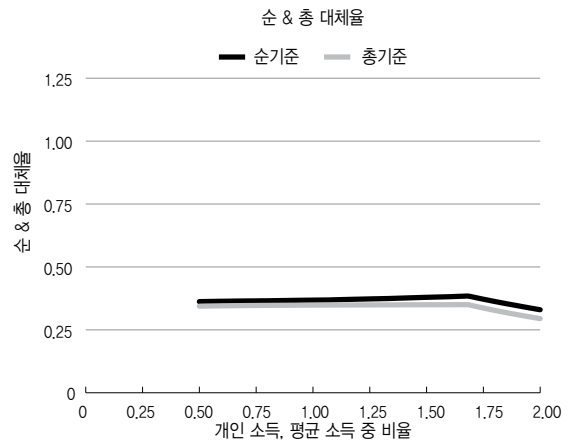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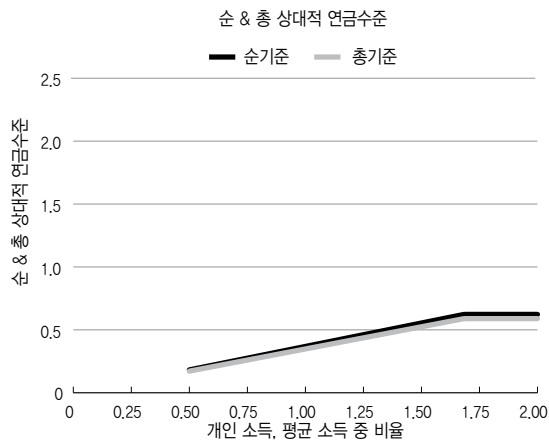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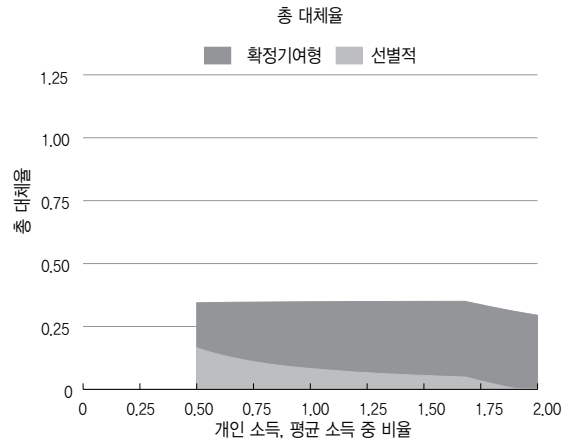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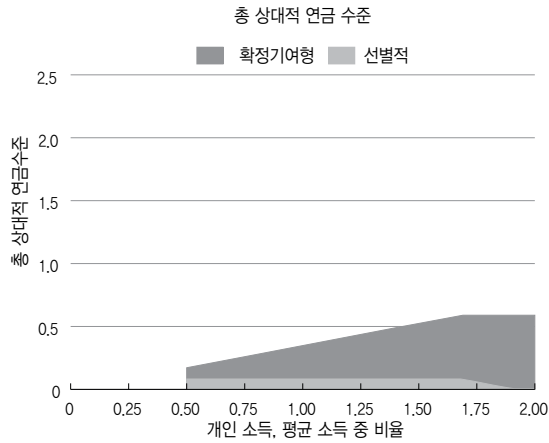
### 연금 소득 과세

강제적 기여로부터 발생하는 MPF 급여는 과세대상이 아니다(일시불 지급만 허용).

### 연금수급자가 납부하는 사회보장기여금

65세 이상의 근로자와 자영업자는 MPF 제도에 가입할 의무가 없다.

연금 모형화 결과: 홍콩



남자	중위소득자	개인소득, 평균의 배수				
		0.5	0.75	1	1.5	2
여자(남자와 다를 경우)						
총상대적연금수준 (평균총소득의 %)	28.1 25.7	17.2 16.1	26.0 23.8	34.8 31.5	52.5 47.0	58.9
순상대적연금수준 (순평균소득의 %)	29.7 27.1	18.2 17.0	27.5 25.2	36.8 33.3	55.5 49.7	62.3
총대체율 (개인총소득의 %)	34.7 31.7	34.4 32.2	34.7 31.8	34.8 31.5	35.0 31.3	29.5
순대체율 (개인순소득의 %)	36.6 33.4	36.2 33.9	36.5 33.4	36.8 33.3	37.9 34.0	33.0
총연금자산 (개인총소득의 배수)	6.3 6.6	6.3 6.7	6.3 6.6	6.3 6.6	6.4 6.5	5.4 6.1
순연금자산 (개인순소득의 배수)	6.3 6.6	6.3 6.7	6.3 6.6	6.3 6.6	6.4 6.5	5.4 6.1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05134>



## 경제 및 근로기간의 대안가정

남자 여자(남자와 다를 경우)	중위소득자	개인소득, 평균의 배수				
		0.5	0.75	1	1.5	2
<b>OECD 경제 가정 하 40년의 근로기간</b>						
총상대적연금수준	25.2	15.9	23.4	30.9	46.0	58.0
(평균총소득의 %)	23.1	15.0	21.5	28.1	41.3	51.9
순상대적연금수준	26.6	16.8	24.7	32.7	48.6	61.3
(순평균소득의 %)	24.4	15.8	22.8	29.7	43.6	54.8
총대체율	31.1	31.8	31.2	30.9	30.6	29.0
(개인총소득의 %)	28.5	29.9	28.7	28.1	27.5	25.9
순대체율	32.8	33.5	32.9	32.7	33.2	32.5
(개인순소득의 %)	30.0	31.5	30.2	29.7	29.9	29.0
총연금자산	5.7	5.8	5.7	5.6	5.6	5.3
(개인총소득의 배수)	5.9	6.2	6.0	5.9	5.7	5.4
순연금자산	5.7	5.8	5.7	5.6	5.6	5.3
(개인총소득의 배수)	5.9	6.2	6.0	5.9	5.7	5.4
<b>OECD 경제 가정 하 30년의 근로기간</b>						
총상대적연금수준	20.0	13.5	18.7	23.9	34.3	42.7
(평균총소득의 %)	18.5	12.9	17.4	22.0	31.1	38.4
순상대적연금수준	21.1	14.3	19.8	25.3	36.3	45.1
(순평균소득의 %)	19.6	13.6	18.4	23.3	32.9	40.6
총대체율	24.7	27.1	25.0	23.9	22.9	21.3
(개인총소득의 %)	22.9	25.8	23.3	22.0	20.7	19.2
순대체율	26.0	28.5	26.3	25.3	24.8	23.9
(개인순소득의 %)	24.1	27.1	24.5	23.3	22.5	21.5
총연금자산	4.5	4.9	4.6	4.4	4.2	3.9
(개인총소득의 배수)	4.8	5.4	4.8	4.6	4.3	4.0
순연금자산	4.5	4.9	4.6	4.4	4.2	3.9
(개인총소득의 배수)	4.8	5.4	4.8	4.6	4.3	4.0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05153>


## 인도

### 인도: 2012년 연금제도

근로자들은 EPFO(근로자퇴직기금운영 기구)에서 운영하는 소득비례연금과 확정기여형(DC) 근로자퇴직기금, 사용자가 운영하는 근로자퇴직기금에 가입되어 있다. 2004년 1월 1일 이후에 신 연금제도(NPS)에 기반한 확정 기여형(DC) 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 주요 지표

		인도	OECD
평균 소득	루피(INR)	240 400	2 342 100
	미 달러(USD)	4 400	42 700
공적 연금 지출	GDP의 %		7.8
기대수명	출생 시	66.4	79.9
	65세 시점	13.7	19.1
65세 이상 인구	생산연령 인구의 %	7.9	23.0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05172>

## 수급조건

소득비례연금제도(EPS)의 정상 연금수급 연령은 기여년수 최소 10년인 경우 58세이며 소득비례 적립기금 (EPF) 제도의 경우는 55세이다.

## 급여 산정

### 근로자 퇴직기금(EPF)

근로자는 월 급여의 12%를 이 기금에 기여하고 사용자도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부담한다. 사용자 부담 중 3.67%가 EPF로 기여되어 15.67%가 적립된다.

연금은 없으며 55세가 되면 퇴직 시 누적금액 전액이 일시에 지급된다. 다른 국가와의 대체율 비교를 위해 연금은 남녀 사망률을 기준으로 물가 연동 연금으로 표시했다.

### 근로자 연금제도(EPS)

위에서 언급한대로 사용자가 지급하는 기여금 12% 중에 8.33%는 EPS로 전용되며 중앙정부가 임금의 1.17%를 EPS에 지원한다. 이 누적액은 은퇴 시 또는 조기 해지 시 다양한 연금 급여를 지급하는데 사용된다. 가입자가 EPS 제도에서 받게 되는 연금의 종류는 은퇴 연령과 근무 년수에 따라 달라진다.

$$\text{월 연금액} = (\text{연금대상 급여} \times \text{연금대상 근무년수}) / 70$$

최대 가능 대체율은 대략 50%이다. 최대급여를 수급하려면 가입기간 35년이 필요할 뿐 아니라 제도 가입 시 더 높은 임금액을 기준으로 기여금을 납부할 것을 선택해야 한다. 이 선택사항은 소급 적용되지는 않는다. 그렇지 않으면, 월 6,500 루피의 기여금 한도가 있다.

## 경력 차이

### 조기수급

EPS는 기여년수 10년인 경우 50세부터 수급할 수 있고 급여액은 연 3%씩 감액된다. 가입자가 근무년수 10년을 채우기 전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급여 인출이 가능하다. 인출가능 금액은 퇴사일 기준 월 급여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비율은 근무연수에 따라 달라진다. 근무년수 10년을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근무 기간에 공백이 있는 경우에는 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EPF의 경우, 적립액의 조기 수급을 허용하는 몇가지 시나리오가 있다. 결혼, 주택자금, 생명보험가입, 가족의 질병치료 등의 사유가 있으면 부분수급이 허용되며 은퇴를 1년 앞두고 있을 때에도 수급이 허용된다. 허용되는 다양한 부분 인출 외에 가입자는 현 직장을 퇴사하고 다른 직장으로 이직하거나 조기 퇴직을 결심한 경우 계좌를 폐쇄하고 잔액을 전액 수급할 수 있다.

5년 미만으로 근무한 경우에는 퇴직금은 없다.

### 수급연기

정상 연금수급연령 이후로 연금수급을 연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국민연금제도(NPS, National Pension System)

인도에서는 국가차원의 사회보장제도가 없다(공적 연금 가입율이 근로 인구의 약 12%). 고령화와 사회변화가 비공식(unorganized) 부분의 연금 개혁 도입에 중요한 고려요소인 반면, 공식(organized) 부문에서는(정부 공무원) 확정급여형(DB) 연금제도의 재정적 부담이 연금 개혁의 주요 원인이었다.

### 신 연금제도(New Pension System)의 도입

정부는 2003년 12월 22일자 고시를 통해 2004년 1월 1일부터 군인을 제외한 중앙정부 신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신 연금제도(NPS)를 도입했다. 정부는 2003년 10월 정부 결의안을 통해 임시 감독기구인 임시연기금감독개발청(PFRDA)을 설립했다. NPS의 설계상의 특징은 지속가능성, 확장성, 개인의 선택, 적용범위 극대화, 저비용 고효율, 그리고 연금제도가 건전한 규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 NPS의 제도적 프레임워크 수립

PFRDA는 국가증권예탁기관(NSDL)을 중앙 기록보관 및 회계처리 기구(CRA)로 선정하여 운영을 시작했다. NPS의 기여금은 현재 CRA로 보내진다. PFRDA는 세 명의 연기금 관리자와 관리인(custodian), 신탁은행을 선임했다. 중앙정부 공무원들인 가입자의 적립금과 기여금 투자는 재정부(the Ministry of Finance)가 비 정부 적립기금을 위해 만든 투자 지침서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모든 국민들을 위한 NPS 투자 지침서는 PFRDA가 만들었으며, [www.pfrda.org.in](http://www.pfrda.org.in)에서 찾아볼 수 있다.

### 주 정부, 자치기구, 비공식(un-organized) 부문으로 NPS 확대

NPS는 또한 새로운 부문(자치기구, 주정부, 비공식 부문)으로 확대되었다. 27개의 주정부 및 연합 주(Union Territories)에서 신규직원들을 위한 NPS 채택을 발표했다. PFRDA는 비공식 부문 근로자를 포함해 모든 국민들에게 NPS를 확대하는데 대해 정부의 승인을 받았고, 2009년 5월 1일부터 자발적 기준으로 국내 모든 이들에게 NPS체제를 확산했다.

임시 PFRDA는 NPS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체신부를 NPS에 합류시켜 창구(POP)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체신부는 2011년 12월 31일 기준 807개 지점에서 NPS 가입신청을 받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NPS 네트워크를 체신부의 모든 지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고 있다. 이렇게 되면 오지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NPS에 쉽게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이에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몇몇 프로그램이 출범했다.

1. 2009년 12월 1일부터 연금 가입자에게 일종의 저축 계좌 역할을 하는 두번째 층(second tier)을 NPS에 추가
2. 공동 기여 제도인 NPS-라이트("Swavalamban") 출범. NPS의 저비용 형태로 자영업자, 유연단체 등 낮은 계층의 사람들을 가입할 수 있게 함.
3. NPS 가입 연령을 55세가 아니라 60세로 확대함으로써 더 많은 사람이 NPS에 가입할 수 있도록 유도.

정부의 NPS-라이트 프로그램은 공동 기여가 저소득 비공식 부문 근로자들의 자발적 가입을 촉진할 수 있을지 가능할 수 있는 중요한 시험대이다. 중앙정부의 주도 하에 하리아나와 카르나타카 같은 주 정부에서도 중앙정부가 약속한 것 외에 추가적인 공동기여를 발표했다. 이들 주에 거주하는 근로자들은 매년 공동기여로 최대 2,200 루피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제도 현황, 2013년 3월

사용자/부문	가입자 수	NPS 관리금액 (미 달러, 백만)
1 중앙정부	1 125 871	3 099
2 주 정부	1 585 349	1 778
3 민간부문	202 679	228
4 NPS-라이트	1 579 690	75

\* 비공식 부문 근로자들이 은퇴 후를 자발적으로 대비하도록 하고 이들 가입자를 위해 신연금제도(NPS)의 운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Swavalamban"이라고 불리는 공동 기여제도를 중앙정부가 2010년 4월 1일 출범시켰다. 이 제도는 PFRDA에서 운영하게 된다. 중앙정부는 가입자를 위해 연 1,000루피를 기여한다. 정부의 다른 법정 연금제도에 이미 가입해있지 않고 연 천 루피에서 만2천 루피를 기여한다면 Swavalamban 제도에 가입할 수 있다. Swavalamban 제도는 2016-17년까지 가입 가능하다. PFRDA는 이 제도가 이 기간 중 비공식 부문에서 활동하는 약 7백만명 정도의 NPS 가입자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개인소득세 및 사회보장기여금

### 근로자 과세

EPFO와 NPS의 연기금 및 연금제도에 대한 기여금은 세금 산정 시 소득공제가 허용되며 사회보장기여금에 총 공제가 최대 10만 루피까지 적용된다. 이 한도에는 생명보험 보험료, 공적 연기금(자발적 제도) 등의 다른 기여금도 포함된다.

NPS 가입 근로자는 사용자 기여분에 대해 본인 임금(기본급 + 실질임금감소보상 수당)의 10%까지 추가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NPS에만 제공되는 이 혜택은 위에 언급한 10만 루피까지의 공제 외에 제공되는 것이며 2011-12 회계연도부터 이용가능하다. 그러나 이 혜택은 비교적 소득이 높은 집단의 근로자에게 좀더 유리하며, 이 집단은 추가 저축분을 NPS 계정에 넣어두기 최대 한계세율 30%로 더 많은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여유가 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료는 1만5천 루피까지 공제가능하다(모형에는 불포함). 월 800루피의 교통비 수당은 비과세이다(모형에 포함).

### 근로자 소득 과세

인도의 회계연도는 4월에 시작하며 아래는 2011년 해당 세율이다.

모든 출처의 연 소득(INR)	소득세율		교육세(%)
	60세 미만 남자(%)	60세미만 여자(%)	
180,000 까지	없음	없음	없음
180 001-190 000	10	없음	3
190 001-500 000	10	10	3
500 001-800 000	20	20	3
800,001 이상	30	30	3

### 연금수급자 과세

65세 이상 노인은 건강보험료가 2만루피까지 공제된다.

### 연금소득 과세

EPFO의 적립기금 및 연금 만기 급여는 전액 비과세이다. 일시불 급여와 NPS의 경우 정기 연금은 수급 시 과세된다. EPFO는 기여단계, 성장단계, 지급단계에서 비과세되는 EEE(비과세, 비과세, 비과세) 제도가 적용되는 반면 NPS는 만기급여가 과세되는 EET(비과세, 비과세, 과세) 제도가 적용된다. 하지만 이는 새로 제안된 직접세법이 발효되면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NPS가 아직 초기 단계이므로 최초 가입자들도 지급단계에 도달하려면 아직 몇 년 더 있어야 하기 때문에 지급에 관한 과세 규정이 아직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 다음의 소득세규정은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적용되며 전체 세액에 3%의 교육세가 붙는다.

모든 출처의 연 소득(루피)	노인 소득세율		교육세(%)
	60-80세(%)	80세 이상(%)	
250,000 루피(4,545달러)까지	없음	없음	없음
250 001-500 000(USD 9 090)	10	없음	3
500 001-800 000(USD 14 545)	20	20	3
800,001 이상	30	30	3

NPS 가입자는 60세가 되면 NPS 계정에 누적된 잔액의 최소 40%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연금상품을 강제적으로 매입해야 한다. 또한 60세 전에 그 돈을 인출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 인출 시 누적 원금의 최소 80%는 연금상품 매입에 사용해야 한다.

NPS가입자가 60세를 지나기 전 갑자기 사망한 경우 대리인(nominee)은 계좌주의 사망 시점에 누적된 원금을 인출할 수 있다. 대리인 또는 법정 상속인이 수령한 금액은 전액 비과세이다.

### 연금수급자가 납부하는 사회보장 기여금

연금수급자는 사회보장기여금을 납부하지 않는다.

### 사용자에 대한 과세 - 근로자 연금의 사용자 기여 관련

사용자의 EPFO와 NPS 제도에 대한 기여분은 사업비로 공제가 허용되며 다음과 같은 조건이 적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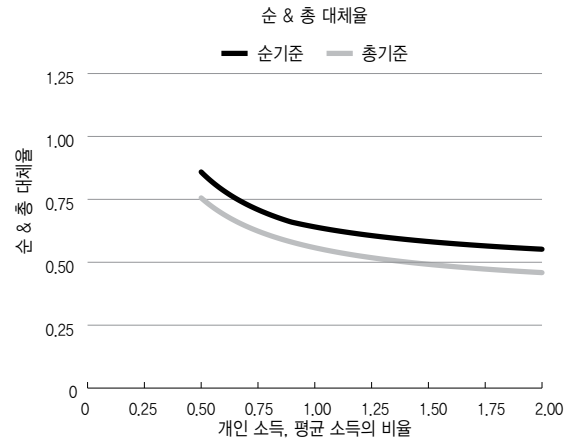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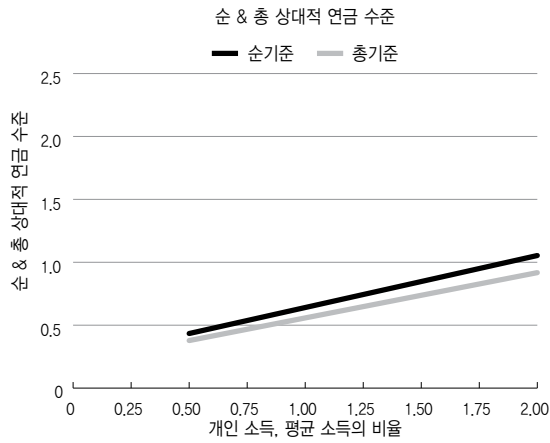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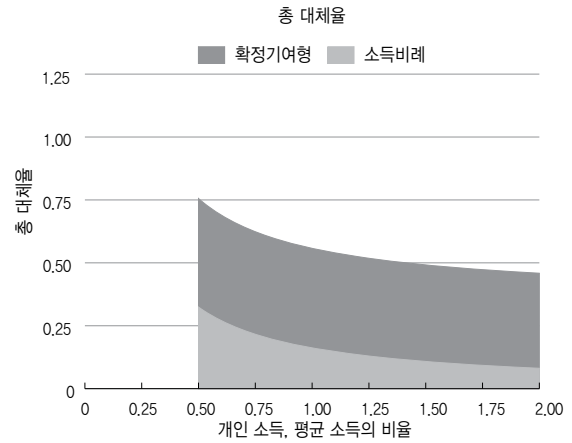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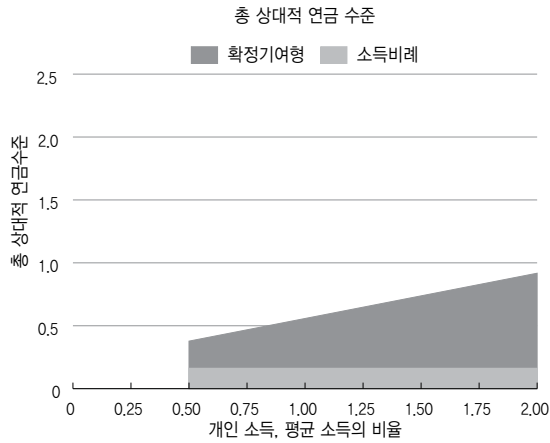
#### NPS

사용자들은 정부가 2011-12 회계연도부터 사업비 공제를 허용한 후 근로자의 NPS에 대한 기여를 시작했다. 사용자 기여분은 기본급과 실질임금 감액보상 수당(Dearness Allowance)의 최대 10%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대부분의 사용자는 최소 6천 루피의 연 기여분(연 1회) 또는 최소 월 500 루피의 공제를 요청한다. 사용자의 NPS 나 EPF 기여분에 대해 근로자에게 과세되지 않는다.

#### EPF와 EPS

사용자의 EPF와 EPS 기여분은 임금의 12%까지 비과세되며 사업비로 공제가 허용된다.

연금 모형화 결과: 인도




남자 여자(남자와 다를 경우)	중위소득자	개인소득, 평균의 배수				
		0.5	0.75	1	1.5	2
총 상대적 연금수준 (평균 총소득의 %)	48.9 45.6	37.8 35.6	46.8 43.7	55.8 51.8	73.8 68.0	91.8 84.1
순 상대적 연금수준 (순 평균 소득의 %)	56.2 52.2	43.4 40.7	53.7 49.9	64.1 59.2	84.7 77.7	105.4 96.2
총 대체율 (개인총소득의 %)	60.4 56.3	75.6 71.2	62.4 58.3	55.8 51.8	49.2 45.3	45.9 42.1
순 대체율 (개인순소득의 %)	68.7 64.0	85.9 80.9	70.9 66.2	64.1 59.2	58.2 53.5	55.2 50.5
총 연금자산 (개인 총소득의 배수)	10.0 10.4	12.4 13.0	10.3 10.7	9.3 9.6	8.2 8.4	7.7 7.9
순 연금자산 (개인 순 소득의 배수)	10.0 10.4	12.4 13.0	10.3 10.7	9.3 9.6	8.2 8.4	7.7 7.9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05191>

경제 및 근로기간의 대안가정

남자 여자(남자와 다를 경우)	중위소득자	개인소득, 평균의 배수				
		0.5	0.75	1	1.5	2
<b>OECD 경제 가정 하 40년의 근로기간</b>						
총상대적연금수준	51.2	39.3	48.9	58.6	77.8	97.1
(평균총소득의 %)	47.7	37.0	45.6	54.3	71.6	88.9
순상대적연금수준	58.8	45.1	56.2	67.2	89.3	111.5
(순평균소득의 %)	54.5	42.2	52.1	62.0	81.8	101.6
총대체율	63.3	78.6	65.2	58.6	51.9	48.5
(개인총소득의 %)	58.9	73.9	60.8	54.3	47.7	44.4
순대체율	71.9	89.3	74.1	67.2	61.4	58.4
(개인순소득의 %)	66.9	84.0	69.1	62.0	56.3	53.3
총연금자산	10.5	12.9	10.8	9.8	8.7	8.2
(개인총소득의 배수)	10.9	13.5	11.2	10.1	8.9	8.3
순연금자산	10.5	12.9	10.8	9.8	8.7	8.2
(개인총소득의 배수)	10.9	13.5	11.2	10.1	8.9	8.3
<b>OECD 경제 가정 하 30년의 근로기간</b>						
총상대적연금수준	38.1	29.9	36.5	43.2	56.5	69.8
(평균총소득의 %)	35.7	28.2	34.2	40.2	52.2	64.1
순상대적연금수준	43.8	34.3	41.9	49.6	64.9	80.1
(순평균소득의 %)	40.8	32.3	39.1	46.0	59.6	73.3
총대체율	47.1	59.7	48.7	43.2	37.7	34.9
(개인총소득의 %)	44.0	56.5	45.6	40.2	34.8	32.1
순대체율	53.5	67.9	55.3	49.6	44.6	42.0
(개인순소득의 %)	50.0	64.2	51.9	46.0	41.1	38.5
총연금자산	7.8	9.8	8.0	7.2	6.3	5.9
(개인총소득의 배수)	8.1	10.3	8.4	7.4	6.5	6.0
순연금자산	7.8	9.8	8.0	7.2	6.3	5.9
(개인총소득의 배수)	8.1	10.3	8.4	7.4	6.5	6.0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05210>



## 국가별 세부적인 가정


남자 여자(남자와 다를 경우)	중위소득자	개인소득, 평균의 배수				
		0.5	0.75	1	1.5	2
<b>국가별 세부 경제 가정 하 40년 근로</b>						
총상대적연금수준	46.3	36.1	44.4	52.6	69.2	85.8
(평균총소득의 %)	43.3	34.1	41.5	49.0	63.8	78.7
순상대적연금수준	53.2	41.4	50.9	60.4	79.5	98.5
(순평균소득의 %)	49.5	38.9	47.4	55.9	73.0	90.0
총대체율	57.2	72.1	59.1	52.6	46.1	42.9
(개인총소득의 %)	53.5	68.1	55.3	49.0	42.6	39.4
순대체율	65.0	82.0	67.2	60.4	54.6	51.6
(개인순소득의 %)	60.7	77.4	62.9	55.9	50.2	47.2
총연금자산	9.5	11.8	9.8	8.7	7.7	7.2
(개인총소득의 배수)	9.8	12.4	10.2	9.0	7.9	7.3
순연금자산	9.5	11.8	9.8	8.7	7.7	7.2
(개인총소득의 배수)	9.8	12.4	10.2	9.0	7.9	7.3
<b>국가별 세부 경제 가정 하 30년 근로</b>						
총상대적연금수준	35.6	28.2	34.1	40.1	52.0	63.9
(평균총소득의 %)	33.4	26.7	32.1	37.4	48.2	58.9
순상대적연금수준	40.8	32.4	39.2	46.0	59.7	73.4
(순평균소득의 %)	38.1	30.6	36.7	42.8	55.0	67.3
총대체율	43.9	56.4	45.5	40.1	34.7	32.0
(개인총소득의 %)	41.2	53.5	42.8	37.4	32.1	29.4
순대체율	49.9	64.1	51.7	46.0	41.1	38.4
(개인순소득의 %)	46.8	60.8	48.6	42.8	37.9	35.3
총연금자산	7.2	9.2	7.5	6.6	5.8	5.4
(개인총소득의 배수)	7.6	9.7	7.8	6.9	6.0	5.5
순연금자산	7.2	9.2	7.5	6.6	5.8	5.4
(개인총소득의 배수)	7.6	9.7	7.8	6.9	6.0	5.5

주: 실질소득: 연 6%이며 2%로 수렴하여 평균 4%.

물가상승률: 연 5%이며 2.5%로 수렴하여 평균 3.75%.

실질수익률: 연 4%이며 15년간 6%로 유지된 후 3.5%로 수렴하여 평균 4.8%.

할인율(계리적 산정): 연 2%.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05229>


## 인도네시아

### 인도네시아: 2012년 연금제도

민간부문 근로자들은 확정기여형 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 주요 지표

		인도네시아	OECD
평균 소득	루피아(IDR)(백만)	16.1	418.5
	미 달러(USD)	1 600	42 700
공적 연금 지출	GDP의 %		7.8
기대수명	출생 시	70.8	79.9
	65세 시점	14.1	19.1
65세 이상 인구	생산연령 인구의 %	7.8	23.0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05248>

### 수급조건

정상 수급개시 연령은 55세이다. 은퇴는 필수조건이 아니다. 기여기간이 15년인 55세의 근로자는 정기적인 연금 급여를 수급할 수 있지만 15년 미만인 사람은 일시불로 수급할 수 있다.

### 급여 산정

#### 확정기여형(DC)

민간 부문 근로자들은 확정기여형(DC)의 연금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1993년부터 2013년까지의 기간 중에는 근로자 사회보장프로그램(Jamsostek) 중 하나를 의미하며 이 경우 1992년 Law No.3에 의거한 OAS(Old Age Security)나 Jaminan Hari Tua(JHT)이다. 총 기여율은 임금의 5.7%이다. JHT는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강제적 프로그램이며 은퇴자는 부분적으로 일시불로 인출하고 부분적으로 사망 시까지 정기 연금을 받다가 일시불로 받도록 선택할 수 있다. 근로자는 소득의 2%를 기여하며 사용자는 3.7%를 납부한다. 연금 잔액이 3백만 루피아가 넘으면 연금은 일시불로 지급되거나 최대 5년까지 매달 지급될 수 있다. 다른 국가들과의 대체율 비교를 위해 급여는 물가 연동 연금 형태로 지급되는 것으로 가정했다.

새로운 국가 사회보장제도(NSSS)는 2015년 7월 1일에 시행된다(Law No.40:2004). 새로운 사회보장연금은 확정급여형(DB)으로 확정기여형(DC)제도를 보완하게 된다. 새로운 확정급여형 제도의 총 기여율은 8%로 제안되어 있다. 급여 산정 방식은 아직 미정으로 이 급여는 모형에 반영하지 않았다.

## NSSS 프로그램과 임금 기준 기여율

번호	프로그램	분담 기여율 (%)			비고
		사용자	근로자	합계	
1	의료	3	2.0	5.0	안
2	산재	0.25-0.75	-	0.25-0.75	
3	적립기금	3.7	2.0	5.7	Jamsostek
4	연금	5.0	3.0	8.0	안
5	사망급여	0.3	-	0.3	Jamsostek
	총계	12.25-12.75	7.0	19.25-19.75	

출처: National Social Security Council(2012)

## 경력의 차이

## 조기수급

기여기간 최소 5년이면 연령에 관계없이 연금수급을 시작할 수 있다.

## 수급연기

정상 수급개시 연령 이후로 수급을 연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개인소득세 및 사회보장기여금

## 근로자 과세

독신자의 경우 15,840,000 루피아가 공제된다. 또한 근로 관련 비용은 세금이 공제되며 액수는 소득의 5% 부터 한도 6,000,000루피아까지이다. 연금액에 대해서도 5% 또는 2,400,000루피아까지 세금이 공제된다. 사회보장기여금도 세금이 공제된다.

## 근로자 소득 과세

다음 표는 근로자 소득에 적용되는 과세 규정이다.

연 소득(루피아, 백만)	세율(%)
50까지	5
50-250	15
250-500	25
500 초과	30

### 근로자가 납부하는 사회보장 기여금

근로자는 연금보험료로 임금의 2%를 납부한다.

### 연금수급자 과세

연금수급자에 대한 추가 세금 공제는 없다.

### 연금소득 과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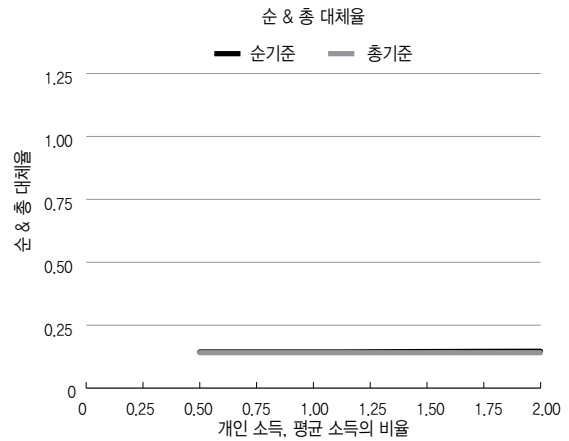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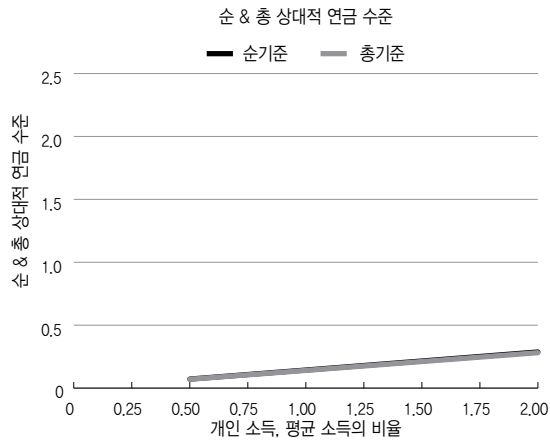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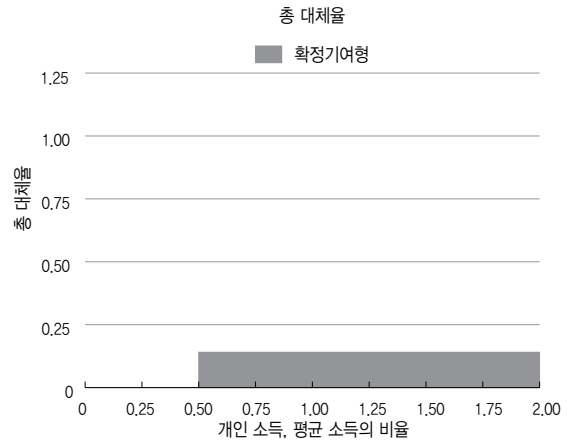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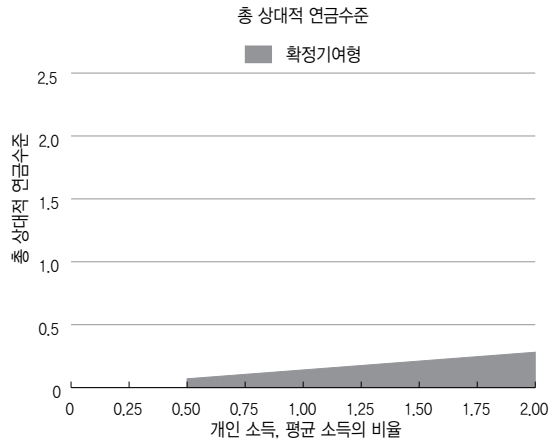
다음 표는 연금 소득에 적용되는 과세 규정이다.

연 소득(루피아, 백만)	세율(%)
25까지	Nil
25-50	5
50-100	10
100-200	15
200 초과	25

### 연금수급자가 납부하는 사회보장기여금

연금수급자는 사회보장기여금을 납부하지 않는다.

연금 모형화 결과: 인도네시아




남자 여자(남자와 다를 경우)	중위소득자	개인소득, 평균의 배수				
		0.5	0.75	1	1.5	2
총 상대적 연금수준 (평균 총소득의 %)	11.4 10.5	7.0 6.5	10.6 9.7	14.1 13.0	21.1 19.4	28.1 25.9
순 상대적 연금수준 (순 평균 소득의 %)	11.6 10.7	7.2 6.6	10.8 9.9	14.4 13.2	21.5 19.8	28.7 26.5
총 대체율 (개인총소득의 %)	14.1 13.0	14.1 13.0	14.1 13.0	14.1 13.0	14.1 13.0	14.1 13.0
순 대체율 (개인순소득의 %)	14.4 13.2	14.4 13.2	14.4 13.2	14.4 13.2	14.5 13.4	14.6 13.5
총 연금자산 (개인 총소득의 배수)	2.6 2.6	2.6 2.6	2.6 2.6	2.6 2.6	2.6 2.6	2.6 2.6
순 연금자산 (개인 순소득의 배수)	2.6 2.6	2.6 2.6	2.6 2.6	2.6 2.6	2.6 2.6	2.6 2.6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05267>

경제 및 근로기간의 대안가정

남자 여자(남자와 다를 경우)	중위소득자	개인소득, 평균의 배수				
		0.5	0.75	1	1.5	2
<b>OECD 경제 가정 하 40년 근로</b>						
총상대적연금수준	13.6	8.4	12.6	16.8	25.1	33.5
(평균총소득의 %)	12.5	7.7	11.6	15.4	23.2	30.9
순상대적연금수준	13.8	8.5	12.8	17.1	25.6	34.2
(순평균소득의 %)	12.8	7.9	11.8	15.8	23.6	31.5
총대체율	16.8	16.8	16.8	16.8	16.8	16.8
(개인총소득의 %)	15.4	15.4	15.4	15.4	15.4	15.4
순대체율	17.1	17.1	17.1	17.1	17.3	17.4
(개인순소득의 %)	15.8	15.8	15.8	15.8	15.9	16.1
총연금자산	3.1	3.1	3.1	3.1	3.1	3.1
(개인총소득의 배수)	3.1	3.1	3.1	3.1	3.1	3.1
순연금자산	3.1	3.1	3.1	3.1	3.1	3.1
(개인총소득의 배수)	3.1	3.1	3.1	3.1	3.1	3.1
<b>OECD 경제 가정 하 30년 근로</b>						
총상대적연금수준	9.4	5.8	8.7	11.6	17.4	23.2
(평균총소득의 %)	8.6	5.3	8.0	10.7	16.0	21.3
순상대적연금수준	9.6	5.9	8.9	11.8	17.7	23.6
(순평균소득의 %)	8.8	5.4	8.2	10.9	16.3	21.8
총대체율	11.6	11.6	11.6	11.6	11.6	11.6
(개인총소득의 %)	10.7	10.7	10.7	10.7	10.7	10.7
순대체율	11.8	11.8	11.8	11.8	12.0	12.1
(개인순소득의 %)	10.9	10.9	10.9	10.9	11.0	11.1
총연금자산	2.2	2.2	2.2	2.2	2.2	2.2
(개인총소득의 배수)	2.2	2.2	2.2	2.2	2.2	2.2
순연금자산	2.2	2.2	2.2	2.2	2.2	2.2
(개인총소득의 배수)	2.2	2.2	2.2	2.2	2.2	2.2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05286>

## 국가별 세부적인 경제 가정


남자 여자(남자와 다를 경우)	증위소득자	개인소득, 평균의 배수				
		0.5	0.75	1	1.5	2
<b>국가별 세부 경제 가정 하 40년 근로</b>						
총상대적연금수준	13.6	8.4	12.6	16.8	25.1	33.5
(평균총소득의 %)	12.5	7.7	11.6	15.4	23.2	30.9
순상대적연금수준	13.8	8.5	12.8	17.1	25.6	34.2
(순평균소득의 %)	12.8	7.9	11.8	15.8	23.6	31.5
총대체율	16.8	16.8	16.8	16.8	16.8	16.8
(개인총소득의 %)	15.4	15.4	15.4	15.4	15.4	15.4
순대체율	17.1	17.1	17.1	17.1	17.3	17.4
(개인순소득의 %)	15.8	15.8	15.8	15.8	15.9	16.1
총연금자산	3.1	3.1	3.1	3.1	3.1	3.1
(개인총소득의 배수)	3.1	3.1	3.1	3.1	3.1	3.1
순연금자산	3.1	3.1	3.1	3.1	3.1	3.1
(개인총소득의 배수)	3.1	3.1	3.1	3.1	3.1	3.1
<b>국가별 세부 경제 가정 하 30년 근로</b>						
총상대적연금수준	9.4	5.8	8.7	11.6	17.4	23.2
(평균총소득의 %)	8.6	5.3	8.0	10.7	16.0	21.3
순상대적연금수준	9.6	5.9	8.9	11.8	17.7	23.6
(순평균소득의 %)	8.8	5.4	8.2	10.9	16.3	21.8
총대체율	11.6	11.6	11.6	11.6	11.6	11.6
(개인총소득의 %)	10.7	10.7	10.7	10.7	10.7	10.7
순대체율	11.8	11.8	11.8	11.8	12.0	12.1
(개인순소득의 %)	10.9	10.9	10.9	10.9	11.0	11.1
총연금자산	2.2	2.2	2.2	2.2	2.2	2.2
(개인총소득의 배수)	2.2	2.2	2.2	2.2	2.2	2.2
순연금자산	2.2	2.2	2.2	2.2	2.2	2.2
(개인총소득의 배수)	2.2	2.2	2.2	2.2	2.2	2.2

주: 실질소득: 연 6%이며 2%로 수렴하여 평균 4%.

물가상승률: 연 5%이며 2.5%로 수렴하여 평균 3.75%.

실질수익률: 연 4%이며 15년간 6%로 유지된 후 3.5%로 수렴하여 평균 4.8%.

할인율(계리적 산정): 연 2%.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05305>


## 말레이시아

### 말레이시아: 2012년 연금제도

민간부문 근로자와 연금 비대상 공공부문 근로자들은 적립기금(provident fund)에 기여금을 납부한다.

### 주요 지표

		말레이시아	OECD
평균 소득	링깃(MYR)	30 900	130 600
	미 달러(USD)	10 100	42 700
공적 연금 지출	GDP의 %		7.8
기대수명	출생 시	75.0	78.9
	65세 시점	15.3	19.1
65세 이상 인구	생산연령 인구의 %	7.6	23.0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05324>

## 수급조건

정상 연금수급 연령은 55세이다.

## 급여 산정

### 확정기여형

근로자는 임금 등급에 따라 55세까지는 월 소득의 11%, 55세부터 75세까지는 5.5%를 적립기금에 기여한다. 사용자는 55세까지의 월 소득 5,000링깃 미만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월 소득의 13%, 월 소득 5,000링깃 이상이면 12%를 납부한다. 근로자 연령이 55세에서 75세 사이인 경우 월 소득 5,000 링깃을 기준으로 사용자 기여분은 각각 6.5%와 6%가 된다. 기여금의 최저 월 소득은 10 링깃이며 상한선은 없다. 가입자는 자발적으로 추가 납입할 수 있다. 기여는 두 개의 계정으로 이루어지는데 기여금의 70%는 1번 계정으로 30%는 2번 계정으로 적립된다. 연금은 일시불로 수령할 수도 있고 월 분할로 수급할 수도 있으며 두 가지를 병행할 수도 있다. 월 분할로 받을 수 있는 최저 금액은 최소 12개월간 250링깃이며 언젠든 2,000링깃 이상을 인출하거나 이 두가지 선택을 병행할 수 있다. 다른 국가들과 대체율 비교를 위해 연금은 남녀별 사망률을 기준으로 물가 연동 연금으로 제시했다.

## 경력차이

### 조기수급

55세 이전에 2번 계정에서 저축액을 인출할 수 있다.

### 수급연기

정상 연금수급 연령 이후로 수급개시를 연기하고 계속해서 보험료를 납부할 수도 있다.



## 개인 소득세 및 사회보장 기여금

### 근로자 과세

강제 및 자발적 적립기금 기여금은 월 5,000링깃까지 세금 공제된다. 월 2,000링깃 미만의 소득을 올리는 55세 미만 근로자와 임시근로자는 사회보험의 적용을 받는다. 사회보험은 노령연금을 포함하지 않지만 장애, 유족, 기타 연금 및 보조금은 포함한다. 기여율은 24개 급여 등급을 바탕으로 월 소득의 0.5%이다. 사회보험 기여금은 세금공제 대상이다.

### 근로자 소득 과세

개인소득세율은 7개 소득 범위에 걸쳐 1%부터 26%까지 분포한다.

과세소득	링깃	세율(%)	세액(링깃)
첫번째	2 500	0	0
이후	2 500	1	25
이후	15 000	3	450
이후	15 000	7	1 050
이후	15 000	12	1 800
이후	20 000	19	3 800
이후	30 000	24	7 200
초과	100 000	26	-

### 근로자가 납부하는 사회보장 기여금

근로자는 월 소득의 11%를 연금제도에 납부한다.

### 연금수급자 과세

연금수급자를 위한 추가적인 소득 공제는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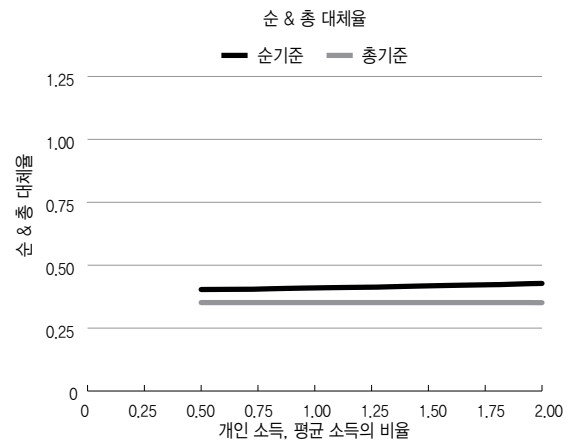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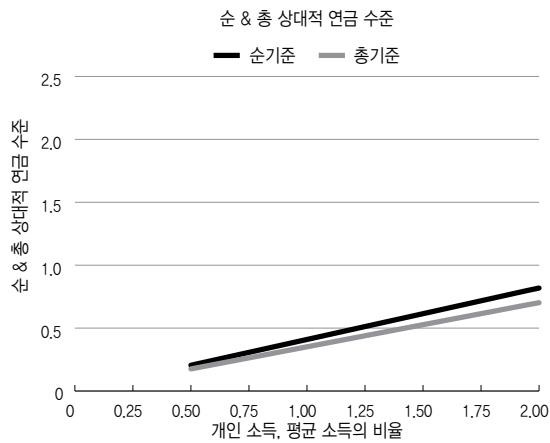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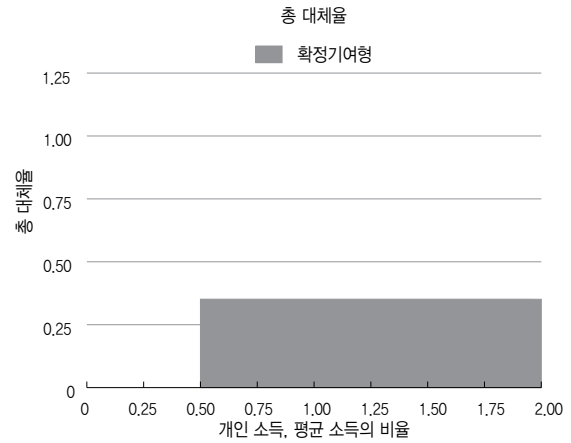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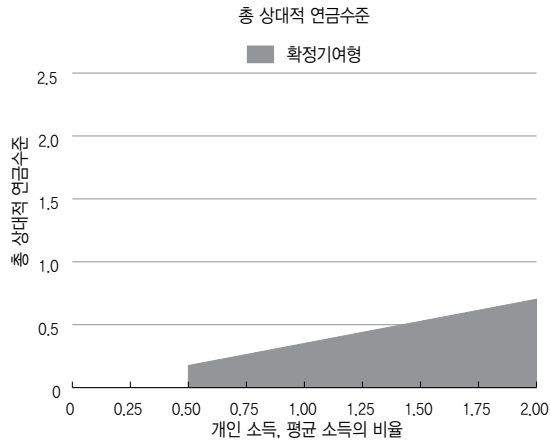
### 연금 소득 과세

연금소득은 비과세이다.

### 연금수급자가 납부하는 사회보장 기여금

연금수급자는 사회보장 기여금을 납부하지 않는다.

연금 모형화 결과: 말레이시아




남자 여자(남자와 다를 경우)	중위소득자	개인소득, 평균의 배수				
		0.5	0.75	1	1.5	2
총 상대적 연금수준 (평균 총소득의 %)	28.5 25.8	17.6 16.0	26.4 23.9	35.1 31.9	52.7 47.9	70.2 63.7
순 상대적 연금수준 (순 평균 소득의 %)	33.2 30.1	20.5 18.6	30.7 27.9	41.0 37.2	61.5 55.8	81.9 74.3
총 대체율 (개인총소득의 %)	35.1 31.9	35.1 31.9	35.1 31.9	35.1 31.9	35.1 31.9	35.1 31.9
순 대체율 (개인순소득의 %)	40.6 36.9	40.3 36.6	40.5 36.8	41.0 37.2	41.8 37.9	42.8 38.8
총 연금자산 (개인 총소득의 배수)	7.7 7.7	7.7 7.7	7.7 7.7	7.7 7.7	7.7 7.7	7.7 7.7
순 연금자산 (개인 순소득의 배수)	7.7 7.7	7.7 7.7	7.7 7.7	7.7 7.7	7.7 7.7	7.7 7.7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05343>

## 경제 및 근로기간의 대안가정


남자 여자(남자와 다를 경우)	중위소득자	개인소득, 평균의 배수				
		0.5	0.75	1	1.5	2
<b>OECD 경제 가정 하 40년 근로</b>						
총상대적연금수준	33.9	20.9	31.4	41.8	62.8	83.6
(평균총소득의 %)	30.8	19.0	28.5	38.0	57.0	75.9
순상대적연금수준	39.5	24.4	36.6	48.8	73.2	97.5
(순평균소득의 %)	35.9	22.2	33.2	44.3	66.5	88.5
총대체율	41.8	41.8	41.8	41.8	41.8	41.8
(개인총소득의 %)	38.0	38.0	38.0	38.0	38.0	38.0
순대체율	48.4	48.0	48.2	48.8	49.8	50.9
(개인순소득의 %)	43.9	43.6	43.8	44.3	45.2	46.2
총연금자산	9.2	9.2	9.2	9.2	9.2	9.2
(개인총소득의 배수)	9.2	9.2	9.2	9.2	9.2	9.2
순연금자산	9.2	9.2	9.2	9.2	9.2	9.2
(개인총소득의 배수)	9.2	9.2	9.2	9.2	9.2	9.2
<b>OECD 경제 가정 하 30년 근로</b>						
총상대적연금수준	23.4	14.5	21.7	28.9	43.4	57.8
(평균총소득의 %)	21.3	13.1	19.7	26.3	39.4	52.5
순상대적연금수준	27.3	16.9	25.3	33.7	50.6	67.4
(순평균소득의 %)	24.8	15.3	23.0	30.6	45.9	61.2
총대체율	28.9	28.9	28.9	28.9	28.9	28.9
(개인총소득의 %)	26.3	26.3	26.3	26.3	26.3	26.2
순대체율	33.5	33.2	33.3	33.7	34.4	35.2
(개인순소득의 %)	30.4	30.1	30.3	30.6	31.2	32.0
총연금자산	6.4	6.4	6.4	6.4	6.4	6.4
(개인총소득의 배수)	6.4	6.4	6.4	6.4	6.4	6.4
순연금자산	6.4	6.4	6.4	6.4	6.4	6.4
(개인총소득의 배수)	6.4	6.4	6.4	6.4	6.4	6.4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05362>

국가별 세부적인 경제 가정

남자 여자(남자와 다를 경우)	증위소득자	개인소득, 평균의 배수				
		0.5	0.75	1	1.5	2
<b>국가별 세부 경제 가정 하 40년 근로</b>						
총상대적연금수준	33.9	20.9	31.4	41.8	62.8	83.6
(평균총소득의 %)	30.8	19.0	28.5	38.0	57.0	75.9
순상대적연금수준	39.5	24.4	36.6	48.8	73.2	97.5
(순평균소득의 %)	35.9	22.2	33.2	44.3	66.5	88.5
총대체율	41.8	41.8	41.8	41.8	41.8	41.8
(개인총소득의 %)	38.0	38.0	38.0	38.0	38.0	38.0
순대체율	48.4	48.0	48.2	48.8	49.8	50.9
(개인순소득의 %)	43.9	43.6	43.8	44.3	45.2	46.2
총연금자산	9.2	9.2	9.2	9.2	9.2	9.2
(개인총소득의 배수)	9.2	9.2	9.2	9.2	9.2	9.2
순연금자산	9.2	9.2	9.2	9.2	9.2	9.2
(개인총소득의 배수)	9.2	9.2	9.2	9.2	9.2	9.2
<b>국가별 세부 경제 가정 하 30년 근로</b>						
총상대적연금수준	23.4	14.5	21.7	28.9	43.4	57.8
(평균총소득의 %)	21.3	13.1	19.7	26.3	39.4	52.5
순상대적연금수준	27.3	16.9	25.3	33.7	50.6	67.4
(순평균소득의 %)	24.8	15.3	23.0	30.6	45.9	61.2
총대체율	28.9	28.9	28.9	28.9	28.9	28.9
(개인총소득의 %)	26.3	26.3	26.3	26.3	26.3	26.2
순대체율	33.5	33.2	33.3	33.7	34.4	35.2
(개인순소득의 %)	30.4	30.1	30.3	30.6	31.2	32.0
총연금자산	6.4	6.4	6.4	6.4	6.4	6.4
(개인총소득의 배수)	6.4	6.4	6.4	6.4	6.4	6.4
순연금자산	6.4	6.4	6.4	6.4	6.4	6.4
(개인총소득의 배수)	6.4	6.4	6.4	6.4	6.4	6.4

주: 실질소득: 연 6%이며 2%로 수렴하여 평균 4%.  
 물가상승률: 연 5%이며 2.5%로 수렴하여 평균 3.75%.  
 실질수익률: 연 4%이며 15년간 6%로 유지된 후 3.5%로 수렴하여 평균 4.8%.  
 할인율(계리적 산정): 연 2%.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05381>

## 파키스탄


### 파키스탄: 2012년 연금제도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근로자 노령 연금제도라고 불리는 소득비례연금제도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다.

모형에서는 근로자들이 소득비례연금(EOBI)에 가입해 있는 것으로 가정했다.

### 주요 지표

		파키스탄	OECD
평균 소득	루피(PKR)	116 600	4 153 600
	미 달러(USD)	1 200	42 700
공적 연금 지출	GDP의 %	1.0	7.0
기대수명	출생 시	66.5	79.9
	65세 시점	14.0	19.1
65세 이상 인구	생산연령 인구의 %	7.1	23.0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05400>

## 수급조건

민간부문의 소득비례 연금의 정상 연금수급연령은 기여기간 15년인 경우 남자 60세, 여자 55세이다(나이가 들어서 가입한 이들에게는 완화책이 적용).

공공부문 근로자의 정상수급연령은 남녀 모두 60세이다. 공무원들은 최소 근무기간 25년을 충족하면 언제든 연금을 수급할 수 있다.

## 급여산정

### 소득비례

연금은 가입자의 퇴직 직전 최근 12개월간의 평균 월 소득의 2%에 가입 연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연금 지급액의 연계 규정은 자의적이며 모형에서는 물가 연계를 가정했다.

### 최저 연금

최저연금은 2012년 1월부터 월 3,600 루피이다. 연금 지급액의 연계는 자의적이며 모형에서는 물가 연계를 가정했다.

연금에 가입 가능한 월 임금액(최대 및 최소)은 2010-11년 중 7천루피였으며, 2012년 7월부터 8천루피까지 증가했다.

### 공무원 대상 소득비례연금

지급률은 근무기간 중 매 1년에 대해 7/300이며 최대 70%(즉, 근무기간 최대 30년)이다. 소득 기준은 최종 지급 기본급에 생계비 수당을 더한 값이다. 임금 패키지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수당은 연금의 소득 기준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관련 소득 지표는 총 임금의 약 54%이다. 연금 지급액 연계는 자의적이며 모형에서는 물가 연계를

가정하고 있다. 최근의 연계 증가분 일부를 신규 연금 전에 적용하는 전례없는 관행도 있다. 연금 수급자들은 확정된 대체요인으로 계산된 총 연금의 35%를 은퇴시 대체할 수 있다.

## 경력차이

### 조기수급

민간부문 근로자의 경우 남자 55세, 여자 50세부터 연금 수급이 가능하다. 공무원 연금의 경우 25년 근무 후 연금 수급을 개시할 수 있다.

60세(여자 55세) 이전에 연금 수급시 급여액은 월 0.5%씩 감액된다(EOBI). 이러한 감액은 최저 연금에도 적용된다. 그러나 정부 공무원들에게는 감액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들은 25년 근무 후에는 발생한 연금을 100% 수급할 수 있다.

### 수급연기

정상 연금수급 연령 이후에 연금수급을 개시하는 것도 가능하다.

## 개인소득세 및 사회보장 기여금

### 근로자 소득 과세

과세소득(루피)	세율
0-400,000	0%
400,000 -750,000	400,000을 초과하는 금액의 5%
750,000-1,500,000	17,500 + 750,000을 초과하는 금액의 10%
1,500,000-2,000,000	95,000 + 1,500,000을 초과하는 금액의 15%
2,000,000-2,500,000	175,000 + 2,000,000을 초과하는 금액의 17.5%
2,500,000 이상	420,000 + 2,500,000을 초과하는 금액의 20%

현재 남녀 근로자에 대한 세금 처리가 동일하다.

### 근로자가 납부하는 사회보장기여금

사용자는 최저 임금(8,000루피)의 5%를 납부하고 근로자는 최저임금의 1%에 해당하는 기여금을 납부한다.

공무원 연금은 연간 예산 지출을 통해 정부에서 전액 지원한다. 일부 지방 정부와 공기업도 연기금을 갖고 있으며 사전 적립의 정도는 다양하다.

### 연금수급자 과세

노인에 대한 추가 세금공제는 750,000루피 이하의 과세소득에 대해 50%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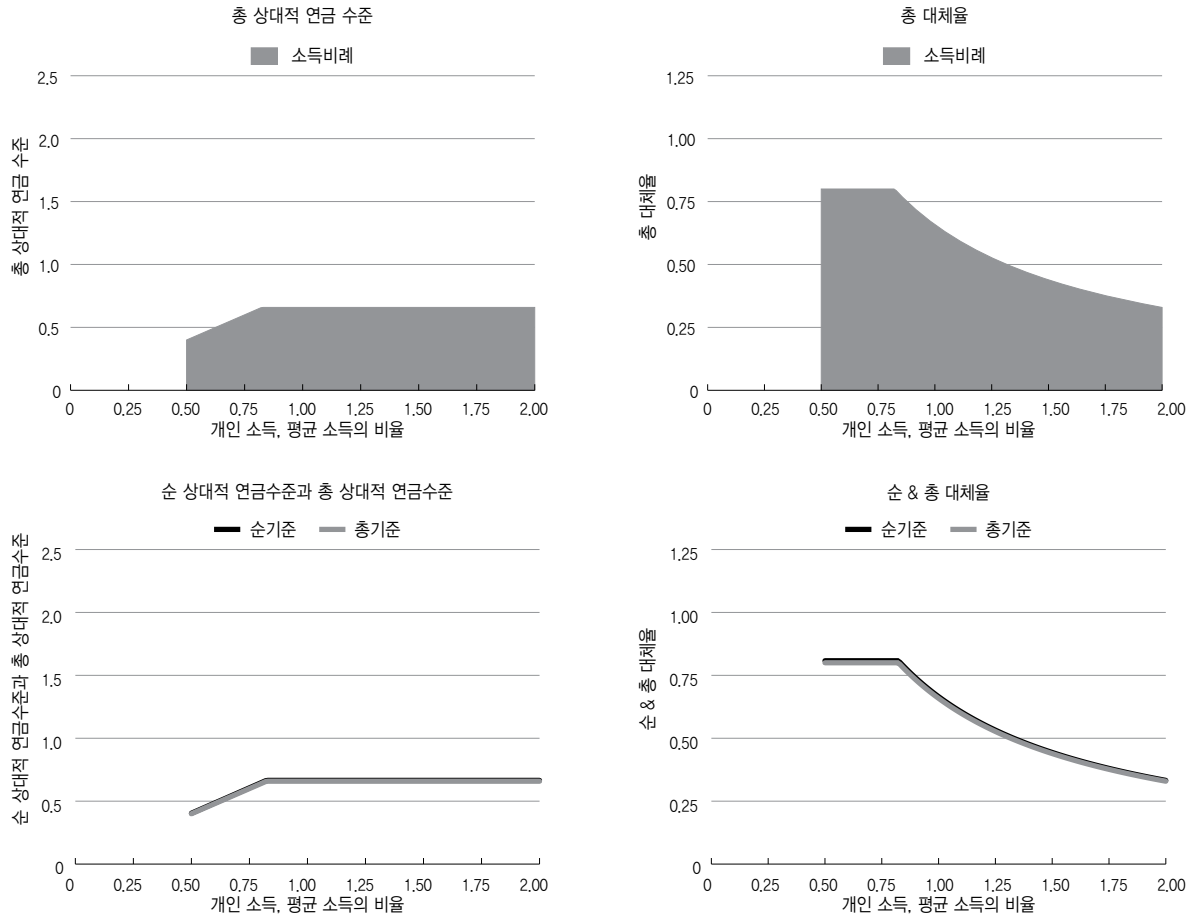
## 연금소득 과세

정부 연금제도, 등록된 민간부문 보장형퇴직연금제도(superannuation), 자발적 연금제도 또는 은퇴나 사망 시 EOBI로부터 지급하는 모든 급여는 비과세이다.

## 연금수급자가 납부하는 사회보장기여금

연금수급자들은 사회보장기여금을 납부하지 않는다.

연금 모형화 결과: 파키스탄



남자 여자(남자와 다를 경우)	중위소득자	개인소득, 평균의 배수				
		0.5	0.75	1	1.5	2
총 상대적 연금수준 (평균 총소득의 %)	64.8 56.7	40.0 37.1	60.0 52.5	65.9 57.6	65.9 57.6	65.9 57.6
순 상대적 연금수준 (순 평균 소득의 %)	65.5 57.3	40.4 37.4	60.6 53.0	66.5 58.2	66.5 58.2	66.5 58.2
총 대체율 (개인총소득의 %)	80.0 70.0	80.0 74.1	80.0 70.0	65.9 57.6	43.9 38.4	32.9 28.8
순 대체율 (개인순소득의 %)	80.8 70.7	80.8 74.9	80.8 70.7	66.5 58.2	44.4 38.8	33.3 29.1
총 연금자산 (개인 총소득의 배수)	11.3 12.5	11.3 13.2	11.3 12.5	9.3 10.3	6.2 6.9	4.6 5.1
순 연금자산 (개인 순 소득의 배수)	11.3 12.5	11.3 13.2	11.3 12.5	9.3 10.3	6.2 6.9	4.6 5.1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05419>



## 경제 및 근로기간의 대안가정

남자 여자(남자와 다를 경우)	중위소득자	개인소득, 평균의 배수				
		0.5	0.75	1	1.5	2
<b>OECD 경제 가정 하 40년 근로</b>						
총상대적연금수준 (평균총소득의 %)	64.8	40.0	60.0	65.9	65.9	65.9
순상대적연금수준 (순평균소득의 %)	65.5	40.4	60.6	66.5	66.5	66.5
총대체율 (개인총소득의 %)	80.0	80.0	80.0	65.9	43.9	32.9
순대체율 (개인순소득의 %)	80.8	80.8	80.8	66.5	44.4	33.3
총연금자산 (개인총소득의 배수)	11.3 14.3	11.3 14.3	11.3 14.3	9.3 11.8	6.2 7.8	4.6 5.9
순연금자산 (개인순소득의 배수)	11.3 14.3	11.3 14.3	11.3 14.3	9.3 11.8	6.2 7.8	4.6 5.9
<b>OECD 경제 가정 하 30년 근로</b>						
총상대적연금수준 (평균총소득의 %)	48.6	37.1	45.0	49.4	49.4	49.4
순상대적연금수준 (순평균소득의 %)	49.1	37.4	45.5	49.9	49.9	49.9
총대체율 (개인총소득의 %)	60.0	74.1	60.0	49.4	32.9	24.7
순대체율 (개인순소득의 %)	60.6	74.9	60.6	49.9	33.3	25.0
총연금자산 (개인총소득의 배수)	8.4 10.7	10.4 13.2	8.4 10.7	7.0 8.8	4.6 5.9	3.5 4.4
순연금자산 (개인순소득의 배수)	8.4 10.7	10.4 13.2	8.4 10.7	7.0 8.8	4.6 5.9	3.5 4.4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05438>

국가별 세부적인 경제 가정

남자 여자(남자와 다를 경우)	중위소득자	개인소득, 평균의 배수				
		0.5	0.75	1	1.5	2
<b>국가별 세부 경제 가정 하 40년 근로</b>						
총상대적연금수준	64.8	40.0	60.0	65.9	65.9	65.9
(평균총소득의 %)						
순상대적연금수준	65.5	40.4	60.6	66.5	66.5	66.5
(순평균소득의 %)						
총대체율	80.0	80.0	80.0	65.9	43.9	32.9
(개인총소득의 %)						
순대체율	80.8	80.8	80.8	66.5	44.4	33.3
(개인순소득의 %)						
총연금자산	11.3	11.3	11.3	9.3	6.2	4.6
(개인총소득의 배수)	14.3	14.3	14.3	11.8	7.8	5.9
순연금자산	11.3	11.3	11.3	9.3	6.2	4.6
(개인총소득의 배수)	14.3	14.3	14.3	11.8	7.8	5.9
<b>국가별 세부 경제 가정 하 30년 근로</b>						
총상대적연금수준	48.6	37.1	45.0	49.4	49.4	49.4
(평균총소득의 %)						
순상대적연금수준	49.1	37.4	45.5	49.9	49.9	49.9
(순평균소득의 %)						
총대체율	60.0	74.1	60.0	49.4	32.9	24.7
(개인총소득의 %)						
순대체율	60.6	74.9	60.6	49.9	33.3	25.0
(개인순소득의 %)						
총연금자산	8.4	10.4	8.4	7.0	4.6	3.5
(개인총소득의 배수)	10.7	13.2	10.7	8.8	5.9	4.4
순연금자산	8.4	10.4	8.4	7.0	4.6	3.5
(개인총소득의 배수)	10.7	13.2	10.7	8.8	5.9	4.4

주: 실질 소득: 연 6%가 2%로 수렴하여 평균 4%.  
 물가상승률: 연 5%가 2.5%로 수렴하여 평균 3.75%.  
 실질수익률: 연 10.5%가 3.5%로 수렴하여 평균 7%.  
 할인율(계리적 산정을 위한): 연 2%.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05457>


## 필리핀

### 필리핀: 2012년 연금제도

소득이 월 1,000페소 이상인 60세까지의 근로자는 기초, 소득비례, 최저 연금의 적용을 받는다. 공무원과 군인을 위한 특별 제도가 존재한다.

### 주요 지표

		필리핀	OECD
평균소득	페소	127 500	1 752 500
	미달러	3 100	42 700
공적연금지출	GDP의 %		7.0
기대수명	출생 시	68.7	79.9
	65세 시점	13.6	19.1
65세 이상 인구	생산연령인구의 %	6.2	23.0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05476>

## 수급조건

정상 연금수급 연령은 65세이며 기여기간 120개월이 필요하다.

## 급여산정

### 기초

월 기초연금은 300페소이다.

모든 연금은 연 13회 지급된다. 모든 연금 지급액의 연계 규정은 물가와 임금, 기금의 재정적 상태를 바탕으로 하여 정기적으로 결정된다.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조정이 물가에 맞춰질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 소득 비례

소득비례 연금 급여는 연금 수급 6개월 전 시점에 5년간의 평균 소득과 기여금 납부 기간에 대한 평균 소득 중 큰 값에 따라 달라진다. 급여는 기초연금에 근로자 평균 월 소득의 20%를 더하고 10년 이상 가입자의 경우 1년 당 월 평균 소득의 2%를 추가한 것과 근로자 평균 월 소득의 40% 중 큰 값으로 한다.

### 최저

기초연금과 소득비례 모두 기여기간이 10년에서 20년 사이인 경우 1,200페소이고, 20년 이상은 2,400페소이다.

## 경력 차이

### 조기수급

은퇴 전 6개월 시점에 기여기간 120개월이면 60세부터 연금을 수급할 수 있다. 노령연금 수급자가 65세 이전에 재고용되거나 자영업을 시작하면 연금은 중단된다.

### 수급연기

정상 연금수급연령 이후에 연금수급을 개시할 수 있지만 연기된 만큼 급여액이 증액되지는 않는다.

## 개인소득세와 사회보장기여금

### 근로자 소득 과세

초과	이하/not over	세율
	10,000페소	5%
10,000페소	30,000페소	500페소 + 10,000페소 초과분의 10%
30,000페소	70,000페소	2,500페소 + 30,000페소 초과분의 15%
70,000페소	140,000페소	8,500페소 + 70,000페소 초과분의 20%
140,000페소	250,000페소	22,500페소 + 140,000페소 초과분의 25%
250,000페소	500,000페소	50,000페소 + 250,000페소 초과분의 30%
500,000페소		125,000페소 + 500,000페소 초과분의 32%

### 근로자가 납부하는 사회보장 기여금

근로자는 연금, 질병 및 출산수당, 장례수당을 위한 사회보장 기여금으로 월 총 소득의 3.33%를 납부하며 총 소득은 29개 등급을 기준으로 설정된다. 기여금을 위한 월 소득 상한선은 15,000페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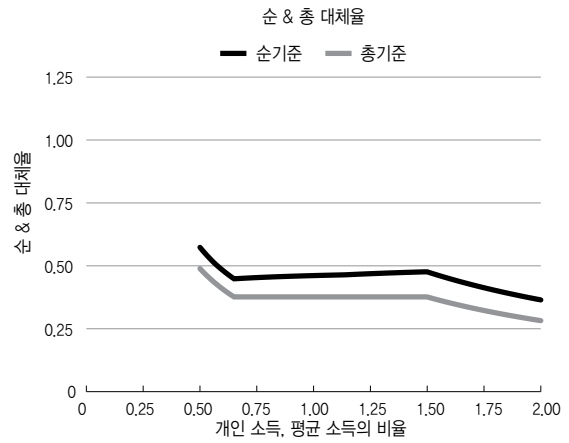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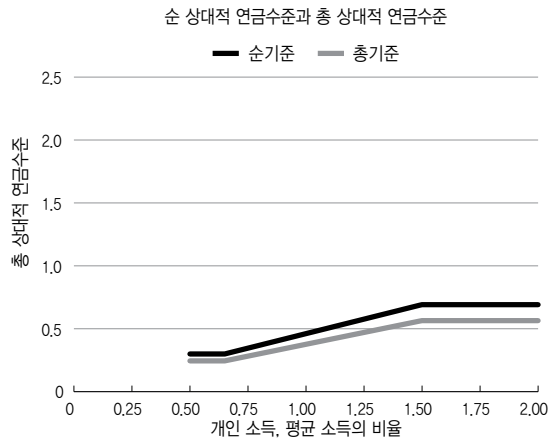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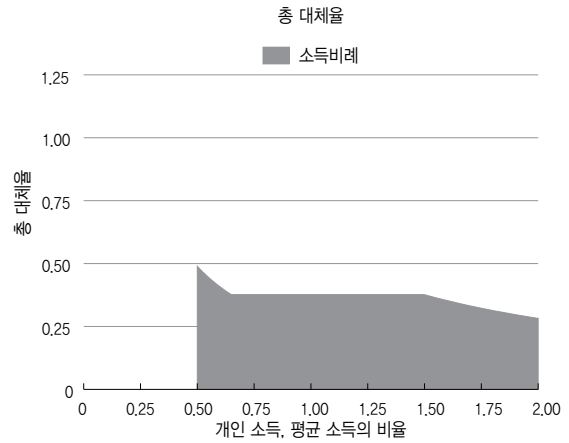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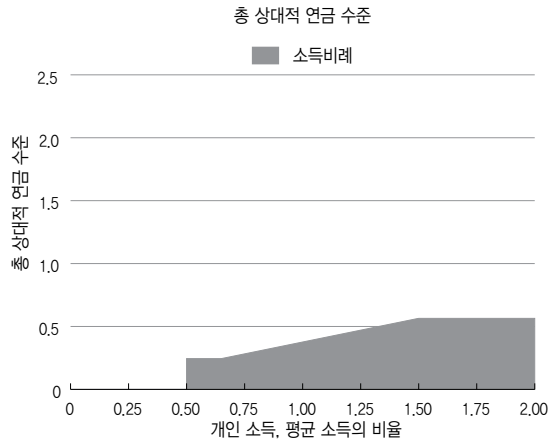
### 연금수급자 과세

2003년 확대 노인법(Expanded Senior Citizens Act)에 따라 고령자(최소 60세의 필리핀 거주 국민)는 연 과세소득이 NEDA(경제개발청)에서 해당 연도에 대해 설정한 빈곤선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개인소득세가 면제된다. 이들은 또한 의료 서비스 및 약품을 포함해 일부 서비스와 상품 구입 시 20%의 할인을 받는다. 해당기관은 20% 할인분에 대해 세금을 공제받는다.

### 연금소득 과세

모든 연금 소득은 비과세이다.

연금 모형화 결과: 필리핀



남자 여자(남자와 다른 경우)	중위소득자	개인소득, 평균의 배수				
		0.5	0.75	1	1.5	2
총 상대적 연금 수준 (평균 총 소득 %)	30.5	24.5	28.2	37.7	56.4	56.4
순 상대적 연금수준 (순 평균 소득 %)	37.4	30.0	34.6	46.1	69.1	69.1
총 대체율 (개인 총 소득 %)	37.7	48.9	37.7	37.7	37.6	28.2
순 대체율 (개인 순 소득 %)	45.6	57.4	45.3	46.1	47.6	36.5
총 연금자산 (개인 총 소득의 배수)	4.4	5.7	4.4	4.4	4.4	3.3
순 연금자산 (개인 순 소득의 배수)	4.4	5.7	4.4	4.4	4.4	3.3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05495>

경제 및 근로기간의 대안가정

남자 여자(남자와 다를 경우)	중위소득자	개인소득, 평균의 배수				
		0.5	0.75	1	1.5	2
<b>OECD 경제 가정 하 40년 근로</b>						
총상대적연금수준 (평균총소득의 %)	30.5	24.5	28.2	37.7	56.4	56.4
순상대적연금수준 (순평균소득의 %)	37.4	30.0	34.6	46.1	69.1	69.1
총대체율 (개인총소득의 %)	37.7	48.9	37.7	37.7	37.6	28.2
순대체율 (개인순소득의 %)	45.6	57.4	45.3	46.1	47.6	36.5
총연금자산 (개인총소득의 배수)	4.4 5.3	5.7 6.8	4.4 5.3	4.4 5.3	4.4 5.3	3.3 3.9
순연금자산 (개인순소득의 배수)	4.4 5.3	5.7 6.8	4.4 5.3	4.4 5.3	4.4 5.3	3.3 3.9
<b>OECD 경제 가정 하 30년 근로</b>						
총상대적연금수준 (평균총소득의 %)	30.5	24.5	28.2	37.7	56.4	56.4
순상대적연금수준 (순평균소득의 %)	37.4	30.0	34.6	46.1	69.1	69.1
총대체율 (개인총소득의 %)	37.7	48.9	37.7	37.7	37.6	28.2
순대체율 (개인순소득의 %)	45.6	57.4	45.3	46.1	47.6	36.5
총연금자산 (개인총소득의 배수)	4.4 5.3	5.7 6.8	4.4 5.3	4.4 5.3	4.4 5.3	3.3 3.9
순연금자산 (개인순소득의 배수)	4.4 5.3	5.7 6.8	4.4 5.3	4.4 5.3	4.4 5.3	3.3 3.9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05514>

## 국가별 세부적인 경제 가정

남자 여자(남자와 다를 경우)	중위소득자	개인소득, 평균의 배수				
		0.5	0.75	1	1.5	2
<b>국가별 세부 경제 가정 하 40년 근로</b>						
총상대적연금수준 (평균총소득의 %)	28.7	24.5	26.6	35.4	53.2	56.4
순상대적연금수준 (순평균소득의 %)	35.2	30.0	32.6	43.4	65.1	69.1
총대체율 (개인총소득의 %)	35.4	48.9	35.4	35.4	35.4	28.2
순대체율 (개인순소득의 %)	42.9	57.4	42.7	43.4	44.9	36.5
총연금자산 (개인총소득의 배수)	4.1	5.7	4.1	4.1	4.1	3.3
순연금자산 (개인순소득의 배수)	5.0	6.8	5.0	5.0	5.0	3.9
<b>국가별 세부 경제 가정 하 30년 근로</b>						
총상대적연금수준 (평균총소득의 %)	28.7	24.5	26.6	35.4	53.2	56.4
순상대적연금수준 (순평균소득의 %)	35.2	30.0	32.6	43.4	65.1	69.1
총대체율 (개인총소득의 %)	35.4	48.9	35.4	35.4	35.4	28.2
순대체율 (개인순소득의 %)	42.9	57.4	42.7	43.4	44.9	36.5
총연금자산 (개인총소득의 배수)	4.1	5.7	4.1	4.1	4.1	3.3
순연금자산 (개인순소득의 배수)	5.0	6.8	5.0	5.0	5.0	3.9

주: 실질 소득: 연 6%가 2%로 수렴하여 평균 4%.  
 물가상승률: 연 5%가 2.5%로 수렴하여 평균 3.75%.  
 실질수익률: 연 7.5%가 3.5%로 수렴하여 평균 5.5%.  
 할인율(계리적 산정을 위한): 연 2%.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05533>


## 싱가포르

### 싱가포르: 2012년 연금제도

CPF(중앙적립기금, Central Provident Fund)는 월 임금이 50 싱가포르 달러 이상인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CPF는 확정기여형 제도이다.

### 주요 지표

		싱가포르	OECD
평균소득	싱가포르달러	53 200	52 200
	미달러	43 500	42 700
공적연금지출	GDP의 %	0.0	7.0
기대수명	출생 시	82.1	79.9
	65세 시점	20.2	19.1
65세 이상 인구	생산연령인구의 %	13.2	23.0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05552>

## 수급조건

종신 지급 연금의 경우 정상 연금수급 연령은 65세이다.

## 급여 산정

### 확정기여형

최대 기여금은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월 5,000 싱가포르 달러를 기본급 한도로 하여 산정한다. 기여율은 아래와 같이 연령에 따라 달라진다. 일반계정(Ordinary Account)과 특별계정(Special Account)에 대한 기여는 은퇴 후를 위한 것이고 메디세이브 계정(Medisave account)에 대한 기여는 의료비를 위한 것이다. 일반계정의 저축액은 주택 구입에 사용할 수도 있지만 인출액은 해당 주택 매도 시 이자와 함께 반환해야 한다. 55세와 65세 시점에는 일반계정과 특별계정에 적합한 저축액을 사용해 종신연금을 매수하며 이렇게 되면 65세부터 연금수급자가 급여를 수급하게 된다. 개인이 주택 구매에 일반계정의 저축액을 얼마나 사용했는가는 종신 연금을 매수하는데 사용되는 총 금액에 영향을 주어 수급액에도 영향을 주므로 여기에서는 두 개의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다. 즉, 일반계정이 연금 급여 35%와 50%를 각각 기여하는 경우이다.

다른 국가와의 대체율 비교를 위해 본 보고서에서는 표준화된 거시적 가정을 사용하였으며 남녀별 사망률을 바탕으로 물가에 연동한 연금으로 연금 지급액을 산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결과는 싱가포르 국립대의 학자들이 수행한 이전 연구\* 결과와 다를 수 있는데 이전 연구에서는 싱가포르에만 존재하는 제도적 특징을 고려했다.\*\* 이전 연구에 따르면 중위 소득을 올리는 노동시장 남자 진입자는 65세 은퇴 시점에 순 소득 대체율이 70%가 되고 여자의 경우는 64%이다.

\* Chia, N.C and A. Tsui(2012), "Adequacy of Singapore's CPF Payouts: Income Replacement Rates of EntrantWorkers", Department of Economics,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 싱가포르만의 제도적 특징이란 근로복지 소득보전제도(Workfare Income Supplement Scheme), CPF 잔액 중 첫 60,000 싱가포르 달러에 대한 추가 이자 1% 지급, 퇴직 저축을 축소하기 위한 국민 연금제도인 CPF 평생소득제도 등이다.



근로자 연령	기여율 (월임금 > 1,500 싱가포르달러)			기여 대상		
	사용자 기여 (임금의 %)	근로자 기여 (임금의 %)	총 기여 (임금의 %)	일반계좌 (임금의 %)	특별계좌 (임금의 %)	의료계좌 (임금의 %)
35세 미만	16	20	36	23	6	7
35-45	16	20	36	21	7	8
45-50	16	20	36	19	8	9
50-55	14	18.5	32.5	13.5	9.5	9.5
55-60	10.5	13	23.5	12	2	9.5
60-65	7	7.5	14.5	3.5	1.5	9.5
65세 초과	6.5	5	11.5	1	1	9.5

## 경력 차이

### 조기수급

최저금액을 초과하는 연금 저축분은 55세부터 일시불로 인출할 수 있다. 최저금액은 2013년 148,000 싱가포르 달러이다.

### 수급연기

종신 연금 수급을 연기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근로와 연금 수급을 병행할 수는 있다.

## 개인소득세 및 사회보장 기여금

### 근로자 과세

강제적 CPF 기여금은 전액 비과세이다. CPF 특별계좌와 노후 계좌에 대한 “현금 추가액”에 대해서는 연 7,000 싱가포르 달러까지 세금 공제 혜택이 있다.

또한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 공제도 있으며 공제액은 아래와 같이(2013년기준) 근로자의 연령에 따라 달라진다.

연령	공제액
55세 미만	1,000 싱가포르달러
55-59세	6,000 싱가포르달러
60세 이상	8,000 싱가포르달러

### 근로자 소득 과세

거주자의 경우 개인소득세율과 범위(2013년)는 다음과 같다.

과세소득	세율(%)
20,000 싱가포르달러까지	0
20,000-30,000	2
30,000-40,000	3.5
40,000-80,000	7
80,000-120,000	11.5
120,000-160,000	15
160,000-200,000	17
200,000-320,000	18
320,000 싱가포르달러 초과	20

### 근로자가 납부하는 사회보장 기여금

근로자는 위에 설명한대로 CPF에 기여금을 납부한다.

### 연금수급자 과세

연금수급자를 위한 추가 세금 공제는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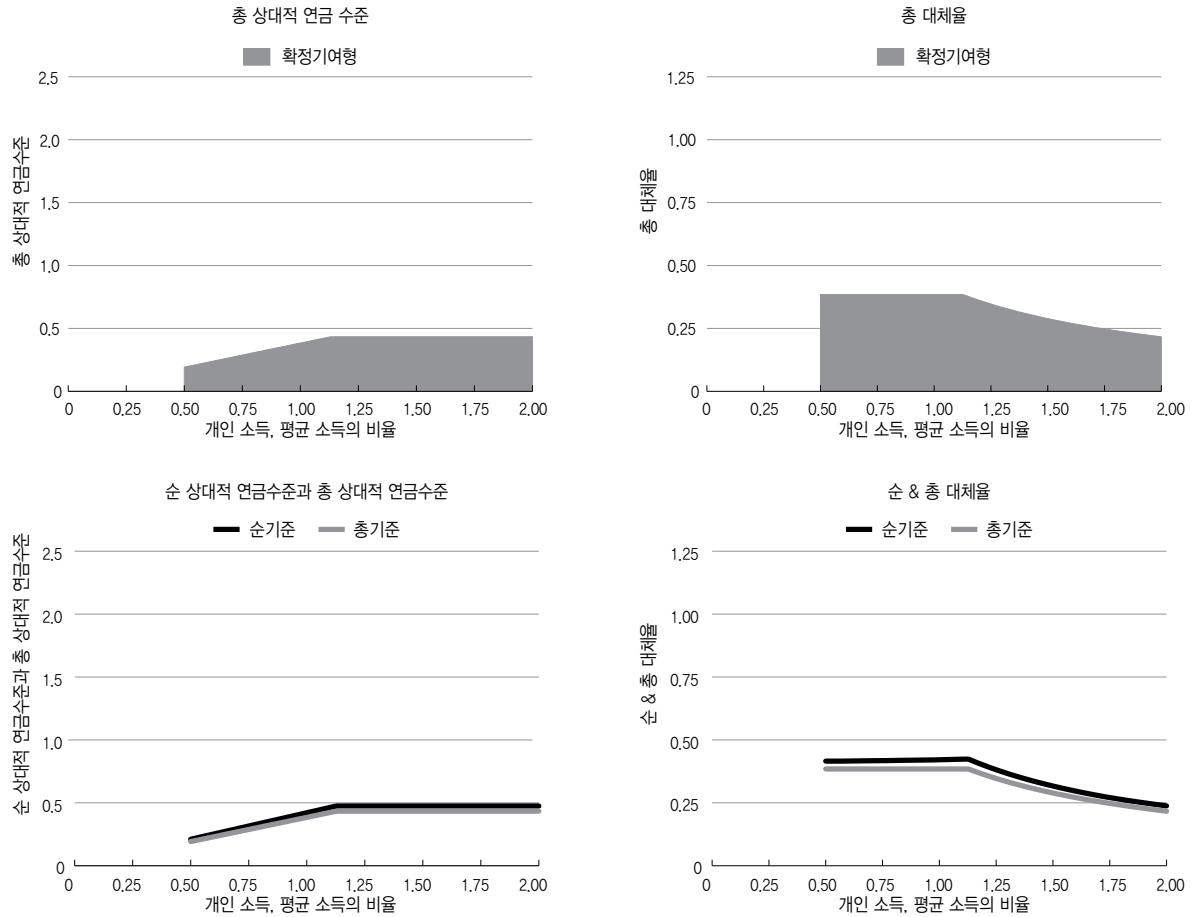
### 연금 소득 과세

CPF로부터의 연금 소득은 개인소득세가 면제된다.

### 연금수급자가 납부하는 사회보장기여금

연금수급자들은 계속해서 근로하면서 50 싱가포르달러 이상의 월 소득을 올리지 않는 한 사회보장기여금을 납부하지 않는다.

연금 모형화 결과: 싱가포르



남자 여자(남자와 다를 경우)	중위소득자	개인소득, 평균의 배수				
		0.5	0.75	1	1.5	2
총 상대적 연금수준 (평균 총소득의 %)	31.2 27.9	19.2 17.2	28.8 25.8	38.5 34.4	43.4 38.8	43.4 38.8
순 상대적 연금수준 (순 평균 소득의 %)	34.1 30.5	21.1 18.9	31.6 28.3	42.1 37.7	47.5 42.5	47.5 42.5
총 대체율 (개인총소득의 %)	38.5 34.4	38.5 34.4	38.5 34.4	38.5 34.4	28.9 25.9	21.7 19.4
순 대체율 (개인순소득의 %)	41.9 37.5	41.6 37.2	41.8 37.4	42.1 37.7	31.7 28.4	23.8 21.3
총 연금자산 (개인 총소득의 배수)	6.8 6.8	6.8 6.8	6.8 6.8	6.8 6.8	5.1 5.1	3.9 3.9
순 연금자산 (개인 총 소득의 배수)	6.8 6.8	6.8 6.8	6.8 6.8	6.8 6.8	5.1 5.1	3.9 3.9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05571>

경제 및 근로기간의 대안가정

남자 여자(남자와 다를 경우)	중위소득자	개인소득, 평균의 배수				
		0.5	0.75	1	1.5	2
<b>OECD 경제 가정 하 40년 근로</b>						
총상대적연금수준	26.2	16.2	24.3	32.4	36.5	36.5
(평균총소득의 %)	23.5	14.5	21.7	29.0	32.7	32.7
순상대적연금수준	28.7	17.7	26.6	35.5	40.0	40.0
(순평균소득의 %)	25.7	15.9	23.8	31.7	35.8	35.8
총대체율	32.4	32.4	32.4	32.4	24.3	18.3
(개인총소득의 %)	29.0	29.0	29.0	29.0	21.8	16.3
순대체율	35.2	35.0	35.2	35.5	26.7	20.0
(개인순소득의 %)	31.5	31.3	31.5	31.7	23.9	17.9
총연금자산	5.8	5.8	5.8	5.8	4.3	3.2
(개인총소득의 배수)	5.8	5.8	5.8	5.8	4.3	3.2
순연금자산	5.8	5.8	5.8	5.8	4.3	3.2
(개인총소득의 배수)	5.8	5.8	5.8	5.8	4.3	3.2
<b>OECD 경제 가정 하 30년 근로</b>						
총상대적연금수준	17.7	10.9	16.4	21.9	24.7	24.7
(평균총소득의 %)	15.9	9.8	14.7	19.6	22.1	22.1
순상대적연금수준	19.4	12.0	18.0	24.0	27.1	27.1
(순평균소득의 %)	17.4	10.7	16.1	21.5	24.2	24.2
총대체율	21.9	21.9	21.9	21.9	16.5	12.4
(개인총소득의 %)	19.6	19.6	19.6	19.6	14.7	11.1
순대체율	23.8	23.7	23.8	24.0	18.0	13.6
(개인순소득의 %)	21.3	21.2	21.3	21.5	16.1	12.1
총연금자산	3.9	3.9	3.9	3.9	2.9	2.2
(개인총소득의 배수)	3.9	3.9	3.9	3.9	2.9	2.2
순연금자산	3.9	3.9	3.9	3.9	2.9	2.2
(개인총소득의 배수)	3.9	3.9	3.9	3.9	2.9	2.2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05590>

## 국가별 세부적인 경제 가정

남자 여자(남자와 다를 경우)	중위소득자	개인소득, 평균의 배수				
		0.5	0.75	1	1.5	2
<b>국가별 세부 경제 가정 하 40년 근로</b>						
총상대적연금수준	34.1	21.0	31.6	42.1	47.5	47.5
(평균총소득의 %)	30.5	18.8	28.3	37.7	42.5	42.5
순상대적연금수준	37.3	23.0	34.6	46.1	52.0	52.0
(순평균소득의 %)	33.4	20.6	30.9	41.3	46.5	46.5
총대체율	42.1	42.1	42.1	42.1	31.7	23.7
(개인총소득의 %)	37.7	37.7	37.7	37.7	28.3	21.2
순대체율	45.8	45.5	45.7	46.1	34.7	26.1
(개인순소득의 %)	41.0	40.7	40.9	41.3	31.0	23.3
총연금자산	7.5	7.5	7.5	7.5	5.6	4.2
(개인총소득의 배수)	7.5	7.5	7.5	7.5	5.6	4.2
순연금자산	7.5	7.5	7.5	7.5	5.6	4.2
(개인총소득의 배수)	7.5	7.5	7.5	7.5	5.6	4.2
<b>국가별 세부 경제 가정 하 30년 근로</b>						
총상대적연금수준	23.1	14.2	21.4	28.5	32.1	32.1
(평균총소득의 %)	20.6	12.7	19.1	25.5	28.7	28.7
순상대적연금수준	25.3	15.6	23.4	31.2	35.2	35.2
(순평균소득의 %)	22.6	14.0	20.9	27.9	31.5	31.5
총대체율	28.5	28.5	28.5	28.5	21.4	16.1
(개인총소득의 %)	25.5	25.5	25.5	25.5	19.2	14.4
순대체율	31.0	30.8	30.9	31.2	23.5	17.6
(개인순소득의 %)	27.7	27.5	27.7	27.9	21.0	15.8
총연금자산	5.1	5.1	5.1	5.1	3.8	2.9
(개인총소득의 배수)	5.1	5.1	5.1	5.1	3.8	2.9
순연금자산	5.1	5.1	5.1	5.1	3.8	2.9
(개인총소득의 배수)	5.1	5.1	5.1	5.1	3.8	2.9

주: 일반계좌는 퇴직 급여의 50% 기여.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05609>

## 스리랑카

### 스리랑카: 2012년 연금제도

공식 민간부문 근로자들은 확정기여형 제도에 가입해 있는데, 모형에 사용된 근로자 민간 기금, 근로자 신탁 기금 또는 승인된 민간 부문적립기금이 그것이다. 공무원들은 공적부문 연금 제도에 가입해 있었으나 2003년부터는 기여형 연금제도로 불리는 확정 급여형 사회 보장제도에 기여금을 납부하고 있다.

### 주요 지표

		스리랑카	OECD
평균소득	루피	262 400	5 452 700
	미달러	2 100	42 700
공적연금지출	GDP의 %		7.0
기대수명	출생 시	75.8	79.9
	65세 시점	18.2	19.1
65세 이상 인구	생산연령인구의 %	9.3	23.0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05628>

### 수급조건

남자는 55세, 여자는 50세에 퇴직하는 경우 연금 수급이 가능하다. 정부가 회사를 폐쇄하거나 직장에 다니던 여성이 결혼하는 경우에는 연령에 관계없이 연금 수급이 가능하다.

공공부문 근로자의 정상 연금수급 연령은 60세이다.

### 급여 산정

#### 확정기여형

근로자 적립기금(Employee provident fund)은 완전 적립식 확정기여형 제도이며 근로자는 임금의 8%를, 사용자는 12%를 기여한다. 제도 탈퇴 시 전액이 일시불로 지급된다. 다른 국가와의 소득 대체율 비교를 위해 남녀별 사망률 표에 근거한 물가 연동 연금으로 표시했다. 5년에 한번씩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할 수 있다.

### 경력차이

#### 조기 수급

정부가 직장을 폐쇄하는 경우, 영구 이민의 경우, 직장 여성이 결혼하는 경우에는 연령에 관계없이 조기 수급이 가능하다.

#### 수급연기

정상 연금수급 연령 이후 연금 수급을 개시할 수는 없다.

## 개인소득세 및 사회보장 기여금

### 근로자 과세

소득세 공제 및 근로 관련 비용 공제는 없다.

### 근로자 소득 과세

300,000 루피의 개인 수당이 있으며 추가 소득은 다음과 같이 과세된다.

연 소득 범위	세율(%)
400,000루피까지	5
400 001루피-800 000루피	10
800 001루피-1 200 000루피	15
1 200 001루피-1 700 000루피	20
1 700 001루피-2 200 000루피	25
2 200 001루피-2 700 000루피	30
2,700,000루피 초과	35

### 근로자가 납부하는 사회보장기여금

근로자의 기여분은 연 25,000루피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 연금수급자 과세

퇴직자가 가입한 모든 연금에 대해 세금이 면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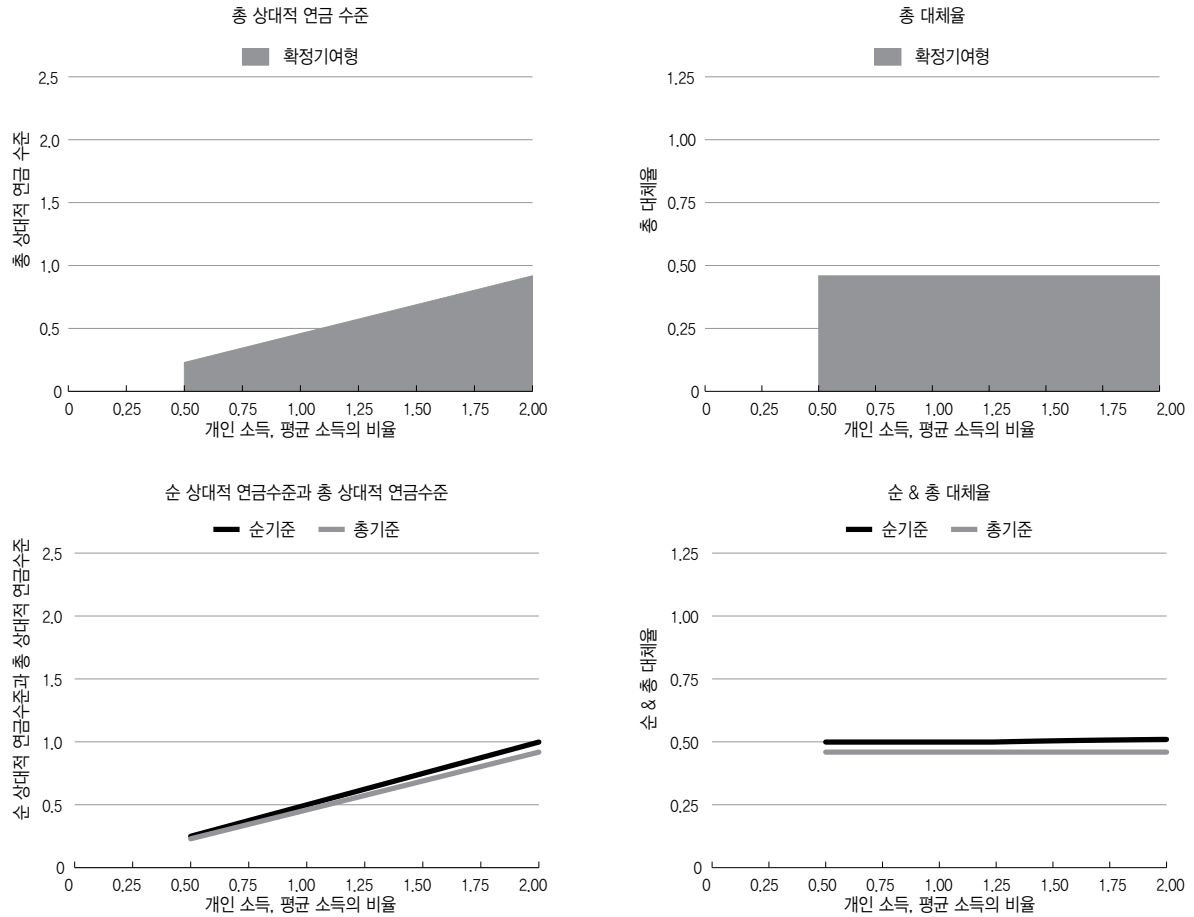
### 연금소득과세

연소득범위	세율(%)
2,000,000루피까지	0
2 000 001루피-2 500 000루피	5
2 500 001루피-3 000 000루피	10
3,000,000루피 초과	15

### 연금수급자가 납부하는 사회보장기여금

연금수급자는 사회보장기여금을 납부하지 않는다.

연금 모형화 결과: 스리랑카



남자 여자(남자와 다를 경우)	중위소득자	개인소득, 평균의 배수				
		0.5	0.75	1	1.5	2
총 상대적 연금수준	37.2	23.0	34.4	45.9	68.9	91.8
(평균 총소득의 %)	25.1	15.5	23.3	31.0	46.6	62.1
순 상대적 연금수준	40.4	25.0	37.4	49.9	74.9	99.8
(순 평균 소득의 %)	27.3	16.9	25.3	33.7	50.6	67.5
총 대체율	45.9	45.9	45.9	45.9	45.9	45.9
(개인총소득의 %)	31.0	31.0	31.0	31.0	31.0	31.0
순 대체율	49.9	49.9	49.9	49.9	50.4	51.0
(개인순소득의 %)	33.7	33.7	33.7	33.7	34.1	34.4
총 연금자산	9.2	9.2	9.2	9.2	9.2	9.2
(개인 총소득의 배수)	7.6	7.6	7.6	7.6	7.6	7.6
순 연금자산	9.2	9.2	9.2	9.2	9.2	9.2
(개인 총 소득의 배수)	7.6	7.6	7.6	7.6	7.6	7.6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05647>



## 경제 및 근로기간의 대안가정

남자 여자(남자와 다를 경우)	중위소득자	개인소득, 평균의 배수				
		0.5	0.75	1	1.5	2
<b>OECD 경제 가정 하 40년 근로</b>						
총상대적연금수준	44.3	27.3	41.0	54.7	82.0	109.4
(평균총소득의 %)	..	..	..	..	..	..
순상대적연금수준	48.1	29.7	44.6	59.4	89.2	118.9
(순평균소득의 %)	..	..	..	..	..	..
총대체율	54.7	54.7	54.7	54.7	54.7	54.7
(개인총소득의 %)	..	..	..	..	..	..
순대체율	59.4	59.4	59.4	59.4	60.0	60.7
(개인순소득의 %)	..	..	..	..	..	..
총연금자산	11.0	11.0	11.0	11.0	11.0	11.0
(개인총소득의 배수)	..	..	..	..	..	..
순연금자산	11.0	11.0	11.0	11.0	11.0	11.0
(개인총소득의 배수)	..	..	..	..	..	..
<b>OECD 경제 가정 하 30년 근로</b>						
총상대적연금수준	30.6	18.9	28.3	37.8	56.7	75.6
(평균총소득의 %)	25.1	15.5	23.3	31.0	46.6	62.1
순상대적연금수준	33.3	20.5	30.8	41.1	61.6	82.2
(순평균소득의 %)	27.3	16.9	25.3	33.7	50.6	67.5
총대체율	37.8	37.8	37.8	37.8	37.8	37.8
(개인총소득의 %)	31.0	31.0	31.0	31.0	31.0	31.0
순대체율	41.1	41.1	41.1	41.1	41.5	42.0
(개인순소득의 %)	33.7	33.7	33.7	33.7	34.1	34.4
총연금자산	7.6	7.6	7.6	7.6	7.6	7.6
(개인총소득의 배수)	7.6	7.6	7.6	7.6	7.6	7.6
순연금자산	7.6	7.6	7.6	7.6	7.6	7.6
(개인총소득의 배수)	7.6	7.6	7.6	7.6	7.6	7.6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05666>

국가별 세부적인 경제 가정

남자 여자(남자와 다를 경우)	중위소득자	개인소득, 평균의 배수				
		0.5	0.75	1	1.5	2
<b>국가별 세부 경제 가정 하 40년 근로</b>						
총상대적연금수준	44.3	27.3	41.0	54.7	82.0	109.4
(평균총소득의 %)	..	..	..	..	..	..
순상대적연금수준	48.1	29.7	44.6	59.4	89.2	118.9
(순평균소득의 %)	..	..	..	..	..	..
총대체율	54.7	54.7	54.7	54.7	54.7	54.7
(개인총소득의 %)	..	..	..	..	..	..
순대체율	59.4	59.4	59.4	59.4	60.0	60.7
(개인순소득의 %)	..	..	..	..	..	..
총연금자산	11.0	11.0	11.0	11.0	11.0	11.0
(개인총소득의 배수)	..	..	..	..	..	..
순연금자산	11.0	11.0	11.0	11.0	11.0	11.0
(개인총소득의 배수)	..	..	..	..	..	..
<b>국가별 세부 경제 가정 하 30년 근로</b>						
총상대적연금수준	30.6	18.9	28.3	37.8	56.7	75.6
(평균총소득의 %)	25.1	15.5	23.3	31.0	46.6	62.1
순상대적연금수준	33.3	20.5	30.8	41.1	61.6	82.2
(순평균소득의 %)	27.3	16.9	25.3	33.7	50.6	67.5
총대체율	37.8	37.8	37.8	37.8	37.8	37.8
(개인총소득의 %)	31.0	31.0	31.0	31.0	31.0	31.0
순대체율	41.1	41.1	41.1	41.1	41.5	42.0
(개인순소득의 %)	33.7	33.7	33.7	33.7	34.1	34.4
총연금자산	7.6	7.6	7.6	7.6	7.6	7.6
(개인총소득의 배수)	7.6	7.6	7.6	7.6	7.6	7.6
순연금자산	7.6	7.6	7.6	7.6	7.6	7.6
(개인총소득의 배수)	7.6	7.6	7.6	7.6	7.6	7.6

주: 실질소득: 연 6%로 2%에 수렴하여 평균 4%.  
 물가상승률: 연 5%로 2.5%에 수렴하여 평균 3.75%.  
 실질수익률: 연 7.5%로 3.5%에 수렴하여 평균 5.5%.  
 할인율(계리적 산정): 연 2%.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05685>


## 태국

### 태국: 2012년 연금제도

공식 부문의 민간부문 근로자들은 사회보장 기금(SSF)에 가입되어 있다. SSF의 노령연금 제도는 확정급여형 제도이다.

### 주요 지표

		태국	OECD
평균소득	바트	136 000	1 306 300
	미달러	4 400	42 700
공적연금지출	GDP의 %		7.0
기대수명	출생 시	74.3	79.9
	65세 시점	17.5	19.1
65세 이상 인구	생산연령인구의 %	13.1	23.0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05704>

## 수급조건

55세에 도달한 가입자(남녀 모두)는 노령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매월 연금을 수급하려면 최소 180개월(15년)의 기여기간이 필요하며 기여기간이 더 길면 연금 급여액이 조정된다. 180개월(15년) 미만의 기여기간을 가진 가입자에게는 전체 기여금에 해당하는 급여액이 일시불로 지급된다. 두 경우 모두 근로는 중단해야 한다.

## 급여 산정

### 소득비례

급여는 처음 15년에 대해서는 소득의 20%이며, 그 이후에는 매년 1.5%씩 추가된다. 급여산정에 사용되는 기본 임금은 은퇴 전 마지막 5년 간의 평균 임금이다. 연금 규정은 자의적이며 모형에서는 연금 지급액의 물가 연계를 가정하고 있다.

## 경력의 차이

### 조기수급

정상 연금수급연령인 55세 이전에 소득비례 연금을 수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수급연기

55세 이후에 수급을 개시할 수도 있다. 55세 이후에 계속해서 근로하는 가입자는 마지막 60개월 평균 임금의 20% 또는 20%와 180개월 이후 기여분의 추가 12개월마다 1.5%를 더하여 받을 수 있다.

## 개인소득세 및 사회보장 기여금

### 근로자 과세

다양한 세금공제 제도가 있으며 근로자는 최대 60,000바트까지 평가대상 소득의 40%의 세금 공제를 받는다. 독신의 가입자는 30,000바트의 개인수당을 수급한다. 사회보장기여금은 세금공제대상이다.

### 근로자 소득 과세

다음 세율표는 과세대상 소득에 적용된다(공제 및 수당 산정 후 평가대상 소득).

연 과세대상 소득	세율(%)
0-150,000바트	0
150 001바트-500 000바트	10
500 001바트-1 000 000바트	20
1 000 001바트-4 000 000바트	30
4,000,001바트 이상	37

### 가입자가 납부하는 사회보장기여금

가입자는 사회보장기여금을 납부한다. 노령연금의 경우 기여율은 3%이며, 하한선은 월 1,650바트, 상한선은 월 15,000바트이다. 또한 질병, 출산, 장애, 사망 급여를 목적으로 소득의 1.5%를 납부하며 실업보험제도에 소득의 0.5%를 납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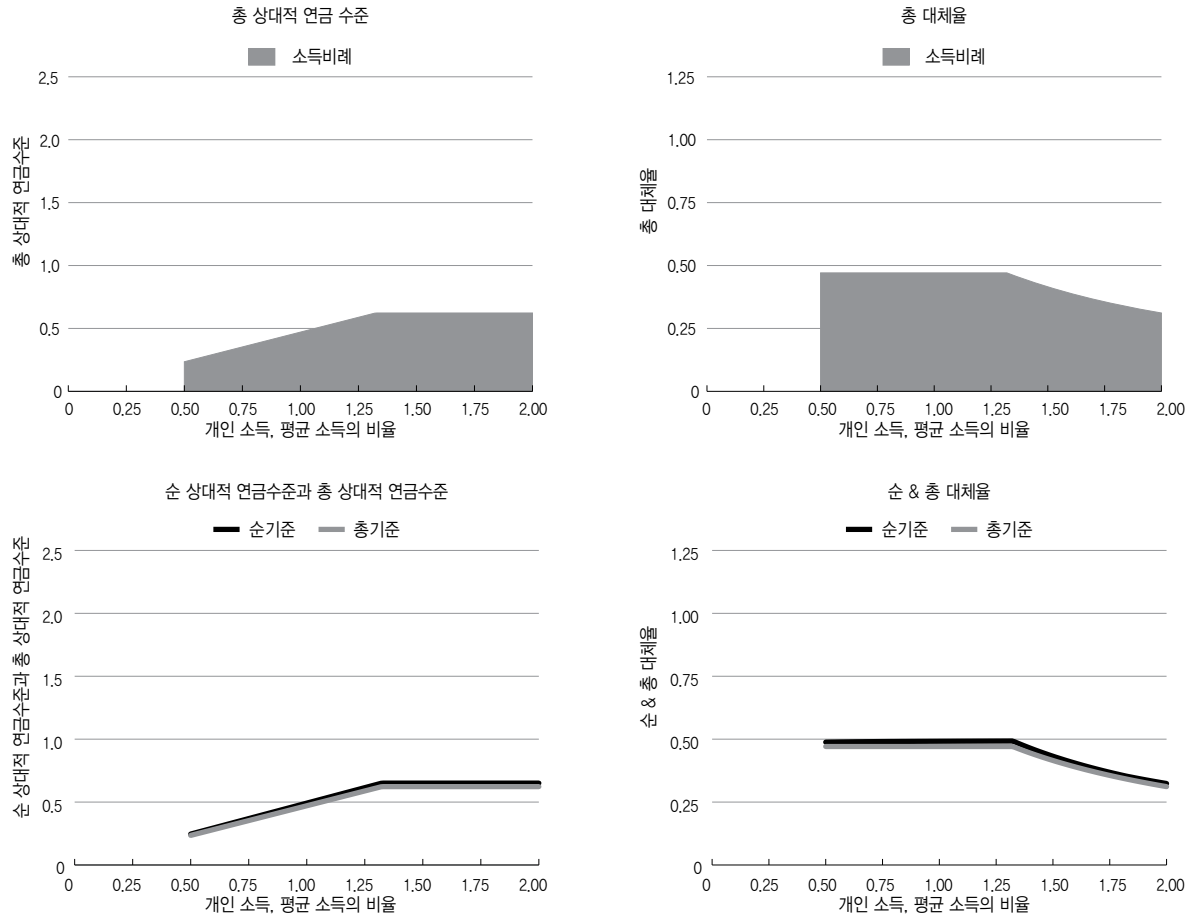
### 연금소득 과세

모든 연금 소득은 비과세이다. 65세 이상이며 계속해서 근로하는 경우 세금 공제로 190,000바트의 노령수당을 수급한다.

### 연금수급자가 납부하는 사회보장기여금

연금수급자는 사회보장기여금을 납부하지 않는다.

연금 모형화 결과: 태국



남자 여자(남자와 다를 경우)	중위소득자	개인소득, 평균의 배수				
		0.5	0.75	1	1.5	2
총 상대적 연금수준 (평균 총소득의 %)	38.1	23.5	35.3	47.1	62.3	62.3
순 상대적 연금수준 (순 평균 소득의 %)	39.8	24.6	36.9	49.2	65.1	65.1
총 대체율 (개인총소득의 %)	47.1	47.1	47.1	41.5	31.1	
순 대체율 (개인순소득의 %)	49.1	48.8	49.1	43.2	32.4	
총 연금자산 (개인 총소득의 배수)	9.8	9.8	9.8	8.7	6.5	
순 연금자산 (개인 순소득의 배수)	10.7	10.7	10.7	9.4	7.1	
순 연금자산 (개인 총 소득의 배수)	9.8	9.8	9.8	8.7	6.5	
	10.7	10.7	10.7	9.4	7.1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05723>

경제 및 근로기간의 대안가정

남자 여자(남자와 다를 경우)	중위소득자	개인소득, 평균의 배수				
		0.5	0.75	1	1.5	2
<b>OECD 경제 가정 하 40년 근로</b>						
총상대적연금수준 (평균총소득의 %)	43.9	27.1	40.6	54.1	71.6	71.6
순상대적연금수준 (순평균소득의 %)	45.8	28.3	42.4	56.6	74.8	74.8
총대체율 (개인총소득의 %)	54.1	54.1	54.1	54.1	47.8	35.8
순대체율 (개인순소득의 %)	56.5	56.1	56.4	56.6	49.7	37.2
총연금자산 (개인총소득의 배수)	11.3	11.3	11.3	11.3	10.0	7.5
순연금자산 (개인순소득의 배수)	12.3	12.3	12.3	12.3	10.8	8.1
총연금자산 (개인총소득의 배수)	11.3	11.3	11.3	11.3	10.0	7.5
순연금자산 (개인순소득의 배수)	12.3	12.3	12.3	12.3	10.8	8.1
<b>OECD 경제 가정 하 30년 근로</b>						
총상대적연금수준 (평균총소득의 %)	32.4	20.0	30.0	40.0	52.9	52.9
순상대적연금수준 (순평균소득의 %)	33.9	20.9	31.4	41.8	55.3	55.3
총대체율 (개인총소득의 %)	40.0	40.0	40.0	40.0	35.3	26.5
순대체율 (개인순소득의 %)	41.7	41.5	41.7	41.8	36.7	27.5
총연금자산 (개인총소득의 배수)	8.3	8.3	8.3	8.3	7.4	5.5
순연금자산 (개인순소득의 배수)	9.1	9.1	9.1	9.1	8.0	6.0
총연금자산 (개인총소득의 배수)	8.3	8.3	8.3	8.3	7.4	5.5
순연금자산 (개인순소득의 배수)	9.1	9.1	9.1	9.1	8.0	6.0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05742>

## 국가별 세부적인 경제 가정

남자 여자(남자와 다를 경우)	중위소득자	개인소득, 평균의 배수				
		0.5	0.75	1	1.5	2
<b>국가별 세부 경제 가정 하 40년 근로</b>						
총상대적연금수준	41.3	25.5	38.2	51.0	67.4	67.4
(평균총소득의 %)						
순상대적연금수준	43.1	26.6	39.9	53.2	70.4	70.4
(순평균소득의 %)						
총대체율	51.0	51.0	51.0	51.0	44.9	33.7
(개인총소득의 %)						
순대체율	53.1	52.8	53.1	53.2	46.8	35.1
(개인순소득의 %)						
총연금자산	10.6	10.6	10.6	10.6	9.4	7.0
(개인총소득의 배수)	11.5	11.5	11.5	11.5	10.2	7.6
순연금자산	10.6	10.6	10.6	10.6	9.4	7.0
(개인총소득의 배수)	11.5	11.5	11.5	11.5	10.2	7.6
<b>국가별 세부 경제 가정 하 30년 근로</b>						
총상대적연금수준	30.5	18.8	28.2	37.7	49.8	49.8
(평균총소득의 %)						
순상대적연금수준	31.9	19.7	29.5	39.3	52.1	52.1
(순평균소득의 %)						
총대체율	37.7	37.7	37.7	37.7	33.2	24.9
(개인총소득의 %)						
순대체율	39.3	39.0	39.2	39.3	34.6	25.9
(개인순소득의 %)						
총연금자산	7.9	7.9	7.9	7.9	6.9	5.2
(개인총소득의 배수)	8.5	8.5	8.5	8.5	7.5	5.6
순연금자산	7.9	7.9	7.9	7.9	6.9	5.2
(개인총소득의 배수)	8.5	8.5	8.5	8.5	7.5	5.6

주: 실질소득: 연 6%로 2%에 수렴하여 평균 4%.  
 물가상승률: 연 5%로 2.5%에 수렴하여 평균 3.75%.  
 실질수익률: 연 7.5%로 3.5%에 수렴하여 평균 5.5%.  
 할인율(계리적 산정): 연 2%.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05761>


## 베트남

### 베트남: 2012년 연금제도

베트남 사회보장청(VSS)에서는 민간부문 근로자와 정부 공무원들을 위해 사회 보장 기여금과 급여(연금 포함)를 관리한다. 현 연금 제도는 부과방식의 확정급여형 제도이다.

### 주요 지표

		베트남	OECD
평균소득	동(백만)	46.1	889.6
	미달러	2 200	42 700
공적연금지출	GDP의 %		7.0
기대수명	출생 시	75.8	79.9
	65세 시점	18.2	19.1
65세 이상 인구	생산연령인구의 %	9.3	23.0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05780>

## 수급조건

정상 연금수급 연령은 기여기간 최저 20년 이상인 경우 남자 60세, 여자 55세이다. 기여기간이 20년 미만인 경우 일시불 지급된다.

## 급여 산정

### 소득비례

연금 급여 산식은 총 기여기간에 따라 다르다. 가입 후 15년까지는 매년 3%씩 증액되며 그 이후에는 추가 1년마다 남자 2%, 여자 3%씩 증액된다. 조기수급의 경우 대체율이 연 1%씩 감액된다. 최대 대체율은 75%이고, 기여기간 30년 이상인 남자와 25년 이상인 여자는 평균 월 소득의 50%에 해당하는 일시금을 받게 된다. 평균 월 소득은 공공 부문에서 평생 근로한 이들의 경우 연금 수급 전 마지막 10년의 평균 임금으로 산정하고,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에서 모두 일한 근로자의 경우 전체 근로 기간의 평균 임금으로 산정한다.

모형에서는 이러한 일시불 금액을 평생 월 물가 연계 연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최대 연금액은 연금 최초 수급 직전 10년간의 가입자 평균 소득의 75%에 해당된다. 만일 총 기여년수가 20년 미만이라면 수급자는 기여금을 납부한 때 1년당 한달의 평균 임금을 일시불로 지급받을 수 있다. 연금 지급액은 최저임금에 따라 달라지는데 최저임금은 장기적으로 연 5%로 증가하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지만 모형에서는 평균 임금 상승률과 연계된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기여금 및 급여 산정을 위한 최저 및 최대 월 소득은 각각 1,050,000동과 21,000,000동이다.

## 경력의 차이

### 조기수급

특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남자 55세, 여자 50세에 연금수급을 개시할 수 있다. 연금액은 최초 지급 전 마지막 5년간의 가입자 평균 소득의 1%씩 감액된다. 이러한 감액은 해당 가입자가 정상 연금수급 연령에 도달하기 전까지 매년 적용된다.



## 수급연기

정상 연금수급연령 이후에 연금수급을 개시할 수는 없다. 근로와 연금 수급을 병행하는 것은 가능하다.

## 개인소득세와 사회보장기여금

### 근로자 과세

베트남에는 다양한 세금 공제 제도가 있지만 모형에 사용된 표준적 개인(무자녀 독신)과는 관련이 없다. 개인 소득세 규정에서는 사회보장 기여금의 공제여부를 명시하지 않고 있다.

### 근로자 소득 과세

정규 소득에 부과되는 세율은 다음과 같다.

연 소득세	세율(%)
0동-60,000,000동	5
60,000,000동-120,000,000동	10
120 000 000동-216 000 000동	15
216 000 000동-384 000 000동동	20
384 000 000동-624 000 000	25
624 000 000동-960 000 000동	30
960,000,000동 초과	35

### 근로자가 납부하는 사회보장 기여금

2012년 근로자들은 월 임금의 7%를 연금을 위해 기여했으며 2014년부터 8%로 인상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기여금의 기준이 되는 월 임금이 최저임금의 20배보다 크면 기여금은 최저임금의 20배가 된다.

### 연금수급자 과세

연금수급자를 위한 추가 세금 공제는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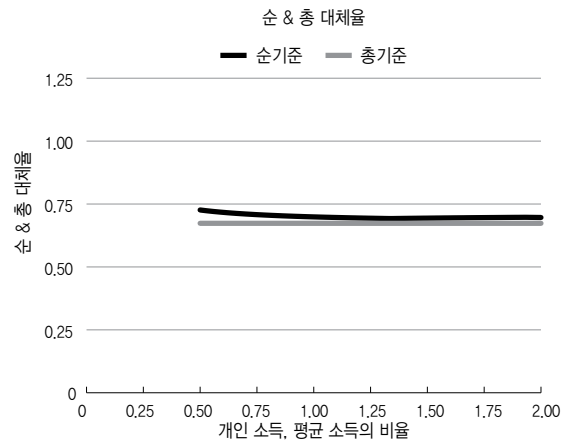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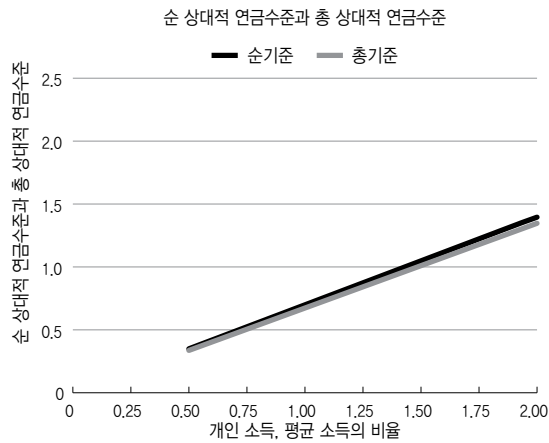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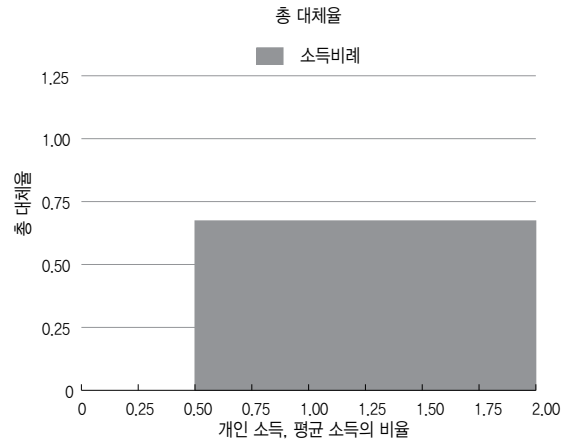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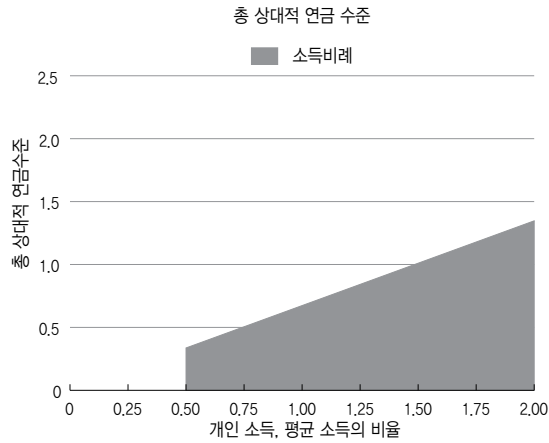
### 연금소득 과세

연금 급여에는 동일한 과세규정이 적용된다.

### 연금수급자가 납부하는 사회보장 기여금

연금수급자는 사회보장기여금을 납부하지 않는다.

연금 모형화 결과: 베트남



남자 여자(남자와 다를 경우)	중위소득자	개인소득, 평균의 배수				
		0.5	0.75	1	1.5	2
총 상대적 연금수준 (평균 총소득의 %)	54.5 50.1	33.7 30.9	50.5 46.4	67.3 61.8	101.0 92.7	134.7 123.6
순 상대적 연금수준 (순 평균 소득의 %)	56.6 52.0	34.9 32.1	52.4 48.1	69.9 64.2	104.8 96.2	139.6 128.3
총 대체율 (개인총소득의 %)	67.3 61.8	67.3 61.8	67.3 61.8	67.3 61.8	67.3 61.8	67.3 61.8
순 대체율 (개인순소득의 %)	70.5 64.7	72.6 66.7	70.8 65.0	69.9 64.2	69.4 63.7	69.7 64.0
총 연금자산 (개인 총소득의 배수)	15.1 19.2	15.1 19.2	15.1 19.2	15.1 19.2	15.1 19.2	15.1 19.2
순 연금자산 (개인 순 소득의 배수)	15.1 19.2	15.1 19.2	15.1 19.2	15.1 19.2	15.1 19.2	15.0 19.2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05799>

## 경제 및 근로기간의 대안가정

남자 여자(남자와 다를 경우)	중위소득자	개인소득, 평균의 배수				
		0.5	0.75	1	1.5	2
<b>OECD 경제 가정 하 40년 근로</b>						
총상대적연금수준	54.5	33.7	50.5	67.3	101.0	134.7
(평균총소득의 %)	50.8	31.4	47.0	62.7	94.1	125.4
순상대적연금수준	56.6	34.9	52.4	69.9	104.8	139.6
(순평균소득의 %)	52.7	32.5	48.8	65.1	97.6	130.2
총대체율	67.3	67.3	67.3	67.3	67.3	67.3
(개인총소득의 %)	62.7	62.7	62.7	62.7	62.7	62.7
순대체율	70.5	72.6	70.8	69.9	69.4	69.7
(개인순소득의 %)	65.7	67.7	65.9	65.1	64.6	65.0
총연금자산	15.1	15.1	15.1	15.1	15.1	15.1
(개인총소득의 배수)	19.4	19.4	19.4	19.4	19.4	19.4
순연금자산	15.1	15.1	15.1	15.1	15.1	15.0
(개인총소득의 배수)	19.4	19.4	19.4	19.4	19.4	19.4
<b>OECD 경제 가정 하 30년 근로</b>						
총상대적연금수준	52.6	32.5	48.8	65.0	97.5	130.0
(평균총소득의 %)	49.3	30.5	45.7	60.9	91.4	121.8
순상대적연금수준	54.6	33.7	50.6	67.5	101.2	134.9
(순평균소득의 %)	51.2	31.6	47.4	63.2	94.8	126.4
총대체율	65.0	65.0	65.0	65.0	65.0	65.0
(개인총소득의 %)	60.9	60.9	60.9	60.9	60.9	60.9
순대체율	68.1	70.1	68.3	67.5	67.0	67.3
(개인순소득의 %)	63.8	65.7	64.0	63.2	62.8	63.1
총연금자산	14.6	14.6	14.6	14.6	14.6	14.6
(개인총소득의 배수)	18.9	18.9	18.9	18.9	18.9	18.9
순연금자산	14.6	14.6	14.6	14.6	14.6	14.6
(개인총소득의 배수)	18.9	18.9	18.9	18.9	18.9	18.9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05818>

국가별 세부적인 경제 가정

남자 여자(남자와 다를 경우)	중위소득자	개인소득, 평균의 배수				
		0.5	0.75	1	1.5	2
<b>국가별 세부 경제 가정 하 40년 근로</b>						
총상대적연금수준	54.5	33.7	50.5	67.3	101.0	134.7
(평균총소득의 %)	50.8	31.4	47.0	62.7	94.1	125.4
순상대적연금수준	56.6	34.9	52.4	69.9	104.8	139.6
(순평균소득의 %)	52.7	32.5	48.8	65.1	97.6	130.2
총대체율	67.3	67.3	67.3	67.3	67.3	67.3
(개인총소득의 %)	62.7	62.7	62.7	62.7	62.7	62.7
순대체율	70.5	72.6	70.8	69.9	69.4	69.7
(개인순소득의 %)	65.7	67.7	65.9	65.1	64.6	65.0
총연금자산	19.5	19.5	19.5	19.5	19.5	19.5
(개인총소득의 배수)	27.2	27.2	27.2	27.2	27.2	27.2
순연금자산	19.5	19.5	19.5	19.5	19.5	19.4
(개인총소득의 배수)	27.2	27.2	27.2	27.2	27.2	27.2
<b>국가별 세부 경제 가정 하 30년 근로</b>						
총상대적연금수준	52.6	32.5	48.8	65.0	97.5	130.0
(평균총소득의 %)	49.3	30.5	45.7	60.9	91.4	121.8
순상대적연금수준	54.6	33.7	50.6	67.5	101.2	134.9
(순평균소득의 %)	51.2	31.6	47.4	63.2	94.8	126.4
총대체율	65.0	65.0	65.0	65.0	65.0	65.0
(개인총소득의 %)	60.9	60.9	60.9	60.9	60.9	60.9
순대체율	68.1	70.1	68.3	67.5	67.0	67.3
(개인순소득의 %)	63.8	65.7	64.0	63.2	62.8	63.1
총연금자산	19.0	19.0	19.0	19.0	19.0	19.0
(개인총소득의 배수)	26.7	26.7	26.7	26.7	26.7	26.7
순연금자산	19.0	19.0	19.0	19.0	19.0	19.0
(개인총소득의 배수)	26.7	26.7	26.7	26.7	26.7	26.7

주: 실질소득: 연 6%로 2%에 수렴하여 평균 4%.  
 물가상승률: 연 8%로 2.5%에 수렴하여 평균 5.25%.  
 실질수익률: 연 7.5%로 3.5%에 수렴하여 평균 5.5%.  
 할인율(계리적 산정): 연 2%.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05837>

# 경제협력개발기구

##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는 세계화에 따른 경제, 사회, 환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각국 정부가 함께 모여 노력하는 포럼이다. OECD는 기업 지배구조, 정보 경제, 인구 고령화와 같은 새로운 변화와 문제에 대처하는 정부를 이해하고 돕는데 앞장서고 있다. OECD는 각국 정부가 각자의 정책경험을 비교하고 공통과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며, 모범사례를 확인하고 국내외 정책을 조율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OECD 회원국은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칠레,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한국,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이다. 유럽 위원회도 OECD의 작업에 참여하고 있다.

OECD 출판물은 회원국이 동의한 협약, 지침, 기준뿐 아니라 경제, 사회, 환경적 사안에 관하여 수집된 통계와 연구 결과를 널리 전파한다.

**한 눈에 보는 연금 아시아/태평양 2013**  
Pensions at a Glance Asia/Pacific 2013

발 행 일: 2014년 6월

원 저: OECD

번역 · 발행: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사회정책본부)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33 안국빌딩 5층  
[www.oecdkorea.org](http://www.oecdkorea.org)

인 쇄: 아이프리넷



# 한 눈에 보는 연금 아시아/태평양 2013

Pensions at a Glance Asia/Pacific 2013

## 목차

요약

도입

방법론, 보고서의 구조 및 연금제도의 특징

## 제1장 노후소득(Retirement-income) 지표

총 대체율

순 대체율

노동시장 진입연령 30세인 경우 총 대체율

총 연금자산

순 연금자산

연금의 소득연계성

적용범위

기대수명

노인부양가능지수

## 제2장 한 눈에 보는 연금 아시아/태평양: 국가별 연구

도입

중국

홍콩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필리핀

싱가포르

스리랑카

태국

베트남

